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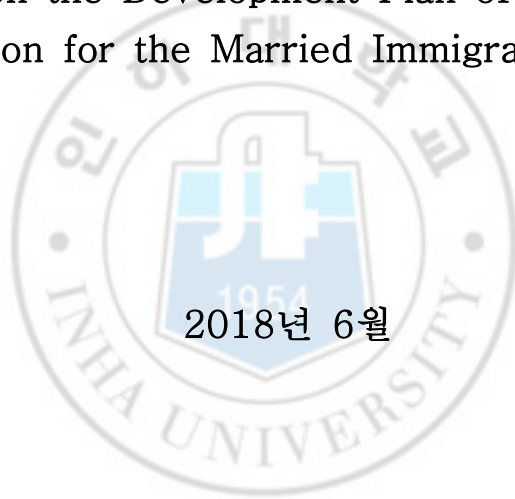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박사학위 논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발전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Law-related  
Education for the Married Immigrant Women



2018년 6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 다문화교육전공

최 보 선

교육학박사학위 논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발전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Law-related  
Education for the Married Immigrant Women

2018년 6월

지도교수 정 상 우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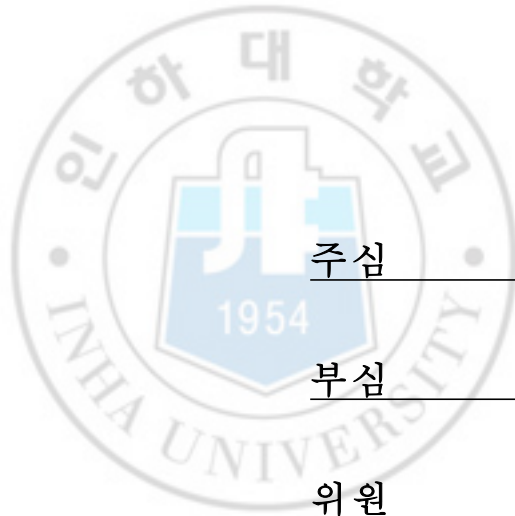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 다문화교육전공

최 보 선

이 논문을 최보선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18년 6월



주심 \_\_\_\_\_

부심 \_\_\_\_\_

위원 \_\_\_\_\_

위원 \_\_\_\_\_

위원 \_\_\_\_\_



## 국문 초록

###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발전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 다문화교육전공  
최보선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이 살던 국가와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로 유입되면서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문화 전달 교육과 한국어 교육 외에도 다양한 교육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로 인하여 다른 범문화에 편입되면서 이주민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자신의 인권과 권익을 종종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은 다른 어떤 이주민보다 광범위하게 생활의 전분야에서 새로운 법률관계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히 사회적응을 위한 법교육과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현재 결혼이주여성 대상 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효과적인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강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사양성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내용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 강사 측면에 있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셋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

이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14명의 설문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중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는 ‘채류자격 및 이주’가 1순위, ‘혼인’이 2순위, ‘자녀’가 3순위, ‘인권과 기본권’이 4순위, ‘근로’가 5순위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운영은 정기적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교육 내용 구성 방법에 대해 수강생 수요조사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있거나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결혼이주여성에게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으로는 ‘시각적인 교육 자료 활용(그림, 영상 등)’, ‘사례형 법교육(판례 등)’, ‘상담식 법교육’,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법교육’으로 나타났다. 교육 자료에 있어서는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을 진행할 때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셋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상호작용촉진능력(소통), 효과적 강의 역량(전달력 등), 이주민에 대한 이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학습내용 전문성(법학), 수업설계역량, 여성(학)에 대한 이해, 다양한 사회적 경험(혼인, 부동산, 근로 등)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 역량 강화 방안은 강사 자격 유지 조건으로 보수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법교육 강사의 다문화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다문화 관련 매뉴얼 제공 강사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의무화, 다문화 관련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 이주민 접촉 경험 증진으로 나타났다. 강사 대상 교육에서 가장 우선해서 필요한 내용은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1순위, ‘이주민과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이 2순위, ‘이주민 법적 분쟁 사례’가 3순위, ‘이주민관련 판례’, ‘최신 정책과 개정 법률’, ‘이주민관련 법률’이 공동 4순위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를 위한 교육의 개선방안으로는 교육 내용의 질 향상(전문성 제고), 강사 간 경험 공유 및 토론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참여 증진 방안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수강 시 법교육 의무 수강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사각지대 개선방안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찾아가는 법교육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이주여성 온라인 법교육은 동의 정도가 다소 낮게(M=4.0미만)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환경 개선 방안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자녀를 위한 유아실 마련과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컨트롤 타워 수립 방안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법무부가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은 목적과 주제, 내용요소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 대상 법교육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과 통합이 강조되어야 하고, 나아가 결혼이주‘여성’ 스스로 가족관계나 생활관계에 있어 자주적으로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민주시민성을 함양하고 법률분쟁이나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체계적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한국어 실력을 고려하여 번역본을 제공하고, 시각 자료의 활용, 사례형 법교육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개발 및 활용해야 한다. 넷째,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교육의 참여 증진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의 다문화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강사에게 다문화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고, 강사양성과정에서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이민자, 이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결혼이민자, 법교육, 인권교육, 법과인권교육, 다문화교육, 사회통합, 법교육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



## <목 차>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
|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 5  |
| 3. 선행연구                     | 6  |
| II. 이론적 배경                  | 11 |
| 1.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필요성          | 11 |
| 1) 이주의 배경과 새로운 법문화의 전환      | 11 |
| 2) 일상생활에서 법률 분쟁의 발생과 대처의 미흡 | 15 |
| 3) 차별과 인권 침해 발생             | 17 |
| 4) 범죄피해 발생과 사전 예방의 필요성      | 19 |
| 2.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제도화 및 목적     | 21 |
| 1) 법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            | 21 |
| 2)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목적           | 22 |
| 3.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현황           | 31 |
| 1)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법교육   | 32 |
| 2) 한국법교육센터의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 41 |
| 3)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 48 |
| 4) 기타 기관                    | 53 |
| 5) 소결                       | 59 |
| III. 연구 방법                  | 62 |
| 1. 조사 도구                    | 62 |
| 1) 설문조사지의 구성                | 62 |
| 2) 타당도                      | 65 |
| 2. 조사 대상                    | 68 |
| 1) 표집 대상의 선정 방법             | 68 |
| 2)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 69 |
| 3) 응답자의 배경 변인               | 70 |
| 3. 분석 방법                    | 74 |
| 4. 연구윤리                     | 76 |

|                                  |            |
|----------------------------------|------------|
| <b>IV. 연구 결과</b> .....           | <b>77</b>  |
| 1.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     | 77         |
| 2.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주제와 내용요소 .....    | 79         |
| 1)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       | 80         |
| 2) 내용요소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     | 81         |
| 3.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교육 방법 .....       | 97         |
| 1) 수업 시수 .....                   | 97         |
| 2) 주제 선정 방법 .....                | 100        |
| 3) 내용요소 구성 방법 .....              | 100        |
| 4) 난이도 .....                     | 102        |
| 5)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 .....             | 104        |
| 4.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교육 자료 .....       | 106        |
| 1) 사용하는 학습 자료 .....              | 106        |
| 2) 필요한 학습 자료 .....               | 109        |
| 5.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의 역량과 교육 .....   | 112        |
| 1) 강사의 역량 .....                  | 112        |
| 2) 강사 양성과정 .....                 | 117        |
| 6.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애로사항 .....        | 121        |
| 7.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개선방안 .....         | 124        |
| 1) 분반 방안 .....                   | 124        |
| 2) 참여 증진 방안 .....                | 125        |
| 3) 교육복지 사각지대 개선 방안 .....         | 126        |
| 4) 온라인 법교육 .....                 | 127        |
| 5) 교육 환경 개선 방안 .....             | 128        |
| 6) 컨트롤 타워 .....                  | 129        |
| <br>                             |            |
| <b>V. 논의 및 시사점</b> .....         | <b>131</b> |
| 1.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목표 .....          | 131        |
| 2.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주제와 내용요소 선정 ..... | 131        |
| 3.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방법 .....    | 139        |
| 1) 수업 시수 개선 방안 .....             | 139        |
| 2) 주제 선정 방법과 내용요소 구성 방법 .....    | 139        |

|   |                |
|---|----------------|
| 3)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개발 .....                           | 140            |
| 4) 교육 자료 개선 방안 .....                              | 141            |
| <b>4.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전문 강사의 역량 및 교육 .....</b>         | <b>142</b>     |
| 1)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에게 필요한 역량 .....                   | 142            |
| 2)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의 다문화역량 강화 .....                  | 144            |
| 3)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 양성과정 개선방안 .....                  | 144            |
| <b>5.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운영 체계 개선 .....</b>              | <b>145</b>     |
| 1) 한국어 실력을 고려한 분반 .....                           | 145            |
| 2) 참여증진 방안 .....                                  | 146            |
| 3) 교육복지 사각지대 개선 방안 .....                          | 146            |
| 4) 컨트롤타워의 수립 .....                                | 147            |
| <br><b>VI. 결론 .....</b>                           | <br><b>149</b> |
| <br><b>참고문헌 .....</b>                             | <br><b>152</b> |
| <br><b>&lt;부록 1&gt;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추출 과정 .....</b> | <br><b>162</b> |
| <b>&lt;부록 2&gt;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내용요소 추출 과정 .....</b>   | <b>165</b>     |
| <b>&lt;부록 3&gt; 설문 조사지 .....</b>                  | <b>170</b>     |
| <br><b>ABSTRACT .....</b>                         | <br><b>189</b> |

## <표 목차>

|   |    |
|---|----|
| <표 1>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법교육에 해당하는 내용 .....     | 35 |
| <표 2>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 .....  | 38 |
| <표 3>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                 | 39 |
| <표 4>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프로그램 주제 .....         | 50 |
| <표 5> 기관별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현황 및 특징 .....      | 59 |
| <표 6> 설문조사지의 구성 .....                   | 62 |
| <표 7> 설문조사지 타당도 확보를 위한 전문가(총 14명) ..... | 65 |
| <표 8> 설문조사 대상별 회수율 및 분석 대상 .....        | 69 |
| <표 9> 응답자 배경 변인 .....                   | 72 |
| <표 10> 다문화 관련 이수한 자격(증)(다중응답) .....     | 72 |
| <표 11> 진행한 결혼이주여성 법교육(다중응답) .....       | 73 |
| <표 12>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        | 77 |
| <표 13>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와 해당 내용 .....       | 79 |
| <표 14>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  | 80 |
| <표 15> ‘체류자격 및 이주’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 82 |
| <표 16> ‘인권과 기본권’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 83 |
| <표 17> ‘민주주의와 정치제도’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 84 |
| <표 18> ‘혼인’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 85 |
| <표 19> ‘자녀’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 86 |
| <표 20> ‘이혼’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 87 |
| <표 21> ‘상속’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 88 |
| <표 22> ‘근로’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 89 |
| <표 23> ‘소비’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 90 |
| <표 24> ‘부동산’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 91 |
| <표 25> ‘범죄(발생)예방’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 92 |
| <표 26> ‘범죄피해예방’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 93 |
| <표 27> ‘기타 준법생활’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 94 |
| <표 28> ‘법률구조와 지원’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 95 |
| <표 29> ‘사회보장(지원)제도’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 95 |
| <표 30>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적당한 교육 기간 .....      | 97 |
| <표 31> 정기적 교육으로서 연간 수업 시수 .....         | 98 |
| <표 32>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법교육 시수가 적당한지 .....    | 99 |



|  |     |
|--|-----|
| <표 33>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선택 방법(다중응답) .....       | 100 |
| <표 34>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의안 내용 구성 방법 .....         | 101 |
| <표 35>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난이도 .....                 | 102 |
| <표 36> 결혼이주여성이 법교육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다중응답) .....   | 103 |
| <표 37>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 .....                     | 104 |
| <표 38> 사용하는 교재(다중응답) .....                   | 106 |
| <표 39> 사용하는 강의안(다중응답) .....                  | 107 |
| <표 40> 한국법교육센터 제공 강의안 중 활용하는 강의안(다중응답) ..... | 108 |
| <표 41>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의안 활용 방법 .....            | 108 |
| <표 42> 배부할 필요가 있는 학습 자료(다중응답) .....          | 109 |
| <표 43> 학습자료로 제공해야하는 언어 .....                 | 110 |
| <표 44> 결혼이주여성 강사에게 필요한 역량 .....              | 112 |
| <표 45> 이주민 법교육 강사의 역량 강화 방안 .....            | 113 |
| <표 46> 이주민 법교육 강사의 다문화역량 강화 방안 .....         | 115 |
| <표 47> 이주민 법교육 강사 대상 적절한 교육 시수 .....         | 117 |
| <표 48> 강사 교육에 필요한 내용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       | 118 |
| <표 49> 강사 교육 개선 방안 .....                     | 120 |
| <표 50>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애로사항 여부 .....              | 121 |
| <표 51>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 있어서 어려운 점(다중응답) .....     | 122 |
| <표 52> 분반 방안 .....                           | 124 |
| <표 53>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참여증진 방안 .....              | 125 |
| <표 54>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사각지대 개선 방안 .....           | 126 |
| <표 55> 결혼이주여성 온라인 법교육 방안 .....               | 127 |
| <표 56>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환경 개선 방안 .....             | 128 |
| <표 57>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컨트롤타워 수립 방안 .....         | 130 |
| <표 58>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및 내용요소의 우선순위(종합) .....  | 132 |
| <표 59> 현재 개발되어있는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         | 162 |
| <표 60>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추출과정 .....              | 164 |
| <표 61> 내용요소 핵심어 추출 과정 .....                  | 165 |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한국의 이민정책의 목표는 이민자의 통합이며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을 하나의 정책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민정책의 목표로서 이주민 통합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인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 외국인유학생, 난민 등은 모두 이민자라는 하나의 정책 범주안에 들어 있다. 그러나 서구 이민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가족이민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로서 입국 시부터 정주 목적 체류자는 결혼이민자 뿐이다. 정주목적 체류자로 보기 쉬운 장기 체류외국인인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법적으로 정주가 허용되지 않으며, 경제적 이유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다 자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생각하였다(김현숙·김옥녀, 2017: 147). 국민 일반과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이들 중 결혼이주여성을 잠재적 영주이민자로 인식하며,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단기 거주자’로 인식한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국민의 가족으로 편입되는 반면, 이주노동자는 영주이민이 아닌 최대 4년 10개월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격으로 한국사회에 들어온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약속된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들의 모국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김태환, 2017: 132).

한국사회는 1980년대 후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시작으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김민수·이현지, 2017: 226). 2018년 5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2,246,137명이다. 이 중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은 58만 1,084명으로 25%를 차지하고, 결혼이주여성은 13만 944명으로 5.8%를 차지하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 수치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다문화 양상을 설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대상

이기 때문이다(김민수·이현지, 2017: 226).

결혼이민자<sup>1)</sup>는 통계집계를 시작한 2001년에 2만 5,182명에서 2018년 5월말 현재 15만 6,766명으로 약 6배 늘어났다. 이는 전년 대비하여 1.9% 늘어난 수치이다. 결혼이민자(156,766명)는 전체 체류외국인(2,246,137명)의 6.9%를 차지하였다. 결혼이민자 중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 결혼이민자는 13만 944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의 83.5%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인 결혼이민자보다 여성인 결혼이민자가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 체류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45,663명), 베트남(40,231명), 일본(12,301명), 필리핀(11,464명), 기타(10,789명), 캄보디아(4,339명), 태국(3,889명), 몽골(2,268명) 순으로 나타났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이 살던 곳으로부터 새로운 공동체로 건너와 다른 가치, 신념, 생활양식이 다양하게 적용되는 사회에서, 스스로 이에 적응하기 위한 대안적인 사고 및 생활방식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기여이 참여하기를 요구받는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한국 사회의 이민자들이 그들의 자율적인 삶을 위해서 선택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아주 중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이민·다문화교육은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달교육 그리고 이중 언어 교육 등 단편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왔다(전숙자 외, 2009).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이 살던 국가와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로 유입되면서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문화 전달 교육과 한국어 교육 외에도 다양한 교육 지원을 필요로 한다. 서울 이주여성 상담센터 2018년 3월 상담통계<sup>2)</sup>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가

---

1)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는 2009년 이전(F-1-3, F-2-1), 2010년 이후(F-2-1, F-5-2), 2011년 12월 이후(F-2-1, F-5-2, F-6)에 각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018년 5월 말 현재 이미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는 12만 4,319명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

2) 서울 이주여성 상담센터(<http://www.wmigrant.org/wp/%ec%84%9c%ec%9a%b8%ec%9d%b4%ec%a3%bc%ec%97%ac%ec%84%b1%ec%83%81%eb%8b%b4%ec%84%bc%ed%84%b0-3%ec%9b%94-%ec%83%81%eb%8b%b4%ed%86%b5%ea%b3%84-2/>)

장 많은 상담 유형은 일반법률(27.27%), 가정폭력(19.78%), 채류문제(14.55%), 부부갈등(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이 요청하는 상담의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법률문제와 관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상생활 전반이 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69.1%가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을 비롯하여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학대, 방임, 통제 행위 중 하나 이상의 가정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그 예로 결혼이주여성이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 사망에 이른 사건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신체적 폭력 외의 사례로는 친정이나 본국에 대한 모욕, 생활비나 용돈을 전혀 주지 않는 행위, 원치 않은 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기회를 박탈, 무급 또는 적은 월급을 지급하며 노동 착취,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빼앗거나 외출을 금지시키는 행위, 낙태 강요, 고국과의 단절을 시키기 위해 본국방문 금지는 물론이고 본국으로 송금을 금지하거나 본국식구와 연락조차 금지시켰다. 또한, 소수이나 시집식구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강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김혜림·김재남, 2017: 83). 결혼이주여성은 인권 침해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에도 노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도움을 요청하고 구제받는 것에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에 구제를 받는 방법을 모르거나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이렇게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로 인하여 다른 범문화에 편입되면서 이주민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자신의 인권과 권익을 종종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은 다른 어떤 이주민보다 광범위하게 생활의 전 분야에서 새로운 법률관계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히 사회적응을 위한 법교육과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정상우·최보선, 2014a: 102).

이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혹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램의 문제점을 제기한 연구들이 있다. 현행 이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다문화 정책의 목적이나 효과성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사업의 체계성과 연속성 부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실제 필요성에 근거한 추진 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박성혁·옹진환, 2007; 이재분 외, 2009).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사회 다문화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이 반복적인 한국어 교육과 일회적·단기적 프로그램 위주, 집합교육 방식에서 느끼는 불편함, 지역 실무자들이 느끼는 불충분한 예산 및 인력운용 문제점, 그리고 개인별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즉 기존의 결혼이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개인별수준과 능력차를 고려한 한국어교육 부재, 단기적 일회적 프로그램 운영, 출석 중심 수업으로 인한 낮은 접근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모경환·안성훈·우희숙, 2012: 37). 이와 같은 이주민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 있어서도 나타나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교육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내실화 및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 대상 교육 중에서 법교육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재 결혼이주여성 대상 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효과적인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강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사양성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내용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 강사 측면에 있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내용면, 운영면, 강사면에 있어서 발전 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 1-1.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 1-2.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는 무엇인가?
  - 1-3.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가운데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는 무엇인가?
2.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 2-1.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효과적인 교육 시수와 교수학습 방법은 무엇인가?

2-2.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 있어서 제공되어야 할 교육 자료는 무엇인가?

2-3.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교육환경에 있어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3.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더불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3. 선행연구

국제결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 초 이래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 적응이나 가정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가 다수 있다(김규식·소진광, 2016: 211). 결혼이주여성들은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수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Berry(2005), Fugita & O'Brien(1985)는 결혼을 전제로 한국에 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은 새로운 가족이라는 가족 문화까지도 적응해야 하는 다차원적인 문화적응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김규식·소진광, 2016: 214 재인용). 결혼은 자신이 살던 환경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Murphy(1997)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에게 친숙했던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이에 정착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를 겪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Singhammer & Bancila(2011)는 1만 1,500명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1년간 경제적인 문제로 긴장을 받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하며 앞선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김규식·소진광, 2016: 215 재인용).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부적응을 중요한 사회 문제로 보고 있다(황갑진, 2015: 17). 국내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맞춰 이렇다 할 대비책이 없는 가운데 갑자기 증가한 국내유입 외국인들은 여러 가지 사회 부적응 현상을 가져왔으며, 이들의 유입에 맞춘 필요한 제도적 준비가 마련되지 않았다(나달숙, 2014: 32). 다문화 가족의 양적 팽창은 가족구조의 변화 및 여러 가지 가족 관련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국제 결혼은 가사부담, 양육, 교육 등에서의 어려움과 체류자격에 대한 불안정, 의사소통의 어려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이질적인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등 다양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내포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윤형숙, 2004; 이혜경, 전해인, 2013; Thanh, 2005). 이질적인 문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문화적응스트레스’라고 하는데(고예정, 2014; Hovey & Magana, 2002; 한수연 외, 2017: 2 재인용), 결혼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문화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생활하는 국내 결혼여성이 갖는 스트레스와는 다른 종류의 것으로 한국인과의 결혼 및 한국으로의 이주 등을 통해 새로운 한국 문화를 경험할 때 기존에 경험했던 자국의 생활 문화와 이질감이 생겨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개인 또는 집단이 경험하는 현상으로 이주자의 대부분은 심리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것이 축적되어 만성적인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균형을 깨뜨리게 된다(Nwadiora & McAdoo, 1996; 한수연 외, 2017: 2 재인용). 결혼이주여성의 부적응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이민자가족 전체 또는 이민자가족 자녀의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김규식·소진광, 2016: 209).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상우·최보선(2014a)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과 권익 보호, 민주주의와 참여의 강조, 문화적 다양성 인정 등의 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 대한 시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수요 반영, 법교육과 법률구조와 연계 등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최보선(2013)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이주민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사회이해 교재 중 법교육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형식면에서는 법교육의 비중을 강화하고 법교육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내용면에서는 실생활 중심의 법교육과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민주주의, 혼인, 이혼, 취업 등 중요한 핵심어 위주로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자료면에 있어서는 사례 중심, 체험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1)은 범죄예방에 초점을 두고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하였고, 총 10차시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외에도 결혼이주여성만을 위한 법교육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다문화사회의 법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상준(2009)은 다문화사회에서 법교육의 목표는 이주민의 기본권에 대한 이해, 이주민의 기본권 구제 방안, 이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전제철(2010)은 다문화 법교육의 개념 정립을 시도하였고, 다문화 법교육의 목표는 헌법에 나타난 기본적인 인권 및 인류의 공감대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을 지향하면서,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 개별 기본권을 중심으로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의 정신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범구(2010)는 이주민 법교육의 개념, 목표, 기능, 필요성, 전제조건과 유의 사항 등이 제대로 정립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언어, 사회, 문화 및 국제이해교육 등 다문화교육의 한 분야로서, 이주민 법교육의 위치를 조명하였다. 모경환·안성훈·우희

숙(2012)은 법교육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력 취득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결혼이주민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소은선(2011)은 체류외국인의 범죄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인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법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정우(2007)는 새터민을 대상으로 법교육의 효과성을 밝혔다. 두 집단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이론중심 강의와 체험학습의 효과성 비교를 위한 연구를 하였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주민 헌법교육이 있다. 이주민 헌법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상우·최보선(2013; 2014b)은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헌법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주민 헌법교육은 국가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인권보호, 인권의식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와 정치질서에 대한 이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다현(2011)은 다문화교육의 일환으로 헌법교육을 제시하면서 평등권 교육을 헌법교육의 내용요소로 꼽았다.

이 외에도 다문화사회와 헌법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선택(2010)은 다문화사회에서 헌법교육은 다문화사회 혹은 이민자 사회에서 헌법이 가지는 통합적 기능 또는 공동체 구성원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오승호(2011a)는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헌법애국주의 관점에서 다문화사회 헌법교육의 필요성을 연구하였다. 다문화사회에서 정치공동체의 공통된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보편적인 가치로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들었으며, 인간의 존엄성, 상호존중과 참여, 헌법과 공동체에 대한 반성적 존중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사회에서의 법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법교육 프로

그럼 연구에 있어서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거의 연구되지 않았거나, 연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의 목적, 내용, 운영, 강사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밝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 있어서 목적과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제 및 내용요소를 밝히고,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과 이주민 대상 법교육 강사에게 필요한 역량과 양성과정을 제시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필요성

#### 1) 이주의 배경과 새로운 법문화의 전환

결혼이주여성<sup>3)</sup>은 한국 사회에 정착<sup>4)</sup>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기별로 필요한 도움이 있을 것이다. 한국체류기간이 5년 이내의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오랜 거주기간의 여성

3) '결혼을 동기로 국제 이주한 여성 집단'은 여성결혼이민자, 결혼이주여성, 결혼이민여성, 결혼이민자 등 약 65가지 이상의 명칭으로 호명되고 있다. 65종의 명칭 중에 연도별 출현 빈도를 분석한 결과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명칭은 '결혼이주여성'으로 나타났다(이화숙, 2013: 259-268). 법률적으로는 '결혼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상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구성원으로서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을 말하며,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혹은 ② 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국적법」 제4조)한 자를 말한다. '이민'이라는 단어는 정책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주'는 사회학적 용어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민'이라는 용어 대신 '이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이라고 칭하였다. 첫째, 결혼을 통한 이주가 영주권취득이나 국적 취득 등과 같은 안정적 이민으로 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송민애, 2008). 둘째, 그들의 정체성을 고려하면 이민자라는 용어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다(송민애, 2008). 다문화 시대를 배경으로 새로이 생성되는 명칭은 가치 중립적이며 사회적 편견이 배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명칭에 내포된 의미가 대상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최소화하여야 한다(이화숙, 2013: 26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이주해 온 외국인 여성을 '결혼이주여성'이라고 칭하였고, 남녀를 구분하지 않을 때는 '결혼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4)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하여 사회적응과 함께 빈번히 사용되는 것이 '정착' 개념인데, 정착은 보통 정부의 '지원정책을 연구초점'으로 할 때 사용되고, '적응'은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을 연구초점'으로 할 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정착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아 붙박이로 있거나 머물러 삶"이다. 따라서 정착화는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문화적 '적응과정'을 말한다. '적응'이라는 용어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김규식·소진광, 2016: 209)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적응'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착'과 '적응'을 혼용하였다.

들에 비해 한국 문화, 사회적응의 어려움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현숙·김옥녀, 2017: 181). 시기상 입국 초기에는 사회복지 혜택과 한국어 교육 등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그동안의 국내 문헌 연구를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생활 적응의 가장 힘든 점으로 언어습득을 지적하였다(김순옥 외, 2013). 국제결혼은 이미 언어적 소통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어로만 소통하는 가족 내에서 소수자의 위치에 있다(정혜영·김진우, 2010: 38). 김미원(2014)의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 능력정도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국제결혼을 통한 이문화 간의 가족결합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정혜영·김진우, 2010: 50).

기초 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한국어교육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법교육, 정치교육, 경제교육 등을 필요로 한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으로 이주해오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오는 등 자국과는 다른 법문화에 편입된다는 점에서 특히 법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법문화라는 용어는 오늘날 상이한 맥락 속에서 나타나며, 그 범위는 법사회학, 법률학 문헌부터 정치학과 정치담론 및 신문기사까지 이른다. 법문화는 한 사회의 일반적인 정치문화를 지칭하며(R. Dworkin, J. Habermas, C. Varga 등), 하나의 정치공동체의 문화 발전을 위한 규범적 틀을 나름의 입장에서 제시(P. Häberle)한다(G. Mohr, 2003: 115). 결혼이주여성이 다른 법문화에 편입될 때 법문화라는 정치공동체의 규범적 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은 법문화가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기초질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법문화의 이해를 통하여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초질서와 민주주의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5월 말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는 총 15만 6,766명이며, 이 중 여성은 83.5%(13만 944명)이다.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중 여성은 국적별로 보면 중국(45,663명), 베트남(40,231명), 일본(12,301명), 필리핀(11,464명), 기타(10,789명), 캄보디아(4,339명), 태국(3,889명), 몽골(2,268명) 순으로 나타났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은 한국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높고, 그에 더해 타 동남아 국가들보다 문화적 공통점이 높은 것이 그 요인이라 볼 수 있다(두문영·조진경, 2017: 113). 한국 남성은 언어 소통 등의 문화를 공유하는 중국 조선족 여성과의 결혼을 선호하고, 2003년 한중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과 중국 어디서든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실시되면서 한국 남성과 중국 여성의 국제결혼의 건수는 더욱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 중국결혼이주여성은 이주를 통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두문영·조진경, 2017: 114). 중국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의 차이를 일상에서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는다(최금혜, 2010). 중국은 한국(남한)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다른데, 이는 주로 중국과 한국이 걸어온 근대사의 간극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1960년대 산업화를 거쳐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남한사람들의 사고 또한 자유경쟁 시장경제의 원리를 체질화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해방전쟁을 경험하고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였고 문화대혁명을 거쳐 비자본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통제적인 계획경제의 원리를 체질화했다. 이러한 정치적 이념상의 차이는 역사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태도 등에서 남한사람들과는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문형진, 2008; 박준성·허성호·전미연·정태연, 2015: 24 재인용).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로 두 번째로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이다. 베트남의 경우 여권이 강하다는 점 등에서 한국과 범공동

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오옥선·김성봉, 2012; 정혜영·김진우, 2010: 32; 이은주·전미경, 2014; 이상노·이현심, 2014).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사회적 고립,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최미경, 2014). 결혼생활에 있어서 주로 갈등을 겪는 부분은 문화 차이, 역할에 대한 기대, 자본주의와 가족주의 가치관의 충돌, 남편의 폭력 등으로 볼 수 있다. 유교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강했던 여성의 권위를 인정해 왔고,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적극적인 여성참여 요구에 따라 베트남의 여성들은 직접 전쟁에 가담하는 한편 생산의 주역이었다(정연식·황영주, 2004). 베트남은 가족 공동체이면서 국가공동체이다. 대소사를 여성이 결정을 하고 가족을 대표하는 호주도 될 수 있으며, 재산 소유권, 상속권 등에도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경제 생산 활동에서도 여성의 지위가 높음을 나타낸다. 베트남의 생산에서 기본은 자연채취와 농업이다. 베트남의 농업은 소농이며, 자급자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여성의 지위를 높게 만드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여성의 지위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은 결혼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혼 전 여성은 결혼 후의 살 곳을 결정하거나 결혼 절차와 재산 소유와 상속문제 그리고 이혼제도에서도 여성의 권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분야에서 베트남여성의 권리가 남성과 편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윤향희, 2017: 87).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나 가족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따른 추방이나 불법체류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생활을 참아내는 경우가 많다(안인영 외, 2017: 200). 우리 사회에 편입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만, 가부장적인 문화를 법문화로 오인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정상우·최보선, 2014a). 결혼이주여성이 법교육을 통해서 한국의 법질서를

학습하고 법문화를 이해한다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이 공동체의 법적 관계에 적응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2) 일상생활에서 법률 분쟁의 발생과 대처의 미흡

결혼이주여성은 입국 초기에는 “체류자격(국민의 배우자)을 가진 외국인 신분”으로 시작해서 체류자격의 연장, 영주권, 국적취득 등의 단계를 거쳐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각종 법적 문제를 접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 입국하면서부터 출입국(국적, 비자 등 체류), 일상적 계약, 혼인, 자녀 양육 및 교육문제, 근로, 의료·보건 및 사회보장, 가정폭력, 이혼, 상속, 범죄피해(성범죄 등) 등에서 법적 분쟁을 겪을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법률문제에 관해 선행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이승우(2007: 258-266)는 결혼이주여성의 법률문제를 국적취득, 강제퇴거, 위법한 국제결혼중개, 위장혼인, 가정폭력 피해를 예시하고 있다. 나달숙(2010: 17)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문제를 국적취득, 체류기간 연장, 사회보장수혜 제한 등을 들고 있다. 이승익(2010: 323-324)은 결혼이주여성의 법률구조를 가정폭력,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직장 내 성희롱 등, 이혼소송으로 분류하였다. 장혜진(2010: 332)은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국적취득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이외에도 가정폭력의 문제도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이흥우(2015: 9-18)는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은 국내 체류, 혼인 등과 관련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미 국적을 취득하고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가족들은 주택임대 등 부동산 관련 문제나 상속분야, 근로관계 등에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법적 문제들 중 발생 빈도



가 높거나 관심이 많은 분야는 이혼 후의 국내 체류, 영주권·국적취득 등, 국적신청불허가처분의 경우 구제, 체류기간연장불허, 강제퇴거, 출국 명령 등의 경우 구제, 이혼, 혼인무효·취소, 자녀문제(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재혼 등의 경우 자녀의 친자관계, 입양과 과양 등), 상속 등이라고 밝혔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결혼이주여성이 주로 겪는 법률 문제는 체류와 국적, 가정폭력, 이혼, 상속, 근로, 자녀의 국적과 입양, 성범죄(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직장 내 성희롱 등), 결혼중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문제로 볼 수 있다.

2018년 3월 서울 이주여성 상담센터의 상담통계<sup>5)</sup>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은 상담 유형은 일반법률(27.27%), 가정폭력(19.78%), 체류문제(14.55%), 부부갈등(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이 요청한 상담 내용의 대부분이 법률 문제이며, 법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 이주여성 상담센터의 상담통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상담 유형으로 나타난 가정폭력과 세 번째 많은 상담 유형인 체류문제는 선행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법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으나, 사회적 약자로서 도움을 요청하고 구제받는 것에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김혜림·김재남, 2017: 93). 결혼이주여성이 직면하는 법적문제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신의 출신국과 다른 법체계에서 생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방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정상우·최보선, 2014a). 결혼이주여성은 우리나라의 까다로운 국적 취득 요건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기가 어려우므로 체류기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혼 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관한 신분적 불안정감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감수하고 생활하는 여

5) 서울 이주여성 상담센터

(<http://www.wmigrant.org/wp/%ec%84%9c%ec%9a%b8%ec%9d%b4%ec%a3%bc%ec%97%ac%ec%84%b1%ec%83%81%eb%8b%b4%ec%84%bc%ed%84%b0-3%ec%9b%94-%ec%83%81%eb%8b%b4%ed%86%b5%ea%b3%84-2/>)

성도 많다(김혜림·김재남, 2017: 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1: 20)의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경제적 학대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응답자들의 대처방식을 분석한 결과,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적극적으로 외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외부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결혼생활 파탄과 남편, 시댁식구들의 보복에 대한 염려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법적 문제를 겪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 입국한 후 일생에 걸쳐 각종 법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법교육을 통하여 비판적 사고능력과 법적 사고력을 함양하고, 법률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3) 차별과 인권 침해 발생

결혼이주여성은 차별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를 겪고 있다. 현지에서의 혼인 전 단계부터 혼인 성사 후 한국으로 이주를 하여 시작된 결혼 생활 및 한국의 국적 취득 시까지 결혼이주여성은 많은 인권침해적 문제를 겪는다(김혜림·김재남, 2017: 83). 결혼이주여성은 ‘이주’ 배경을 가진 ‘여성’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주민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겪게 된다(노호창, 2017: 164). 내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태도와 이해부족, 편견으로 인한 이들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은 이주민의 국내정착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다(나달숙, 2014: 32).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민의 경우에는 국제결혼과정에서의 다양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결혼 후에도 본인뿐 만이 아니라 자녀까지도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달숙, 2014: 32). 결혼이주여성은 가족으로부터 단절, 소외감, 차별 등의 문제들로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꽤 오랜 시간, 다양한 다문화정책들이 결혼이주민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왔지만 결혼이주민들에 대해서조차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주지 못하였고, 이들은 한국사회가 자신들에 대해 여전히 배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김현숙·김옥녀, 2017: 149).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자긍심이 강했던 한국사회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차별과 편견이 많은 상황이다(이한우·송형철, 2015; 장미·전종설, 2013)<sup>6)</sup>.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결혼이주여성이 스스로 인권의식을 갖고 있어야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교육이 시급하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익숙하지 못하여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출입국 절차에서부터 사회 공동체에 정착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가족과 이웃,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나, 언어적 장벽, 문화적 차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스스로 권익을 지켜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권익보호와 구제를 위

6) 사회적 편견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이 염려할 만한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2011년 전국 19세에서 74세 2500명을 대상으로 국제비교 지표를 활용하여 조사하고 2012년 5월 발표한 여성가족부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조사에서 조상의 혈통을 중시한다는 답변이 미국 55%, 스웨덴 30%, 일본 72%로 나왔는데 한국은 87%나 되었다. 또한 다문화 공존에 대한 찬성의 비율이 유럽 18개 국가의 국민은 약 74%로 나타났는데 한국인은 36%로 이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김태환, 2017: 140). 이주민의 배제와 차별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불평등, 인종차별과 같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다(김현숙·김옥녀, 2017: 186).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된 이주민을 영위할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인권침해와 차별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노호창, 2017: 163).

하여 결혼이주여성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도움을 받기 이전에 결혼이주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자세와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방법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정상우·최보선, 2014a).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필요한 법률과 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법교육을 통하여 제공한다면(나달숙, 2012: 27), 법교육의 의의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 4) 범죄피해 발생과 사전 예방의 필요성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 명예훼손과 모욕, 금융사기 등의 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범죄피해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가정폭력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02).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남편의 가정폭력 사례가 이주여성단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김상찬·김유정, 2011: 323). 그러나 가정폭력을 당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창원여성의전화 보고서(2006)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이 이혼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식을 빼앗길까봐’(42.1%),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10.5%), 모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워(10.5%), 언젠가는 나아지리라는 희망 때문(10.5%)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다음으로는 가족관계나 결혼중개업자나 취업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많이 경험한다. 이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게 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02). 또한 최근에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고 한국 사회에서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새로운 법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결혼이주여성 상담 지원 단체의 상담사례에 많이 보고되

지는 않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가족들이 여성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결혼이주여성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설하고 청구요금을 여성에게 전가한다거나, 결혼이주여성이 투자한 재산권을 인정해 주지 않고 명의에서 제외한다거나, 결혼이주여성에게 연대보증을 세우고 빚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20-121). 이 외에도 한국인도 많이 당하는 범죄인 피싱과 대포통장 등의 금융사기는 결혼이주여성도 범죄 피해를 당하기 쉽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어있으며 범죄 피해가 발생한 후에 구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이 일상생활과 관련한 법적인 정보의 취득과 법률생활을 위한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여성으로서 입기 쉬운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나달숙, 2012: 27).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법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법교육을 통해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 2.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제도화 및 목적

### 1) 법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

결혼이주여성은 다른 이주민과는 달리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귀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행 이주민 관련 입법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난민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법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법교육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다. 이 법률들을 근거로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법무부에서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2013: 2)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3조의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0조 내지 제17조 및 제20조, 제21조, 국적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제1023호),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관리 규정(예규)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2018: 1)

법교육지원법은 제2조 제1호에는 법교육을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

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교육의 의의를 규정하면서 법교육의 대상이 “청소년 및 일반국민”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국민으로 한정하고 이주민 또는 재한외국인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정상우·최보선, 2014a: 103). 법교육지원법 제9조에서 ‘외국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법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법교육’이라고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에 법교육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2조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문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도 법교육을 명시한 것은 아니나, 법제도와 법문화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있으며, 이에 근거한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은 어떤 목적을 가져야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목적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민’이라는 점과 ‘여성’이라는 점에서 일반 국민보다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특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법교육의 내용요소도 결혼이주여성의 필요에 따라 일반 법교육과는 내용요소를 달리해야 한다(정상우·최보선, 2014a). 일반 법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

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 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법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 결혼이주여성 대상 법교육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과 통합이 강조되어야 하고, 나아가 결혼이주‘여성’ 스스로 가족관계나 생활관계에 있어 자주적으로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민주시민성을 함양하고 법률분쟁이나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정상우·최보선, 2014a: 105).

또한 법교육과 인권교육, 헌법교육, 민주시민교육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교육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개별적 교육으로 시행되기보다는 법교육은 인권과 권익 보호의 측면을 강조하고,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며, 민주시민 함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통합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 (1) 법적 사고력 고취 및 범죄피해예방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법교육은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법률 분쟁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법교육의 목표는 스스로 모든 법적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적 해결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해결 과정을 신뢰하며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법률적 절차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법적 사고의 방식을 이해하고 이에 따르는 사람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교육에 있어서 법적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법교육의 도달점이 ‘법조인 양성’이라기보다 ‘법적 사고력을 지닌 생활인 양성’을 지향한다는 것이다(곽한영, 2006: 3-4).

앞서 제2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 입국하면서부터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체류와 국적,



혼인, 가정폭력, 자녀의 국적과 입양, 이혼, 상속, 근로, 사회보장제도, 성범죄와 기타 범죄 등에서 법률 분쟁을 겪을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기본적인 법적 권리와 관련된 문제로 빈번하게 겪는 어려움은 인종·국적·피부색·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결혼과 이혼에 따른 권리와 의무, 취업관련 문제들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범죄피해와 관련하여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이 중요한 피해 사례로 나타난다(최영신 외, 2011: 29).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교육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은 일상생활과 관련한 법적인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을 향상하여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지에 대해 알도록 해야한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은 여성으로서 입기 쉬운 범죄의 종류와 범죄피해 예방법을 학습하도록 하여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법적 문제에 있어서 일반시민보다도 취약계층이므로 법률 상담이나 법률구조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교육은 범죄예방이나 법의식 함양 등 사전적 의미가 강하지만 법률 상담이나 법률 구조는 사후적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법교육과 법률 상담·구조와는 구별된다. 법교육과 법률상담, 법률 구조의 관계에 대한 시민법교육의 곽한영(2012: 18-19)의 연구를 살펴보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법적 정보의 제공을 크게 '①법교육, ②법률상담, ③소송대리'의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각 내용은 '분쟁 이전 단계, 분쟁 초기 단계, 분쟁 단계'에 중첩적으로 대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①시민법교육(PLE)은 포괄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의 법적 관심을 고양하여 법적 소양을 향상시켜 분쟁을 예방하고 초기 분쟁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통해 주로 '분쟁 이전 단계, 분쟁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구조나 정보 제공

을 목표로 하는 ②법률상담은 ‘분쟁 초기 단계, 분쟁 단계’, 그리고 직접 법적 분쟁에 법전문가들이 개입하는 ③소송대리는 ‘분쟁 초기 단계, 분쟁 단계’에 걸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법률구조는 그 행위가 일어나는 시점이 법률문제 발생 후라는 점에서 법교육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법교육과 법률구조는 구분된다.

그러나 실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법교육 과정에서는 법교육과 법률구조의 구별이 완화되거나 또는 긴밀히 연결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법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법적 권리를 확보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경우가 많고, 법교육 현장에서 자신의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법교육과 법률구조가 구별된다는 점에서 법교육은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는 지점에서 법교육이 법률구조로 전환된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정상우·최보선, 2014a: 114). 법교육이 법률상담을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상담이나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즉, 결혼이주여성은 법적 영역의 사회적소수자라는 측면에서 법교육과 법률구조 또는 법적지원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인권보장과 권익증진

결혼이주여성은 출신국과 다른 법체계 내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법지식을 익히게 하여, 한국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게 해야 한다(나달숙, 2012: 27).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법교육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스스로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정상우, 최보선 2014a).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민이라는 점과 여성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결혼이주여성은 사회와 가정에서 차별을 받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김혜림·김재남, 2017: 83; 김현숙·김옥녀, 2017: 149; 이한우·송형철, 2015; 장미·전종설,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법교육과 인권교육을 구분하여 별도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법교육에 있어서 인권과 권익 보호의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이 스스로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교육과 인권교육은 차이점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볼 수 있다. 법교육은 인권교육과 달리 합목적성, 법적안정성이라는 법 이념과의 균형을 고려하고, 실정법 준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권교육은 실정법을 인권의 기준에서 판단한다는 차이가 있다. 법교육은 법을 중심으로, 인권교육은 인권을 중심으로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현할 것인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교육과 인권교육과의 괴리를 느끼는 인식을 극복하고 양자가 균형있게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오승호, 2011b: 119-120). 법교육은 법적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인권교육을 종국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교육이 초점을 두고 있는 법적 지식과 법적 사고력, 법적 문제의 합리적 해결 능력도 정의와 인권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허종렬, 2009). 궁극적으로 법교육과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대상과 목적은 같다고 볼 것이며, 각각의 접근에서의 공통 부모를 찾아 이를 확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이대성, 2008 : 73). 즉, 사회적 소수자는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대상 법교육에서는 이러한 법교육의 목표와 더불어 인권교육적 측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3) 헌법적 가치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결혼이주여성은 법교육을 통해 한국의 기초질서와 법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고 헌법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에게 법교육과 더불어 헌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은 헌법은 우리 국가공동체 형성의 근간이 되는 최고규범이기 때문이다(정상우·최보선, 2014b: 98). 헌법이 최고규범이라는 것은 한 공동체 내의 법규범 구조에서 헌법이 최고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은 주권자이자 헌법 제정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주권적 결정으로 만들어지고, 모든 법규범이 헌법에서 파생되어 창설되므로 헌법은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법규범의 존재와 내용과 효력에서 최고 우위를 점하고 있다(정중섭, 2016: 30-31).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의 근본과 그 질서를 형성하는 공동체의 근본법(정상우·한회련, 2018: 156)이라는 점에서, 우리 헌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다면 결혼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 있어서 헌법이 가지는 통합적 기능에 주목하여야 한다. 헌법은 국적을 가진 국민, 즉 대한민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롭고 질서있는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김선택, 2010: 15-16). 다문화사회에서 정치공동체의 공통된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가치가 필요하다. 보편적인 가치의 대표적인 것이 인권과 민주주의이다. 민주법치국가의 헌법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선언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오승호, 2011a: 77-78). 헌법의 원리 또는 시민적 가치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내용이 담기기도 하고, 국가마다 헌법과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특수한 사정이 작용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의 비중이 국가마다 다를 수도 있다(정상우·

한회련, 2018: 156). 따라서 우리 헌법 공동체에 편입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 우리 헌법적 가치와 원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헌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합의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이 주체적으로 공존하려면 자신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법교육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지향하는 이상을 공유하며, 공동체 구성원에게 인정하는 인권의 내용을 습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교육은 필수적이다(정상우·최보선, 2013: 117-118). 헌법교육은 헌법을 가르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을 말한다. 헌법교육은 법학교육의 일부로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헌법교육도 있지만,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헌법교육은 법교육의 일부로서의 헌법교육을 의미한다(김현철, 2009: 95). 따라서 헌법교육은 단순히 헌법전에 있는 내용 요소를 가르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즉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 자유와 평등, 법치주의, 정의, 사회 구성원 간의 배려와 존중, 국가에 대한 존중과 정부의 권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정상우·최보선, 2013: 117). 결혼이주여성에게 헌법교육은 법교육과 별개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법교육을 통하여 헌법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도모할 수 있다.

#### **(4) 민주시민성 함양**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은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을 통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참여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민주시민성은 일반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격이나 권리 또는 의무라고 설명된다(정상우·최보선, 2013: 107). 민주사회는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 시민

의 참여를 최대한 권유하며, 다수에 의해 정해진 규칙을 존중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호한다(D. E. Campbell 저, 김영순 외 역, 2012: 55)는 점에서 소수자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생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Palmore(1981; 배경희, 2013: 4 재인용)는 사회참여를 한 인간이 개인의 삶 전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반경을 가족이외의 다른 구성원들로 확산시키면서 자신의 관계망을 넓혀가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몫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던 실태조사가 많지는 않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이 자아존중감이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는 조사된 바 있다(양순미, 2010; 이형하, 2010; 배경희, 2013).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참여율은 높지 않은 편으로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2015)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sup>7)</sup>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참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조사 결과, 각종 모임에의 참여가 모국인 친구모임(58.9%) 위주로 이루어지고, 종교활동(21.2%), 지역주민 모임(13.2%), 민간단체활동(9.4%)에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3명 중 1명으로, 사회활동 참여 욕구 자체가 부재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부모 역할 수행 정도를 보면, 식사·의복 등 자녀 돌봄이 3.7점으로 가장 높고, 자녀양육 정보 획득 노력 3.49점, 부모모임 참여 2.57점으로, 일상적인 돌봄은 비교적 많

7)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기존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있었던 '한국에서의 투표경험' 항목이 조사결과 활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여성가족부, 2016: 13). 따라서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전국의 7만3천여 가구가 참가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09)에 나타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현황을 보면, 정치활동 참여는 귀화한 결혼이주여성의 국내 투표경험은 56.7%,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결혼이주 여성의 투표경험은 8.2%로, 영주권을 얻은 뒤 3년이 지난 외국인이 19세 이상이면 지방선거투표권이 있음에도 여성 귀화자 및 영주권자의 투표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당 활동 가입(1.9%)도 매우 저조하였다(배경희, 2013: 5).

이 참여하는 반면 부모 모임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출신 남편은 일상적인 자녀 돌봄에 더 많이 참여하는 반면, 부모모임 참여 정도는 낮아 외국출신 배우자의 경우 부모모임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과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상호존중과 소수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정치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존중과 참여는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능력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인권을 구체적인 법적 권리화하는데 기여하고, 정치공동체의 문제 해결력을 높일 것이다(오승호, 2011a: 102). 다양한 인종, 민족, 집단이 서로의 권리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공생하는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교육을 통하여 법적 시민성을 형성해야 한다(박상준, 2009: 9-10). 서로 다른 개성과 선호, 이익을 가진 각자가 공존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끼리 무엇이 필요한지 성찰해야 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공존을 위한 가치, 관용의 의미 등을 내면화 시킬 수 있다(유사한 취지로는 전체철(2010)의 논문 참조).

### 3.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현황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법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높고, 이들은 법적 취약계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법교육 실태를 이해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기관별 교재, 강사, 교육 장소,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문헌연구(관련 교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자료 포함)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기관담당자 또는 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프로그램은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조기적응프로그램’, 한국법교육센터의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의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을 위주로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법교육센터의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의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을 말한다(법무부, 2013: 2).

한국법교육센터는 2006년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 부설로 설립되어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한국법교육센터는 2005년에 법무부와 법교육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에 법무부의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었다. 특히 초중등 법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노인, 이주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일반 시민 등 대상별 법교육을 연구 및 개발, 실시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에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문화교육센터를 설립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기관을 선정한 것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가운데 결혼이주여성을 직접적으로 교육대상으로 삼거나 결혼이주여성에게 필요한 법교육 내용을 구별하여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주로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결혼이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필요를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하고 있었다.

## 1)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법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한국사회 이해는 기본과정 50시간, 심화과정 20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본과정에서 정치교육 5차시, 법교육 7차시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결혼이주여성이 수강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함에 있어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1)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법교육

#### ① 교육 목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 중에서 ‘정치’ 과목과 ‘법’ 과목이 법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 중 ‘정치’ 과목의 목표는 ‘한국의 정치와 관련하여 민주주의 가치와 함께 현대 한국의 정치 발전, 정치 체계, 정부 형태, 정치 과정을 이해하고 한국과 외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함에 있다. ‘법’

과목의 목표는 한국의 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 상식을 갖추는 것에 있다(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2018: 162-164). 이는 한국 국민이 되는 것을 전제하에 설정한 목표로 볼 수 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가 다양한 이주민이라고 보았을 때에는 수정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자에게는 적합한 목표로 볼 수 있다.

## ② 교육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가 참여할 수 있다<sup>8)</sup>. 따라서 결혼이민자,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난민, 전문인력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이민자가 참여할 수 있다. 2016년 체류유형별 통계를 보면, 수강생 중 결혼이주여성이 50%이상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 유형별로 필요한 내용이 다르기도 하고 관심 주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주민 유형별로 수강할 필요도 있다. 다만, 수강생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에 해당하는 한국사회이해 중 정치교육과 법교육은 사회통합프로그램 1~4단계인 한국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들을 수 있으므로(혹은 사전평가 점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인정등급에 따라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단계부터 참여가 가능하다(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2018: 3). 따라서 교육 대상의 한국어실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

8) 단,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귀화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사전평가 및 교육 청강이 가능하다. 2016년 7월 1일부터는 의무로 참여해야 하는 대상이 있는데, 국적취득(국적회복, 특별귀화 제외)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가 영주자격(F57)을 신청할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2018: 2).

### ③ 교육 시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과 한국사회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교육은 이 중에서 한국사회 이해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사회 이해는 기본과정 50시간, 심화과정 20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본과정에는 정치교육 5차시, 법교육 7차시를 차지하고 있다. 심화과정에는 5과목 중 ‘대한민국의 국민’,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법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규 교육 외에 특강형태로 진행되는 기타 교육에 법질서 교육이 있다.

심화과정과 기타 교육은 선택이므로 기본과정까지 듣는다고 가정하면 총12시간 수강하는 셈이다. 다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프로그램이 주로 일회성에 그치는 것에 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는 정규수업 중 일부로 구성되어 있어 법교육을 12시간 이상 수강한다는 점에서 가장 많은 교육 시수를 확보하고 있고, 수업의 연계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 ④ 교육 내용

법무부에서 규정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제888호(전면개정 2013. 02. 25.)에 영역별 이수시간,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출입국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을 폐지하였다.<sup>9)</sup>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사회 이해」라는 교재를 발간하였다(법무부, 2013). 이 교재에서 법교육의 내용을 각 차시별 주제로 살펴보면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국민되기, 헌법상 국

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12. 10. 1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3. 1. 16.)으로 이와 중복하는 내용의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더 이상 존치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001611>)

민의 권리와 의무, 한국의 법집행 및 분쟁해결, 한국의 생활법률,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와 보호, 준법의 중요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교육 내용은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2018).

<표 1>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법교육에 해당하는 내용

| 구분               |                  | 내용                     |  |
|------------------|------------------|------------------------|--|
| 한국 사회 이해 중 정규 교육 | 기본과정<br>(총 50시간) | 정치                     | 한국의 정치 발전 과정과 현대 한국 정치의 특징, 한국의 정치 제도와 정부 형태, 한국의 선거제도와 한국인의 정치 참여, 한국의 사법제도, 남북한 관계와 한국의 국제관계 |
|                  |                  | 법                      |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자격과 절차, 법 집행 기관, 생활 관련 법률(재산, 가족 관련 법률 등)과 법적 권리 찾기, 준법정신                          |
|                  | 심화과정<br>(총 20시간) | 대한민국의 국민               |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국민 정체성의 특징,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권리, 4대 의무, 사회보장제도와 공공부조                                  |
|                  |                  | 대한민국의 법질서              | 가족 관련 법(혼인, 이혼, 출생, 사망, 상속 등), 범죄와 형벌, 형사 절차와 인권보호   |
| 기타 교육            | 법질서 교육(3시간 이내)   | 실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법률 및 법질서 |  |

‘한국사회의 이해’ 과정 영역 중에서 정치, 법률, 법질서 및 법문화를 법교육과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 보았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법과 정치’가 통합되어 하나의 교과로 가르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치를 법교육에 포함하였다.

#### ⑤ 교수학습방법 및 교육 방식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서 법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화상교육, 인터넷 강의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주로

집합교육이며, 강의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집합교육의 경우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또는 지역학습관에서 실시한다. 화상교육의 경우에는 중앙거점운영기관에서 운영하며, 일방향 동영상 녹화 강의가 아닌 전문강사와 교육생 간(강사 1명, 교육생 최대 9명) 쌍방향 온라인 실시간 화상강의 형태로 진행된다. 화상교육은 원거리 거주, 임신, 출산, 거동불편, 취업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참여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에 따라서 화상강의 개설 수는 제한될 수 있다(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2018: 29-30). 집합교육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화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실제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홍보가 잘 되어있는지, 신청 수 대비 얼마나 화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인터넷 강의식 교육은 유튜브<sup>10)</sup>에 각 차시당 10여분씩 제작되어 제공되고 있다.

## (2)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 환경

2018년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은 거점, 일반 기관을 포함하여 전국에 총 296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기관마다 다양한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기관은 거점운영기관과 일반운영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거점운영기관은 법무부의 직접 관리, 감독을 받으며 일반운영기관은 거점운영기관을 통해 법무부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거점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중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관련 전문 인력과 교육 및 연구 등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예산, 시설, 인력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경험 등 이민자 사회통합추진 실적이 우수한 기관 등의 순으로 선정하고 있다.

---

10) 한국사회이해 온라인 강의

(<https://www.youtube.com/channel/UCO9N2CfnBmFO0a-IDIClQvQ>)

### (3) 다문화사회 전문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의 자격 기준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영 제48조제1항제2호의 한국사회 이해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2 제1호에 따라 다문화사회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

나. 그 밖에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인정 요건 및 이수과목은 별표 2 제1호에 규정되어있다.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첫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한국어 교육 강사로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을 이수한 사람, 둘째,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3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이하 이 표에서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9학점,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셋째, 대학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선택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넷째,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단,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이민·다문화사회통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9학점,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이다.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은 <표 2>와 같다.

<표 2>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

| 구분                       | 교과목 명칭                                 | 교육시간 |
|--------------------------|--|------|
| 기본소양<br>7개 과목<br>(14시간)  | 오리엔테이션/설문조사/수료식                        | 2시간  |
|                          | 국제이주의 이해                               | 2시간  |
|                          | 다문화 명사 특강                              | 2시간  |
|                          | 아시아 사회와 문화의 이해                         | 2시간  |
|                          | 유럽(러시아 포함) 사회와 문화의 이해                  | 2시간  |
|                          | 이슬람 사회와 문화의 이해                         | 2시간  |
|                          | 해외 한민족 이해                              | 2시간  |
| 전공소양<br>25개 과목<br>(66시간) | 한국의 이민정책 이해                            | 2시간  |
|                          |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이해  | 3시간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방문취업제도 이해       | 2시간  |
|                          | 「국적법」과 가족법 이해                          | 3시간  |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통합정책의 이해 | 3시간  |
|                          |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관                           | 3시간  |
|                          | 다문화한국사회의 이해                            | 2시간  |
|                          | 한국의 역사(1) - 고대사, 중세사                   | 2시간  |
|                          | 한국의 역사(2) - 근대사, 현대사                   | 2시간  |
|                          | 한국의 정치제도, 정부조직과 행정절차 이해                | 2시간  |
|                          | 한국의 경제와 사회 일반                          | 2시간  |
|                          | 한국의 문화 이해                              | 2시간  |
|                          | 한국의 지리 이해                              | 2시간  |
|                          | 한국의 기초 법률                              | 2시간  |
|                          | 건강, 의료와 복지                             | 3시간  |
|                          | 주거와 취업 정보                              | 3시간  |
|                          | 한국의 교육 제도와 자녀교육 이해                     | 3시간  |
|                          | 한국사회 고급세미나                             | 2시간  |
|                          | 강의 기법과 교수법                             | 4시간  |
|                          | 교안 작성과 강의 준비 심화                        | 4시간  |
|                          | 이민자 상담기법과 실제                           | 3시간  |
|                          | 현장 전문가 특강                              | 2시간  |
|                          | 지역사회 다문화 이해                            | 3시간  |
|                          | 현장 견학과 실습                              | 5시간  |
|                          | 자율 과정                                  | 2시간  |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은 <표 3>과 같다.

<표 3>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 구분       | 과목명   | 이수 과목 및 학점                |                            |
|----------|---|---------------------------|----------------------------|
|          |   | 대학원                       | 대학·전문대학                    |
| 필수<br>과목 | 이민정책론,<br>이민법제론,<br>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br>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br>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br>국제이주와 노동정책,<br>이민·다문화 현장실습  | 3과목<br>9학점(과목당<br>3학점) 이상 | 5과목<br>15학점(과목당<br>3학점) 이상 |
| 선택<br>과목 | 아시아사회의 이해,<br>해외동포사회 이해,<br>지역사회와 사회통합,<br>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br>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br>다문화(사회)교육론,<br>노동법,<br>국제인권법,<br>가족법,<br>국제이주와 사회통합,<br>(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br>이중언어교육론,<br>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br>석·박사논문연구,<br>국제이주와 젠더 | 2과목<br>6학점(과목당<br>3학점) 이상 | 3과목<br>9학점(과목당<br>3학점) 이상  |

1. 필수과목 중 이민·다문화 현장실습은 운영기관에서 50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2. 필수과목의 학점이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 그 학점은 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과목명이 같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같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과목으로 본다.

강사는 법무부 직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있는데, 교육 내용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원 연수(국립국어원에서 실시), 구술시험관 양성 교육(중앙거점기관에서 실시),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 교육(법무부 위탁 대학 등)이 있다(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2017: 68). 현재 의무 수강은 아니나, 2018년부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강의하기 위해서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 교육을 강의시작 전 3년 이내에 수료하여야 한다(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2017: 68).



#### (4)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서 법교육의 문제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른 법교육과 달리 정기적 교육이라는 점, 이수 시 혜택으로 인해 참여도가 높다는 점, 교육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시간 화상교육의 실시, 교재와 PPT 강의안의 개발과 배포 등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 한국어교육과 한국사회이해로 구성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모든 이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어교육의 경우에는 모든 이민자에게 필요한 내용이 동일할 것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인 법교육에 있어서는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각 이주민에게 필요한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 방식에 있어서 집합교육, 온라인교육(화상교육, 인터넷 강의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시간 화상교육은 수강생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해도를 가늠하면서 강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수강요건이 제한된 환경에서 극히 소수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아쉽다. 온라인 강의식 교육의 경우에는 자막과 다양한 사진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으나, 내용과 설명, 단어가 어려운 편이다. 셋째, 한국법교육센터 소속 강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소속 강사의 경우에는 주로 법학 전공 혹은 변호사 등으로 이루어져있는 것에 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5단계) 강사의 경우 법학전공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강사에게 법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2) 한국법교육센터<sup>11)</sup>의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은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특강을 이수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을 들은 것으로 인정된다.

### (1)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 ① 교육 목표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법교육의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국적 및 체류 등에 대한 내용은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에서 다루지 않는다.

#### ② 교육 대상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특성상 결혼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이 수강하고 있다. 이들은 수요와 관심사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에 소수를 차지하는 유형의 이주민의 수요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 수업의 경우에는 법교육이 5단계에 해당하는 한국사회이해 중 일부이므로 법교육 수강생은 1~4단계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았거나, 그에 준하는 한국어 실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

---

11) 전술한 바와 같이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 부설 한국법교육센터는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한국법교육센터는 2005년에 법무부와 법교육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에 법무부의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었다.

다. 이에 반해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은 다양한 한국어 실력을 가진 이주민들이 함께 수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한 기관에서 특강을 신청하는 이주민의 수가 분반을 하기에는 적기 때문이다. 수강생 간에 한국어 실력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강의의 수준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강사가 이주민 대상 강의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기도 하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환이므로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민,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과 다양한 한국어 실력을 가진 이주민이 함께 수강하여 발생하는 교육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모집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는 특강을 진행할 때 기관별로 협조하여 한 개 기관에서 진행한다면 분반이 가능할 것이나, 수강생이 거리가 멀어지므로 불편함이 따른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율을 높여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줄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 ③ 교육 시수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은 일회성 특강의 형태로 1~3시간 진행되며 보통 2시간으로 진행된다. 특강은 정규수업과는 달리 기관마다 강의 횟수와 시간이 다르다. 또한 특강을 진행할 때 마다 희망자를 모집하므로 수강생에 따라서 2회 이상 이수하는 경우도 있다.

### ④ 교육 내용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은 법무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일괄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데, 기관에서 원하는 강의 주제와 날짜를 선택하여 법무부에 신청하게 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담당자

가 주제를 선택한 후에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제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기는 어렵다. 강의 당일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신청한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로 강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강의 주제를 선택할 당시에는 수강생 모집 전이므로 수강생 모집이 완료된 후에 수강생의 수요를 고려하여 주제를 변경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 주제의 선정은 이주민의 수요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운영 절차상 주제를 선정한 후에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어려움이 있다.

교육 내용은 시기별로 다르며, 2013년까지는 「Fun Fun 대한민국의 법」 교재를 사용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사회 이해」 중 법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7차시<sup>12)</sup>의 강의안을 활용하였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강의안을 활용하고 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까지 안전행정부와 연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법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에서는 한국법교육센터에서 발간한 이주민을 위한 법교육 교재인 「Fun Fun 대한민국의 법」을 활용하였다. 이 교재는 4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는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의 경제 생활’, ‘한국에서 살자’, ‘한국의 생활 지원과 기초질서’이다. 이 교재는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로 7개 언어로 발간되어 있다. 「Fun Fun 대한민국의 법」은 특강 시간에 비하여 내용이 많고 내용의 수준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교재를 토대로 개발한 PPT 강의안의 경우에도 한 슬라이드에 많은 글자가 들어가 있어서 한국어 실력이 낮은 이주민자의 경우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2014년부터는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에서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

12)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한국사회 이해는 기본과정 50시간, 심화과정 20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본과정에서 정치교육 5차시, 법교육 7차시를 차지하고 있다. 법교육 7차시의 내용을 각 차시별 주제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국민되기,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 한국의 법집행 및 분쟁해결, 한국의 생활법률,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와 보호, 준법의 중요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정 교재인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사회 이해」 중 법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7차시<sup>13)</sup>의 강의안을 활용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정규수업에 해당하는 법교육과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의 내용이 동일하다보니 정규수업과 특강을 중복하여 수강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법교육센터는 2016년부터 년도별로 순차적으로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강의안을 개발하고 있다.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개발 주제를 선정하고, 법무부와 협의하여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먼저 개발하였다. 2016년에 1차 개발한 강의안은 범죄예방, 근로, 혼인 3개 주제이며, 주제별로 기본(50분)과 심화(100분) 강의안으로 구성된다. 2017년에 2차 개발한 강의안은 소비생활, 부동산, 금융사기피해예방 3개 주제이며, 주제별로 기본(50분)과 심화(100분) 강의안으로 구성된다.

#### ⑤ 교수학습방법 및 교육 방식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은 주로 강의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사에 따라서 달리 진행할 수 있지만, 제공되는 강의안이 강의식이고 수강생이 한국어 실력이 낮은 이주민인 경우에 강사 개인의 역량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에 개발된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강의안의 경우에는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이 동영상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이 길어지므로 교육 내용에서 벗어난 강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주민의 특성상 강의식 외의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도록 강사 개인의 역량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

13)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한국사회 이해는 기본과정 50시간, 심화과정 20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본과정에서 정치교육 5차시, 법교육 7차시를 차지하고 있다. 법교육 7차시의 내용을 각 차시별 주제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국민되기,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 한국의 법집행 및 분쟁해결, 한국의 생활법률,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와 보호, 준법의 중요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민에게 법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의 교육 방식은 사회통합프로그램 보강교육의 일환이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집합교육으로 실시된다.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해서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의 참여대상의 확대와 더불어 온라인 교육, 찾아가는 법교육 등 교육 방식의 확대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 (2)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의 교육 환경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은 교육 장소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므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환경과 동일하다.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민 관련 지원 센터 등 전국적으로 기관별로 다양한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보강의 성격으로 진행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은 담당 부처가 상이하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주관 부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이며,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법질서선진화과에서는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사 파견을 한국법교육센터에 위탁하고 있다.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의 교육 장소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진행된다.

### (3) 법교육전문강사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은 한국법교육센터에서 법교육전문강사를 파견하고 있다.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에 파견하는 강사의 요건과 강사를 위한 교육, 강사의 역량은 다음과 같다.

## ① 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전문강사의 요건

한국법교육센터는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약 120명의 법교육전문 강사풀을 보유하고 있다. 이민자 생활법률교육에 파견하는 법교육전문 강사는 원칙적으로 법학 전공자를 우대하되 법교육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주민 법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2014년부터는 법교육전문강사 교육과정 중 2시간 내외의 다문화 법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강사 워크숍을 이수한 법교육전문강사들이 우선적으로 이민자 법교육에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법교육센터에서 법교육전문강사 풀 중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강사가 우선순위로 배정되는데, 실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법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전문 강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경우 이주 배경과 언어소통에 대한 한계, 여성에 대한 이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교육 강사 선정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부부간 법률문제에 대한 교육을 두고 마찰이 이는 경우도 있어 세심한 접근이 요청된다.

## ② 강사를 위한 교육

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전문강사는 한국법교육센터에서 매년 운영하는 법교육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과정에는 2시간 내외의 다문화 법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년도에 새로 선발된 신규 강사의 경우에는 1박2일 교육 프로그램을, 기존 강사의 경우에는 보수교육 차원에서 강사양성과정 중 1일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강사 워크숍은 자율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수한 강사에게 이민자 특강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 (4)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의 문제점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교육 내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의 내용에는 이주민의 관심이 많은 주제인 국적, 체류자격 등이 법무부 이민통합과의 요청에 의해 제외되었다. 이주민의 개인별 다양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적, 체류자격 등의 사항은 법무부의 판단에 맡겨지기 때문이다. 법교육전문강사에게 국적, 체류자격에 대하여 수강생이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도록 일원화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운영 초기단계라 전화연결이 되지 않거나, 문의사항의 해결이 어려운 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적, 체류자격 등에 대해서 이주민의 문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전문강사는 자격 요건이 법학전공 혹은 사회교육 전공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변호사와 노무사 등을 포함하여 대부분 법학전공자로 이루어져있다. 따라서 법학에 대한 지식에는 강점이 있으나, 어려운 법률용어의 사용과 말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 등에서 지적이 있어왔다. 혹은 강사 스스로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에 대한 이해의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이민자 대상 강의를 기피하거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민 법교육 강사는 일반 법교육 강사와 달리 다문화역량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다문화역량을 갖춘 강사풀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정된 이주민 법교육 강사풀로 전국의 모든 이민자 강의에 파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주민 법교육 강사풀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교육전문강사의 다문화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이주민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혹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 3)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9.1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다<sup>14)</sup>.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형 법교육 및 법질서 체득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2011년 법문화교육센터를 설립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1)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프로그램

##### ① 교육 목표

국적취득, 개명, 취업활동과 소비생활 등 경제생활, 혼인과 상속 등 결혼생활, 이웃을 배려하는 기초질서 등 일상생활에서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서 정착할 때 겪는 법적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15)</sup>.

##### ② 교육 대상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은 결혼이민자, 배우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민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시부모 등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14)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14>)

15)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참고(<http://www.klacedu.or.kr/>)

수강생의 한국어 실력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교육 신청과정에서 사전에 한국어 실력을 상중하로 체크하도록 되어있다. 사전에 수강생의 한국어 실력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강사에게 전달된다면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 인원은 결혼이주민 기준 최소 20명이다.

### ③ 교육 시수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은 1일과 1박2일 캠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교육 과목, 법체험, 법골든벨 등의 법교육과 부부 프로그램, 유대감 형성 프로그램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1일 프로그램은 총 4시간<sup>16)</sup>인데, 모두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있다. 그 중에서 법교육 과목은 기본과목 선택 시 기본과목 50분과 법골든벨(퀴즈) 50분으로 진행되고, 심화과목 선택 시 90분(심화 60분, 사례문답과 화제의 판례해설 병행 30분)으로 진행된다. 법문화체험관<sup>17)</sup>에서 법률구조관(법률구조사례이해, 법률문제해결능력제고)과 준법생활관(다문화이해, 경제생활, 기초질서 및 교통질서 체험) 체험이 50분으로 진행되고, 법치주의관(법정상황극) 체험이 50분으로 진행된다.

1박2일 프로그램은 총 11시간<sup>18)</sup>인데, 법교육 프로그램과 부부 프로그램, 유대감 형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에서 법교육 프로그램은 총 5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법교육 과목은 기본/심화과목 선택 시 동일하게 2시간 40분(1일차 80분, 2일차 80분)이다. 법문화체험관에서

16) 입소식(환영인사, 교육안내) 포함, 수료식과 점심시간을 제외한 모든 일정

17)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에 있는 체험관은 법률구조, 준법생활, 법치주의 세 군데로 구분되어 있다. 법률구조관에서는 홍보영상, 법률정보 검색, 법률상담 체험, 법률구조사례 영상을 체험할 수 있다. 준법생활관은 세계 각국의 문화비교 사진,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차용증 작성 등 경제생활 체험, 기초질서 위반 설명,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세계 각국의 명승지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크로마기가 있다. 법치주의관은 정의의 여신, 재판의 종류, 모의법정, 교도소 체험, 전통형벌 체험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s://edu.klac.or.kr/>).

18) 입소식(환영인사, 홍보동영상 상영) 포함, 수료식과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을 제외한 모든 일정. 1일차 6.5시간, 2일차 4.5시간

법률구조관(법률구조사레이해, 법률문제해결능력제고)과 준법생활관(다문화이해, 경제생활, 기초질서 및 교통질서 체험) 체험이 1시간으로 진행되고, 법치주의관(법정 상황극) 체험이 40분으로 진행된다. 법골든벨은 40분간 진행된다.

캠프는 일회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만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여러 번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약 2시간 가량의 특강보다 1일 혹은 1박2일 과정이라는 점에서 교육시수가 많이 확보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교육 내용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법교육과목의 주제는 가족법(심화과목 가능), 근로소비생활(심화과목 가능), 국적취득(심화과목 가능), 기초질서, 기본법질서(심화과목 가능), 임대차(심화과목 가능), 사회보장법, 신용카드 따라잡기(신설과목), 기본권(신설과목), 형법·민법의 기본원칙(신설과목), 분쟁예방을 위한 증거 만들기(신설과목)로 총 11개 주제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신청할 때 11개의 법교육 과목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즉,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법교육과목 교재는 PPT 강의안을 책자형태로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 교재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교재에 한국어와 해당 국가 언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4>와 같이 사회통합과정(국적취득, 대한민국기본법질서이해), 가정생활과정(가족법, 상속법), 경제생활과정(근로 및 소비생활 법, 임대차), 준법생활과정(기초질서 및 교통질서), 체험형 법교육과정(법률구조관, 준법생활관, 법치주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프로그램 주제

|   | 주제         | 내용                    |  |
|---|------------|-----------------------|--|
| 1 | 사회통합과정     | 국적취득                  | 체류, 국적취득 및 개명 절차 등 학습                                      |
|   |            | 대한민국 기본법질서 이해         | 대한민국 기본 법질서 이해로 민주시민역량강화                                   |
| 2 | 가정생활과정     | 가족법                   | 혼인 관련법 학습으로 바람직한 부부의 역할 이해                                 |
|   |            | 상속법                   | 가족의 사망에 따른 상속 문제, 유언의 효력 등 학습                              |
| 3 | 경제생활과정     | 근로 및 소비생활 법           | 임금체불시 구제절차, 취업방법 및 주의사항 학습<br>사기피해 사례 금전거래 방법 등 학습으로 피해 예방 |
|   |            | 임대차                   | 주택 및 상가 임대차시 주의사항 학습으로 피해예방                                |
| 4 | 준법생활과정     | 기초질서 및 교통질서           | 타인을 배려하는 민주시민의식 함양<br>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법규 준수                    |
| 5 | 체험형 법교육과정  | 법률구조관                 | 무료 법률지원 기관 위치 찾기 및 이용 사례 체험                                |
|   |            | 준법생활관                 | 차용증 및 영수증 작성 체험, 생활 속 경범죄 주의사항 등 체험                        |
|   |            | 법치주의관                 | 법정상황극(모의 재판) 체험  |
| 6 | 도전! 법 골든 벨 | 퀴즈 등을 통한 주요 학습 내용의 정리 |  |

⑤ 교수학습방법 및 교육 방식

강의식, 퀴즈(골든벨), 체험형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 이주여성 법교육이 강의식 교육으로 진행되는데, 법문화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교육 방식은 주로 김천에 소재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집합교육으로 진행된다. 찾아가는 교육도 수요가 있는 경우에 진행하나, 담당자 인터뷰 결과 아직 초기단계이며 2017년 기준으로 2회 정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다문화가족 범문화교육 환경

범문화교육센터는 법체험 테마파크로 체험관<sup>19)</sup>을 비롯하여 다수의 강의실, 숙박시설, 유아실 등의 교육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법교육 시설로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설을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진 이주민관련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 (3) 범문화교육센터 강사

강의 인력은 법무 실무 및 강연 경험이 있는 공단 소속 변호사와 직원들이 법 교육을 전담하며, 다문화 전문가를 초빙하기도 한다. 공단소속 강연자는 범문화교육 분야 31명, 범문화체험 분야 32명, 초빙강사 4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당자 인터뷰 결과, 강사 대상 특성화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강의는 다문화가족 센터장 등 외부에 의뢰한다. 매년 교육이 진행되나 의무수강인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강사가 법학 전공자이므로 따로 법학에 대한 내용은 교육하지 않으나, 다문화역량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4) 다문화가족 범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

범문화교육센터에서는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체험형 법교육,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번역서를 제공하는 등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 일회성 교육이므로 다양한 주제를 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둘째, 교육 내용에 있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고

---

19) 자세한 내용은 각주 18 참조(범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edu.klac.or.kr/>)

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족법-이혼 후 체류 등-, 사회보장법, 기본권 등의 과목에서 귀화자와 외국인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본과목과 심화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교재는 단일교재이며 난이도의 조절과 기본, 심화 진행은 전적으로 강사 역량에 맡겨지는 실정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법교육과 북한이탈주민 법교육이 동일한 내용과 교재이며, 이 역시 강사의 역량에 전적으로 맡겨진다. 수강생의 수준에 따라 기본/심화 교재를 구분하여 개발한다면 법교육의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 4) 기타 기관

기타 기관에서도 결혼이주여성 대상 법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각 기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 (1) 형사정책연구원의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법무부 지정 법문화진흥센터인 형사정책연구원의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10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교재는 ‘형사정책연구원(2012), 완·소·법 법교육 시리즈 6: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형사정책연구원.’이다. 이는 유일하게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교재이며, 상담사례를 분석을 기초로 개발되었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개발만 하고, 운영은 따로 하지 않는다. 보고서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포하였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인터뷰 결과 12차시라는 점과 내용의 구성이 범죄예방에 초점, 등에서 현장에서의 활용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교재 및 학습자료는 보고서, 교재, 온라인 강의(CD)가 있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프로그램은 90분 단위(혹은 2시간)의 10차시 프

로그램으로서 구성 내용에 따라 4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부는 법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에 해당하며, 제2부는 기본적인 법적 권리의 보장, 제3부는 범죄피해의 예방, 제4부는 기타 법률문제와 지원제도에 대한 것이다. 제1부 도입은 제 1차시로서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참여자가 상호 인사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서약서 작성 등을 통하여 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세를 가다듬고 구성원들 사이에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이다.

제2부는 결혼이주여성인 가정이나 직장생활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크게 4개 차시로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 결혼과 이혼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 취업과 관련된 문제들로 구성하였다.

제3부는 ‘범죄피해의 예방’으로 4개 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의 실태와 위험성, 그 예방 및 대처 방법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단, 가정폭력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는 범죄피해이므로 2개 차시로 구성하였다.

제4부는 결혼이주여성의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률문제와 결혼이주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관련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명의도용, 계약, 가족방문비자 관련 범죄사례, 결혼이주여성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제도 등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소감문을 작성하여 법교육프로그램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경찰청의 다문화가족 대상 범죄예방교육

경찰청에서는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범질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 부여, 생활 속의 범죄 예방요령, 기초질서 등 국내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위 방지로 안정적인

다문화 사회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sup>20)</sup>.

경찰청 외사국 외사기획과가 담당기관이며,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대상 기초질서법 교육을,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대상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4대 악 예방 교육을,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지원 대상이며 신청 절차 및 방법은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하다. 근거법령은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에 의한다.

### (3)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융교육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출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강의 주제는 ‘은행 이용하기’ 1시간, ‘저축·보험의 이해 및 금융사기 예방’ 1시간, ‘다문화가족을 위한 금융생활’ 2시간이다.<sup>21)</sup>

삽화, 사례 등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 북’은 인도네시아, 영어,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어로 된 번역본 있다. 교재를 봤을 때, 사후 법적 문제 해결 측면보다는 예방에 초점. 또한 기본적인 은행 이용 방법, 저축, 보험의 이해 등 법교육에 한정되지 않고 기관의 특성을 살린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시행하여 우수한 전문강사를 발굴·활용함으로써 금융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인증한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20) 공공서비스 ‘생활플러스’ 홈페이지 참조

(<http://life.korea.go.kr/content/contentView.do?tlsSeq=1062&svcId=13200000001&menuCode=090000&menuCode2=090200>)

21)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http://www.fss.or.kr/edu/off/visit\\_adult\\_info.jsp](http://www.fss.or.kr/edu/off/visit_adult_info.jsp))



① 금융교육 강의경력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금감원 전문강사 양성연수 수료자\*\*

\* 최근 3년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주관하는 금융교육 강의를 총 25회 이상 실시한 자

\*\* 전문강사 양성연수를 80% 이상 수료한 자(신청시 담당자가 수료 여부 확인)

② 금융교육 강사로서 기본 소양을 갖춘 자

③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다만,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 (4)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회,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찾아가는 소비생활 교육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생활 관련 소비자전문상담사의 현장상담도 진행한다. 경기도가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도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소비생활교육’은 우리나라 소비생활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생활 능력향상은 물론 악덕상술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소비생활 장소, 결제수단 및 방법 등 일반 소비생활 분야, 기만 악덕상술 유형 및 피해사례, 소비자 권리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규정, 소비자의 책무, 소비자상담센터 등 상담 기관 안내 등이다. 아울러,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의 전문상담사가 다문화가정 주부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소비자상담을 진행한다.

다문화가정의 소비생활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sup>22)</sup>.

#### **(5) 이화여자대학교 부속기관 임상법학교육센터<sup>23)</sup>**

이화여자대학교 부속기관인 임상법학교육센터는 학생들이 봉사를 하는 형태이며 법률상담, 생활법률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화임상법학교육센터에서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기타 소외 계층에게 무료법률상담, 법률구조지원, 생활법률교육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세계한인변호사회, 해외입양인연대 등의 외부기관과도 활발히 제휴하고 있습니다. 소속 학생들은 법조실무 경력이 있는 지도교수들의 지도·감독 하에 법률상담을 하고, 상담 후 소송으로 진행되는

22) 인터넷 기사 <http://www.h-dmc.net/news/articleView.html?idxno=1322>

23) 임상법학교육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cms.ewha.ac.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2155113&siteId=law&menuUIType=sub>)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 자문변호사들의 소송 과정에도 참여한다. 2011년 여름방학부터는 50여 명의 재학생들이 법률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이화임상법학교육센터는 실무법학교육 프로그램인 리걸 클리닉 과정을 지원한다. 리걸 클리닉 과정으로는, 가사사건을 포함한 일반 민사사건 관련 사안을 다루는 ‘민사클리닉’,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활동으로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공익소송 사건들을 다루는 ‘공익소송클리닉’, 사회적 기업을 위한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을 다루는 ‘사회적기업법무클리닉’, 취약계층 여성인권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취약계층여성지원클리닉’, 이주민 관계 법령과 실제 사례 검토를 다루는 ‘이주민인권클리닉’, 민생경제현실 및 경제민주화 입법운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민생경제지원클리닉’,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기구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국제인권클리닉’, 그리고 본교 특성화 분야인 여성인권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Gender법학 Clinic’과 의료소송 및 기타 보건의료 관련 분쟁을 다루는 ‘의료소송 Clinic’ 등이 있다.

이화임상법학교육센터는 세계한인변호사회와 공동으로 해외입양인을 위한 법률안내서(Legal Handbook)를 제작하는 GOA'L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민, 국적, 출입국 문제 뿐만 아니라 노동, 가족, 주거, 교통사고, 성희롱 등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률해설을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해외입양인연대에 제공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리걸 클리닉 과정의 수강생과 법률자원봉사단 소송 학생 등 30명 이상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 5) 소결

현행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특징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기관별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현황 및 특징

| 구분        |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서 법교육   |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
|-----------|---|---|--|
| 담당 기관     | 법무부   | 한국법교육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br>법문화교육센터  |
| 교육 목표     | 한국의 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와 방법을 이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하는 법에 대한 이해,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 상식을 갖추                                     | -<br>(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목표와 동일할 것이나, 국적 문제는 다루지 않음)       | 국적취득, 개명, 취업활동과 소비생활 등 경제생활, 혼인과 상속 등 결혼생활, 이웃을 배려하는 기초질서 등 일상생활에서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정착할 때 겪는 법적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 |
| 교육 주제     | 민주주의, 정치제도, 정부형태, 정치과정, 국제관계 (정치 5개 주제)<br>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국민 되기, 국민의 권리와 의무, 법집행 및 분쟁해결, 생활법률, 권리 구제와 보호, 준법교육 (법 7개 주제) | 범죄예방, 혼인과 법, 근로와 법, 부동산, 소비생활, 금융사기예방교육 (총 6개 주제) | 가족법, 근로소비생활, 기초질서, 기본법질서, 임대차, 사회보장법, 신용카드, 기본권, 형법·민법의 기본원칙, 분쟁예방을 위한 증거만들기 (총11개 주제)                             |
| 교육 내용의 특징 | 자녀, 상속, 근로, 소비, 범죄예방, 사회보장제도 관련한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음   | 국적, 체류 관련 내용은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                        | 자녀, 이혼 관련한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음  |

|          |             |  |   |  |
|----------|-------------|--|---|--|
| 교육<br>방법 | 교육<br>대상    | 외국인 혹은 귀화자<br>(결혼이주여성,<br>외국인 근로자,<br>유학생 등)   | 외국인 혹은 귀화자<br>(결혼이주여성,<br>외국인 근로자,<br>유학생 등)                    | 다문화가족<br>(결혼이주여성과<br>남편 등 가족이<br>함께 참여)      |
|          | 교육<br>시수    | 12차시 (정치5차시,<br>법 7차시)                         | 일회성 교육 (1회에<br>약 2시간)   | 일회성 교육<br>(1일 혹은 1박2일)                       |
|          | 교수학<br>습방법  | 강의식  | 강의식   | 강의식, 골든벨<br>퀴즈, 체험교육 <sup>24)</sup>          |
| 교육<br>자료 | 교재          | 사회통합프로그램을<br>위한 한국사회이해                         | 기관 자체 개발  | 기관 자체 개발                                     |
|          | 번역본         | 없음   | 없음  | 제공   |
| 운영       | 교육<br>형태    | 집합교육, 화상교육<br>(집합교육은<br>사회통합프로그램<br>운영기관에서 진행) | 집합교육<br>(한국법교육센터<br>소속<br>법교육전문강사가<br>사회통합프로그램<br>운영기관으로 출강)    | 집합교육<br>(법문화교육센터에<br>서 1일 혹은<br>1박2일 캠프)     |
|          | 교육<br>장소    | 사회통합프로그램<br>운영 기관의 강의실                         | 사회통합프로그램<br>운영 기관의 강의실  | 법문화교육센터의<br>강의실, 체험관                         |
|          | 자녀돌봄<br>서비스 | 없음   | 없음  | 있음   |
| 강사       | 자격          | 다문화사회전문가                                       | 한국법교육센터<br>소속<br>법교육전문강사  | 법문화교육센터<br>직원, 소속 변호사<br>등                   |
|          | 양성<br>과정    | 다문화사회전문가<br>양성과정 이수                            | 강사양성과정에서<br>2시간 내외의<br>다문화교육 의무<br>이수, 비정기적<br>이민자 워크숍 자율<br>참여 | 강사양성과정과<br>보수교육에서<br>다문화교육 진행 <sup>25)</sup> |
|          | 특징          | 전공 무관  | 법학 전공자 다수   | 변호사가 다수                                      |

24) 자세한 내용은 각주 18 참조(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edu.klac.or.kr/>)

25) 법문화교육센터의 강사 양성과정과 보수교육과정에 대해서 공개된 자료는 없으나, 담당자 인터뷰로 확인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법교육은 정기적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민자 생활법률특강’과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은 일회성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의 교육환경은 법무부의 솔로몬로파크와 같이 법체험 테마파크이며,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족 단위로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교육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강사의 경우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한국사회이해는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을 가져야 한다. 한국법교육센터 소속 법교육전문강사는 90%이상이 법학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문화교육센터는 소속 직원 혹은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이론적 배경 검토를 바탕으로 설문조사지를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조사 도구

##### 1) 설문조사지의 구성

이론적 배경에서는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현황 조사의 틀로 ①교육 목표, ②교육 대상, ③교육 시수, ④교육 내용, ⑤교수학습방법 및 교육 방식, ⑥교육 환경, ⑦강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개선방안을 탐구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에서 사용한 틀을 활용하였고,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추가하여 설문조사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지는 크게 ①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방향, ②주제, ③내용요소, ④교육 방법, ⑤교육 자료, ⑥강사의 역량과 양성과정, ⑦애로사항, ⑧개선방안으로 총 8개 섹션으로 구성하였으며, <표 6>과 같다.

<표 6> 설문조사지의 구성

| 구분   | 내용                          | 측정        | 문항 수 | 하위 항목 |
|------|-----------------------------|-----------|------|-------|
| 방향   | 목표와 필요성                     | 리커트 5점 척도 | 1    | 11    |
| 주제   | 총 15개 주제 중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  | 우선순위 1-5위 | 1    | -     |
| 내용요소 | 총 15개 주제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 | 우선순위 1-4위 | 15   | -     |

|              |                           |            |   |   |
|--------------|---------------------------|------------|---|---|
| 교육 방법        | 적당한 교육 횟수                 | 객관식        | 1 | - |
|              | 적당한 교육 시간                 | 단답형        | 2 | - |
|              |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법 교육 시수의 적정 여부 | 리커트 5점 척도  | 1 | - |
|              | 주제 선정 방법                  | 다중응답       | 1 | - |
|              | 난이도                       | 리커트 5점 척도  | 1 | - |
|              | 어려워하는 이유                  | 다중응답       | 1 | - |
|              |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               | 리커트 5점 척도  | 1 | 6 |
| 교육 자료        | 필요한 학습자료                  | 다중응답       | 1 | - |
|              | 제공 언어                     | 객관식        | 1 | - |
|              | 사용하는 교재                   | 다중응답       | 1 | - |
|              | 사용하는 강의안                  | 다중응답       | 2 | - |
|              | 강의안 활용 방법                 | 객관식        | 1 | - |
|              | 내용요소 구성 방법                | 객관식        | 1 | - |
| 강사의 역량과 양성과정 | 강사에게 필요한 역량               | 리커트 5점 척도  | 1 | 9 |
|              | 강사의 역량 강화 방안              | 리커트 5점 척도  | 1 | 3 |
|              | 강사 양성과정 개선 방안             | 리커트 5점 척도  | 1 | 3 |
|              | 강사 양성과정의 내용요소             | 우선순위 1-4순위 | 1 | - |
|              | 강사 양성과정 시수                | 객관식        | 1 | - |
|              | 강사의 다문화역량 강화 방안           | 리커트 5점 척도  | 1 | 7 |
| 애로사항         | 어려움 여부                    | 리커트 5점 척도  | 1 | - |
|              | 어려운 이유                    | 다중응답       | 1 | - |
| 개선 방안        | 분반 방안                     | 리커트 5점 척도  | 1 | 3 |
|              | 참여 증진 방안                  | 리커트 5점 척도  | 1 | 4 |
|              | 교육복지의 사각지대 개선 방안          | 리커트 5점 척도  | 1 | 3 |
|              | 온라인 법교육 방안                | 리커트 5점 척도  | 1 | 4 |
|              | 교육 환경 개선 방안               | 리커트 5점 척도  | 1 | 5 |
|              | 컨트롤 타워 수립 방안              | 리커트 5점 척도  | 1 | 5 |



첫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방향은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목표와 필요성에 대해 각 11개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는 총 15개 주제를 중요한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15개의 주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서 법교육, 한국법교육센터의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의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프로그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추출하였다(<표 13> 참고. 주제 추출 과정은 <부록 1> 참조).

셋째, 총 15개의 주제별로 각 주제에 해당하는 교육내용을 중요한 순서대로 4순위까지 매기는 문항이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내용요소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서 법교육, 한국법교육센터의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의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프로그램<sup>26)</sup>,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재들을 중심으로 각 주제별 내용요소들을 추출하였다(내용요소 추출 과정은 <부록 2> 참조).

넷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프로그램 교육 방법에 대한 문항은 교육 기간 및 시수, 강의 주제의 선정 방법, 난이도와 어려워하는 이유,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으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자료는 필요한 학습자료, 제공 언어, 사용하고 있는 교재와 강의안, 강의안 활용 방법, 내용 구성 방법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섯째, 이주민 법교육 강사의 역량과 양성과정에 대한 문항은 필요

---

26)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의 교재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자료는 아니지만, 본 연구자는 참관을 통해 여러 권의 교재 중 일부를 제공받아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역량과 역량 강화 방안, 강사를 위한 교육의 개선방안, 양성과정에 필요한 교육 내용, 양성과정의 적정 시수, 강사의 다문화역량 강화 방안으로 구성하였다.

일곱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애로사항은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와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덟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개선방안은 분반 방안, 참여 증진 방안, 교육복지 사각지대 개선 방안, 온라인 교육 방안, 교육환경 개선 방안, 컨트롤 타워를 묻는 문항으로 문항별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 2) 타당도

설문조사지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발된 설문 문항을 실무자, 연구자, 법교육 강사 총 14인의 검토를 통해 안면타당도 검증을 거쳤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센터장, 연구자 등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법교육 강사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검토를 거쳤다. 그 후 명확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항 등을 수정하여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지를 검토한 전문가의 구성은 <표 7>과 같다.

<표 7> 설문조사지 타당도 확보를 위한 전문가(총 14명)

| No | 구분  | 소속/직위/최종학위  | 이주민 법교육 강의 경력 등 |
|----|-----|---|-----------------|
| 1  | 실무자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br>-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여성가족부)<br>-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석사 | -               |
| 2  | 실무자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br>-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여성가족부)<br>- 법학사, 사회복지학석사    | -               |

|    |                  |  |                             |
|----|------------------|--|-----------------------------|
| 3  | 실무자<br>연구자<br>강사 | - 이주민 관련 지원센터 센터장<br>- A대학교 이주민 관련 학과의 교수<br>- 관광경영학사, 사회복지학석사, 행정학박사                                      | - 7년                        |
| 4  | 실무자<br>연구자<br>강사 |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br>-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석사, 이주민 관련 학<br>과 박사과정   | - 10년<br>* 이주민 관련<br>저서     |
| 5  | 연구자<br>강사        | - B대학교다문화연구소 강사<br>- 다문화사회이해 전문가(법무부)<br>- 다문화 전문강사(문화체육관광부)<br>- 한국어 강사<br>- 가정과 학사, 한국어학 석사, 사회복지학<br>박사 | - 8년                        |
| 6  | 연구자<br>강사        | - 다문화사회이해 전문가(법무부)<br>- 법학사, 법학석사, 이주민 관련 학과 박사  | - 1년<br>* 이주민 관련<br>논문 다수   |
| 7  | 연구자<br>강사        | - 법학 관련 연구원 소속 전문위원<br>- C기관 법교육강사<br>-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 - 4년                        |
| 8  | 연구자<br>강사        | - D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보조원<br>- C기관 법교육강사<br>-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수료  | - 2년<br>* 이주민 관련<br>연구과제 참여 |
| 9  | 연구자<br>강사        | - E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br>- C기관 법교육강사<br>- 법학사, 경찰학석사, 경찰학박사   | - 2년                        |
| 10 | 강사               | - 법무부 소속 변호사<br>- C기관 법교육강사<br>- 행정학사, 법학전문석사  | - 6년                        |
| 11 | 연구자              | - F대학교 다문화사회전문가 교과목 강의교<br>수<br>- 교육학 박사   | -                           |
| 12 | 연구자              | - G대학원 다문화교육 전공 강의 교수  | -                           |
| 13 | 연구자              | - 교육 관련 연구소 소속 연구원<br>- 법학사, 사회교육학 석사, 사회교육학 박사  | -                           |
| 14 | 연구자              | - 다문화교육 전공 박사과정<br>- 법학사, 다문화교육학 석사, 다문화교육학<br>박사과정  | -                           |

전문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sup>27)</sup>, 관련 분야의 연구자<sup>28)</sup>, 이주민 법교육 강사<sup>29)</sup>로 구성하였으며, 그들의 이주민 관련 업적 및 활동 경력을 고려하여 확정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실무자로 구분하였다. 실무자군, 연구자군, 강사군에 중복하여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두 표기하였다. 연구자의 경우에는 이주민 관련 학과의 교수 1인, 교육학 전공 강의교수 1인, 다문화교육전공 강의교수 1인, 법학 전공 박사급 연구원 1인, 사회교육 전공 박사급 연구원 1인, 사회복지학 박사 1인, 다문화교육 전공 박사과정생 1인을 통해 안면타당도 검증을 거쳤다.



- 
- 27) 주관 부처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부처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와 미운영 센터 모두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 28) 박사학위자인 경우에 연구자로 분류하였고, 이주민 관련 논문, 단행본 등의 연구 경력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다만 박사과정 수료한 자가 이주민 관련 연구과제 참여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연구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자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를 박사학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변호사인 경우에는 연구자에 포함하지 않았다.
- 29) C기관 법교육강사의 경우에는 이주민 강의 경력 2년 이상 및 추천자(법교육 강사 중에서 강사관리자가 이주민 법교육에 있어서 우수강사로 추천한 4명을 선정하였다. 강사관리자의 우수강사 추천 기준은 강의력, 강의만족도, 기관의 평가, 이주민 법교육 관심도 등이다.)

## 2. 조사 대상

### 1) 표집 대상의 선정 방법

설문 대상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로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된다.

첫째, 설문 대상자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법교육을 신청한 담당자이다(이하 편의상 기관담당자로 칭함). 2018년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은 거점, 일반 기관을 포함하여 전국에 총 296개이며,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혹은 이민자 관련 지원 기관이나 대학 등이다. 기관담당자는 이주민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실무자이므로 결혼이주여성과 직접 소통하며,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관담당자 중 일부는 이주민 관련 기관의 센터장 혹은 이민자 대상 강의 경력이 있거나, 다문화사회전문가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법무부에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을 신청했던 기관담당자 2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이민자 법교육 강의 경험이 있는 한국법교육센터 소속 법교육전문강사(이하 편의상 법교육전문강사라고 칭함)를 대상으로 설문을 발송하였다. 2018년 현재 활동중인 법교육전문강사는 전국에 총 133명이며, 이 중 이민자 법교육 강의 경험이 있는 강사 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8년 현재 법교육전문강사로 활동하지 않지만, 2017년 이전에 법교육전문강사로 활동하면서 이민자 법교육 강의 경험이 있는 강사 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와 같이 설문조사는 총 1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법교육전문강사는 학사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며, 법학전공 학사·석사·박사 혹은 로스쿨 출신이 대부분이다(2018년 기준 법교육전문강사 90.23%가

법학전공자). 그 외에는 사회교육, 행정학 등의 전공이 있다. 법교육전문강사에는 교수, 박사급 연구원, 변호사, 노무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으나, 이민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설문 대상은 기관담당자 290명과 법교육전문강사 110명으로 총 400명이며, 집단 간 설문조사 대상의 수가 차이가 큰 이유는 2018년 기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총 296개 기관이며(기관별 법교육 진행 여부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불문), 2018년 기준 법교육전문강사가 총 133명(이민자 법교육 강의 경력 불문)이므로 절대적인 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2)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설문조사는 2018년 4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온라인 설문지 응답과 이메일 회신, 팩스 회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설문조사지 내용을 구글 온라인 설문지에 입력한 후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해당 설문조사의 온라인 주소(URL)를 제공하는 온라인 조사지를 구축하였다. 이 온라인 설문조사 URL을 설문 대상자에게 E-mail을 통해 배포하고, 응답 방법을 안내하였다. 또한 한글파일에 작성 후 메일로 회신할 수 있도록 이메일 발송 시 설문조사지를 한글파일로도 함께 첨부하였다. 더불어 첨부한 설문조사지를 출력하여 수기로 응답한 조사지를 팩스로도 회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팩스 응답자는 없었으며, 구글 온라인 설문조사와 이메일을 통한 회신을 받았다.

설문조사 대상별 회수율 및 분석 대상은 <표 8>과 같다.

<표 8> 설문조사 대상별 회수율 및 분석 대상

| 조사 대상      | 배부   | 회수   | 회수율   | 불성실<br>응답 | 분석대상 | 유효    |
|------------|------|------|-------|-----------|------|-------|
| 법교육전문강사    | 110명 | 55부  | 28.8% | 0부        | 55부  | 28.5% |
| 기관담당자(실무자) | 290명 | 60부  |       | 1부        | 59부  |       |
| <b>합계</b>  | 400명 | 115부 | 28.8% | 1부        | 114부 | 28.5% |

기관담당자 290명과 이주민 법교육 강의 경험이 있는 법교육전문강사 110명을 대상으로 총 4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총 115부가 회수(회수율 28.8%)되었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지를 세 차례 배부하고 참여를 독려했으나, 기관담당자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바뀐 점과 설문 제출이 의무가 아닌 점 등의 이유로 60부 회수에 그쳤다. 회수된 총 115부 중에서 성실히 응답을 하지 않은 1부를 제외하고 114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 3) 응답자의 배경 변인

인구통계학적 질문 문항에서는 성별, 나이, 전공, 이주민 법교육에 대한 관심도, 이주민 법교육에 대한 이해도, 이주민 법교육 강의 경력,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도, 다문화교육 경험, 다문화 관련 자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의 배경 변인은 <표 9>와 같다.

<표 9> 응답자 배경 변인

| 구분               |              | 빈도  | 비율   |
|------------------|--------------|-----|------|
| 성별               | 남자           | 46  | 40.4 |
|                  | 여자           | 68  | 59.6 |
| 연령               | 20대          | 13  | 11.4 |
|                  | 30대          | 45  | 39.5 |
|                  | 40대          | 38  | 33.3 |
|                  | 50대 이상       | 17  | 14.9 |
| 이주민 법교육<br>관심도   | 거의 관심 없음     | 1   | .9   |
|                  | 관심 없음        | 2   | 1.8  |
|                  | 보통           | 23  | 20.2 |
|                  | 관심 많음        | 43  | 37.7 |
|                  | 매우 관심 많음     | 45  | 39.5 |
| 이주민 법교육<br>이해도   | 전혀 모름        | 0   | 0    |
|                  | 잘 모름         | 6   | 5.3  |
|                  | 보통           | 44  | 38.6 |
|                  | 잘 알고있음       | 47  | 41.2 |
|                  | 매우 잘 알고있음    | 17  | 14.9 |
| 이주민 법교육<br>강의 기간 | 1년 미만        | 4   | 3.5  |
|                  | 1년 이상 2년 미만  | 6   | 5.3  |
|                  | 2년 이상 3년 미만  | 25  | 21.9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3  | 11.4 |
|                  | 4년 이상 5년 미만  | 5   | 4.4  |
|                  | 5년 이상        | 7   | 6.1  |
|                  | 기타           | 1   | .9   |
| 강의 횟수(연 평균)      | 없음           | 53  | 46.5 |
|                  | 1회           | 6   | 5.3  |
|                  | 2~4회         | 30  | 26.3 |
|                  | 5회 이상 10회 미만 | 15  | 13.2 |
|                  | 10회 이상       | 9   | 7.9  |
| 다문화사회 이해도        | 없음           | 53  | 46.5 |
|                  | 전혀 모름        | 0   | 0    |
|                  | 잘 모름         | 4   | 3.5  |
|                  | 보통           | 43  | 37.7 |
|                  | 잘 알고있음       | 44  | 38.6 |
| 다문화교육 받은<br>경험   | 매우 잘 알고있음    | 23  | 20.2 |
|                  | 있음           | 78  | 68.4 |
| 다문화 관련<br>자격(이수) | 없음           | 36  | 31.6 |
|                  | 있음           | 22  | 19.3 |
| 합계               |              | 114 | 100  |



<표 9>에서 응답자의 배경 변인을 살펴보면, 여자가 59.6%, 남자가 40.4%이다. 연령은 30~40대(72.8%)가 가장 많았고, 20대(11.4%), 50대 이상(14.9%)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법교육 관심도는 관심이 많다(많음, 매우 많음)고 응답한 사람(77.2%)이 가장 많았으며, 보통(20.2%), 관심 없다(2.7%)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법교육 이해도는 잘 알고있다고 응답한 사람(56.1%)이 가장 많았으며, 보통(38.6%), 모른다(5.3%)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법교육 강의 기간은 강의경험이 없는 사람(46.5%)을 제외하고는 2년 이상 3년 미만(21.9%)이 가장 많았으며, 3년 이상 4년 미만(11.4%), 5년 이상(6.1%), 1년 이상 2년 미만(5.3%), 4년 이상 5년 미만(4.4%), 1년 미만(3.5%)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사회 이해도는 잘 알고있다(58.8%), 보통(37.7%), 잘 모른다(3.5%)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68.4%)이 없는 사람(31.6%)보다 많은 수로 나타났다. 다문화관련 자격이나 이수를 한 사람(19.3%)보다 없는 사람(80.7%)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관련 자격이나 수업을 이수했다고 응답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 전문강사에게 어떤 종류인지 적도록 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다문화 관련 이수한 자격(증)(다중응답) \*단위: 빈도(비율)

|                    | 기관           | 강사       | 전체           |
|--------------------|--------------|----------|--------------|
| 다문화사회전문가(법무부)      | 16<br>(76.2) | 0<br>(0) | 16<br>(76.2) |
| 다문화이해교육전문강사(여성가족부) | 4<br>(19)    | 0<br>(0) | 4<br>(19)    |
| 다문화전문강사(문화체육관광부)   | 1<br>(4.8)   | 0<br>(0) | 1<br>(4.8)   |
| 기타                 | 4<br>(19)    | 0<br>(0) | 4<br>(19)    |
| 전체                 | 21           | 0        | 21           |

기관담당자가 이수한 다문화 관련 자격은 다문화사회전문가(76.2%), 다문화이해교육전문강사(19%), 다문화사회전문강사(4.8%), 기타(19%)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가 진행했던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은 어떤 교육이었는데 응답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진행한 결혼이주여성 법교육(다중응답) \*단위: 빈도(비율)

|                              | 기관           | 강사           | 전체           |
|------------------------------|--------------|--------------|--------------|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한국사회이해            | 29<br>(61.7) | 7<br>(25.9)  | 36<br>(48.6) |
| 한국법교육센터의 이민자생활법률특강           | 30<br>(63.8) | 25<br>(92.6) | 55<br>(74.3) |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의<br>다문화가족캠프 | 5<br>(10.6)  | 1<br>(3.7)   | 6<br>(8.1)   |
| 경찰청 등 각 기관의 법교육              | 11<br>(23.4) | 1<br>(3.7)   | 12<br>(16.2) |
| 기타                           | 2<br>(4.3)   | 0<br>(0)     | 2<br>(2.7)   |
| 전체                           | 47           | 27           | 74           |

진행한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은 한국법교육센터의 이민자생활법률특강,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한국사회이해, 경찰청 등 각 기관의 법교육,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의 다문화가족캠프 순으로 나타났다.

### 3. 분석 방법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설문지 문항에 따라 5점 척도 문항, 객관식 문항과 복수 응답 문항, 순위 문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SPSS 12.0, EXCEL을 사용하였다.

먼저 5점 척도 문항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고,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 집단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객관식 문항은 빈도분석과 집단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카이스퀘어제곱)을 실시하였다. 객관식 문항 중 복수 응답이 가능한 문항은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하였고,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 집단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순위를 매기도록 한 문항은 빈도, 다중응답 분석을 하였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합으로 순위를 매겼다. 순위를 매기도록 한 문항은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와 내용요소 선정, 이주민 법교육 강사 양성과정의 내용요소에 대한 조사이며,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주제 중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순위를 묻는 문항은 폐쇄형 질문 중에서 서열식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결혼이주여성 대상 법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총 15개의 주제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차례대로 순위를 매기고, 필요한 경우 판단이유를 쓰도록 하였다. 최종순위는 가중합을 구하여 결정하였다. 가중합은 고려하고자 하는 값에 가중값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1순위 빈도수×5 + 2순위 빈도수×4 + 3순위 빈도수×3 + 4순위 빈도수×2 + 5순위 빈도수×1”(최상덕 외, 2013: 141)로 계산하였다. 즉 1순위 빈도에 최고점을 주고, 그 다음 순위로 갈수록 낮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가중합을 구하였다. 최종순위는 가중합이 높은 순위로

결정하였다. 둘째, 총 15개의 각 주제별 하위 내용요소의 중요도 순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내용요소에 대한 문항은 총 15개 주제를 각 주제별로 1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법교육을 실시한다는 전제 하에서 각각의 내용요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차례대로 쓰도록 하였다. 또한 중요한 내용요소가 누락되어 있을 경우 각 항목의 빈칸에 직접 채워넣고 순위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최종 순위는 가중합을 구하여 결정하였다. 가중합은 고려하고자 하는 값에 가중값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1순위 빈도수×4 + 2순위 빈도수×3 + 3순위 빈도수×2 + 4순위 빈도수×1”(최상덕 외, 2013: 141)로 계산하였다. 즉 1순위 빈도에 최고점을 주고, 그 다음 순위로 갈수록 낮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가중합을 구하였다. 최종 순위는 가중합이 높은 순위로 결정하였다. 셋째, 이주민 법교육 강사 양성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를 묻는 한 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각각의 내용요소에 대해 순서대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차례대로 쓰도록 하였다. 또한 중요한 내용요소가 누락되어 있을 경우 각 항목의 빈칸에 직접 채워넣고 순위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최종 순위는 가중합을 구하여 결정하였다.

#### 4. 연구윤리

본 연구는 인간 대상 연구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며, 응답자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도 있는 연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인 대상이며, 연구 방법이 비대면 설문조사이고 응답자의 민감한 신상정보를 응답지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응답자의 동의서 면제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본 연구는 2018년 3월에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윤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180305-1A, 2018.03.28.).



## IV. 연구 결과

### 1.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목표와 필요성의 각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는 <표 12>와 같다. 각 항목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1점,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2점, 보통인 경우에는 3점, 약간 동의하는 경우에는 4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5점에 응답하도록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12>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 목표와 필요성                   | 집단별 |    |      |       |         |      | 전체(N=114) |      |
|---------------------------|-----|----|------|-------|---------|------|-----------|------|
|                           | 구분  | N  | M    | SD    | t       | p    | M         | SD   |
| 기초적인<br>법체계와<br>법지식의 이해   | 기관  | 59 | 4.39 | .788  | .258    | .797 | 4.37      | .915 |
|                           | 강사  | 55 | 4.35 | 1.040 |         |      |           |      |
| 한국에서<br>체류자격 등<br>법적문제 해결 | 기관  | 59 | 4.58 | .649  | 3.219** | .002 | 4.30      | .977 |
|                           | 강사  | 55 | 4.00 | 1.171 |         |      |           |      |
| 민주시민성 함양                  | 기관  | 59 | 4.31 | .876  | .404    | .687 | 4.27      | .905 |
|                           | 강사  | 55 | 4.24 | .942  |         |      |           |      |
| 사회통합                      | 기관  | 59 | 4.44 | .794  | .791    | .431 | 4.38      | .886 |
|                           | 강사  | 55 | 4.31 | .979  |         |      |           |      |
| 사회적응                      | 기관  | 59 | 4.53 | .751  | -1.146  | .885 | 4.54      | .731 |
|                           | 강사  | 55 | 4.55 | .715  |         |      |           |      |
| 인권과 기본권의<br>이해            | 기관  | 59 | 4.47 | .728  | .375    | .708 | 4.45      | .799 |
|                           | 강사  | 55 | 4.42 | .875  |         |      |           |      |
| 인권보장과<br>권익증진             | 기관  | 59 | 4.44 | .749  | .515    | .607 | 4.40      | .795 |
|                           | 강사  | 55 | 4.36 | .847  |         |      |           |      |
| 범죄피해예방                    | 기관  | 59 | 4.59 | .790  | -.431   | .668 | 4.62      | .757 |
|                           | 강사  | 55 | 4.65 | .726  |         |      |           |      |
| 범죄발생예방                    | 기관  | 59 | 4.53 | .796  | .876    | .383 | 4.46      | .874 |
|                           | 강사  | 55 | 4.38 | .952  |         |      |           |      |
| 다문화사회의<br>갈등 완화           | 기관  | 59 | 4.36 | .826  | -.781   | .436 | 4.41      | .796 |
|                           | 강사  | 55 | 4.47 | .766  |         |      |           |      |
| 우리 사회<br>구성원으로서<br>의무 이행  | 기관  | 59 | 4.46 | .837  | .134    | .894 | 4.45      | .842 |
|                           | 강사  | 55 | 4.44 | .856  |         |      |           |      |

\* p < .05, \*\* p < .01, \*\*\* p < .001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범죄피해예방(M=4.62), 사회적응(M=4.54), 범죄발생예방(M=4.46), 인권과 기본권의 이해(M=4.45),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 이행(M=4.45), 다문화사회의 갈등 완화(M=4.41), 인권보장과 권익증진(M=4.4), 사회통합(M=4.38), 기초적인 법체계와 범지식의 이해(M=4.37), 한국에서 체류자격 등 법적문제 해결(M=4.3), 민주시민성 함양(M=4.27)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모든 항목의 평균이 4.0이상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목표와 필요성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한국에서 체류자격 등 법적문제 해결’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다. ‘한국에서 체류자격 등 법적문제 해결’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에 차이는 t 통계값이 3.22, 유의확률은 .002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체류자격 등 법적문제 해결’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의 동의 정도 평균은 4.58, 표준편차는 .65이며,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 평균은 4.00, 표준편차는 1.17이다. 즉, ‘한국에서 체류자격 등 법적문제 해결’ 항목은 법교육전문강사보다 기관담당자의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주제와 내용요소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와 내용요소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서 법교육, 한국법교육센터의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의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프로그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표 13>과 같이 추출하였다(주제 추출 과정은 <부록 1> 참조).

<표 13>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와 해당 내용

| No | 주제         | 해당 내용   |
|----|------------|---|
| 1  | 체류자격 및 이주  | 체류자격(영주자격 포함), 국적, 가족초청 등   |
| 2  | 인권과 기본권    | 인권과 기본권의 의미, 기본권의 종류, 국민의 의무, 외국인에게 인정되는/인정되기 어려운 기본권 등             |
| 3  |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 민주주의,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선거제도 등   |
| 4  | 혼인         |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남편의 사망관련 문제(국적, 지원제도 등), 가정폭력 등                        |
| 5  | 자녀         | 아동학대, 학교폭력, 한국의 교육 정책, 출산지원정책, 입양제도 등                               |
| 6  | 이혼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사유와 절차, 이혼으로 인한 변화(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 후의 문제(체류, 지원제도 등) 등 |
| 7  | 상속         | 상속 순위, 상속분,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언 등  |
| 8  | 근로         | 근로계약, 최저임금, 휴가제도, 임금체불, 4대보험, 퇴직금 등                                 |
| 9  | 소비         | 소비 유형별(할부, 통신거래, 방문판매 등) 주의점, 반품과 환불, 소비 관련 피해 예방과 구제방법 등           |
| 10 | 부동산        | 임대차 절차와 주의점, 매매 절차와 주의점, 부동산 관련 피해 예방과 구제 등                         |
| 11 | 범죄(발생)예방   | 해외불법송금, 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담 등), 대포통장, 성매매, 지적재산권 침해 등                     |
| 12 | 범죄피해예방     | 금전거래 관련, 명의도용, 대포통장, 사기 피해, 성폭력 등                                   |
| 13 | 기타 준법생활    | 법의 필요성, 준법의식, 기초 법질서, 교통법규 등  |
| 14 | 법률구조와 지원   | 법률구조 방법,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법률상담사례 등                                       |
| 15 | 사회보장(지원)제도 | 건강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 지원, 출산지원정책 등                                   |



‘11. 범죄(발생)예방’과 ‘12. 범죄피해예방’ 주제는 반드시 별도의 수업으로 구분해서 교육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금융사기’, ‘대포통장’, ‘명예훼손과 모욕’, ‘폭력과 상해’의 경우에는 ‘범죄(발생)예방’ 주제와 ‘범죄피해예방’ 주제에 모두 제시하였다.

‘14. 법률 구조와 지원’ 주제는 반드시 별도의 수업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 차시로 다루는 것이 시간과 여건상 어렵다면 각 교육 주제에서 그에 해당하는 구조와 지원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는 방안이 있다.

### 1)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에 대하여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가 응답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 주제         | 기관  |    | 강사  |    | 전체  |    |
|------------|-----|----|-----|----|-----|----|
|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 체류자격 및 이주  | 155 | 1  | 102 | 1  | 257 | 1  |
| 인권과 기본권    | 100 | 4  | 91  | 3  | 191 | 4  |
|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 11  | 13 | 13  | 14 | 24  | 14 |
| 혼인         | 146 | 2  | 101 | 2  | 247 | 2  |
| 자녀         | 114 | 3  | 90  | 4  | 204 | 3  |
| 이혼         | 46  | 7  | 41  | 10 | 87  | 8  |
| 상속         | 8   | 15 | 11  | 15 | 19  | 15 |
| 근로         | 68  | 5  | 73  | 6  | 141 | 5  |
| 소비         | 34  | 10 | 14  | 13 | 48  | 12 |
| 부동산        | 10  | 14 | 22  | 12 | 32  | 13 |
| 범죄(발생)예방   | 44  | 9  | 54  | 7  | 98  | 7  |
| 범죄피해예방     | 45  | 8  | 88  | 5  | 133 | 6  |
| 기타 준법생활    | 49  | 6  | 29  | 11 | 78  | 10 |
| 법률구조와 지원   | 21  | 12 | 43  | 9  | 64  | 11 |
| 사회보장(지원)제도 | 34  | 10 | 53  | 8  | 87  | 8  |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중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는 ‘체류 자격 및 이주’가 1순위, ‘혼인’이 2순위, ‘자녀’가 3순위, ‘인권과 기본권’이 4순위, ‘근로’가 5순위로 나타났다.

기관담당자는 1~5순위로 꼽았으나, 법교육전문강사는 1~5순위로 꼽지 않은 항목은 ‘근로’로 나타났다. ‘근로’의 경우에 기관담당자는 5순위(가중합 68), 법교육전문강사는 6순위(가중합 73)로 나타났다. 즉, 기관담당자가 법교육강사보다 ‘근로’ 주제를 더 우선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교육전문강사는 1~5순위로 꼽았으나, 기관담당자는 1~5순위로 꼽지 않은 항목은 ‘범죄피해예방’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예방’은 법교육전문강사의 경우에는 5순위(가중합 88)인 반면에, 기관담당자의 경우에는 8순위(가중합 45)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교육전문강사가 기관담당자보다 ‘범죄피해예방’ 주제를 더 우선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내용요소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를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총 15개의 주제(<표 13> 참조)별로 내용요소의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결과 분석은 가중합으로 순위를 나타내었으며, 하나의 주제를 1차시에 강의한다는 가정 하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요소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살펴보았다.

## (1) 체류자격 및 이주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중 ‘체류자격 및 이주’의 내용요소에 대하여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체류자격 및 이주’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내용요소                             | 기관  |    | 강사  |    | 전체  |    |
|----------------------------------|-----|----|-----|----|-----|----|
|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 외국인 등록                           | 83  | 4  | 62  | 5  | 145 | 4  |
| 체류자격(사증:F-6결혼이민, F-2거주, F-5영주자격) | 120 | 1  | 128 | 1  | 248 | 1  |
| 체류기간과 연장                         | 103 | 3  | 78  | 3  | 181 | 3  |
| 불법체류, 강제퇴거, 출국권고, 출국명령           | 44  | 6  | 68  | 4  | 112 | 5  |
| 체류지 변경신고                         | 42  | 7  | 19  | 7  | 61  | 7  |
| 국적취득(간이귀화, 특별귀화 등)               | 117 | 2  | 106 | 2  | 223 | 2  |
| 복수국적                             | 10  | 8  | 13  | 8  | 23  | 8  |
| 가족초청                             | 59  | 5  | 36  | 6  | 95  | 6  |
| 추가 의견                            | 1   | 9  | 0   | 9  | 1   | 9  |

‘체류자격 및 이주’ 주제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는 ‘체류자격(사증:F-6결혼이민, F-2거주, F-5영주자격)’이 1순위, ‘국적취득(간이귀화, 특별귀화 등)’이 2순위, ‘체류기간과 연장’이 3순위, ‘외국인 등록’이 4순위로 나타났다. 추가 의견으로는 한국 국적 취득 결정 후 자국의 국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기관담당자는 1~4순위로 꼽았으나, 법교육전문강사는 1~4순위로 꼽지 않은 항목은 ‘외국인 등록’으로 나타났다. 법교육전문강사는 1~4순위로 꼽았으나, 기관담당자는 1~4순위로 꼽지 않은 항목은 ‘불법체류, 강제퇴거, 출국권고, 출국명령’로 나타났다.

## (2) 인권과 기본권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중 ‘인권과 기본권’의 내용요소에 대하여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인권과 기본권’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내용요소                    | 기관  |    | 강사  |    | 전체  |    |
|-------------------------|-----|----|-----|----|-----|----|
|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 인권과 기본권의 의미             | 142 | 1  | 146 | 1  | 288 | 1  |
| 외국인에게 인정되는/인정되기 어려운 기본권 | 132 | 2  | 137 | 2  | 269 | 2  |
| 기본권의 제한과 구제             | 63  | 5  | 74  | 4  | 137 | 4  |
| 평등권의 이해(차별 사례, 성차별 등)   | 85  | 4  | 91  | 3  | 176 | 3  |
| 자유권의 이해(종교의 자유 등)       | 36  | 6  | 17  | 8  | 53  | 6  |
| 사회권의 이해                 | 20  | 7  | 21  | 6  | 41  | 7  |
| 청구권의 이해                 | 1   | 9  | 21  | 6  | 22  | 8  |
| 참정권의 이해                 | 14  | 8  | 3   | 9  | 17  | 9  |
| 국민의 의무                  | 87  | 3  | 40  | 5  | 127 | 5  |
| 추가 의견                   | 0   | 10 | 0   | 10 | 0   | 10 |

‘인권과 기본권’ 주제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는 ‘인권과 기본권의 의미’가 1순위, ‘외국인에게 인정되는/인정되기 어려운 기본권’이 2순위, ‘평등권의 이해(차별 사례, 성차별 등)’이 3순위, ‘기본권의 제한과 구제’가 4순위로 나타났다.

기관담당자는 1~4순위로 꼽았으나, 법교육전문강사는 1~4순위로 꼽지 않은 항목은 ‘국민의 의무’로 나타났다. 법교육전문강사는 1~4순위로 꼽았으나, 기관담당자는 1~4순위로 꼽지 않은 항목은 ‘기본권의 제한과 구제’로 나타났다.

### (3)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중 ‘민주주의와 정치제도’의 내용요소에 대하여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민주주의와 정치제도’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내용요소                | 기관  |    | 강사  |    | 전체  |    |
|---------------------|-----|----|-----|----|-----|----|
|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 민주주의                | 177 | 1  | 150 | 1  | 327 | 1  |
| 삼권분립(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 69  | 5  | 71  | 4  | 140 | 4  |
| 선거제도                | 136 | 2  | 123 | 2  | 259 | 2  |
| 정당제도                | 19  | 6  | 12  | 7  | 31  | 6  |
| 정치 참여 방법            | 86  | 3  | 105 | 3  | 191 | 3  |
| 지방자치제도              | 77  | 4  | 51  | 5  | 128 | 5  |
| 헌법재판제도              | 12  | 7  | 17  | 6  | 29  | 7  |
| 추가 의견               | 0   | 8  | 1   | 8  | 1   | 8  |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주제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는 ‘민주주의’가 1순위, ‘선거제도’가 2순위, ‘정치 참여 방법’이 3순위, ‘삼권분립(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이 4순위로 나타났다. 추가 의견으로는 법치주의가 있었다.

기관담당자는 1~4순위로 꼽았으나, 법교육전문강사는 1~4순위로 꼽지 않은 항목은 ‘지방자치제도’로 나타났다. 법교육전문강사는 1~4순위로 꼽았으나, 기관담당자는 1~4순위로 꼽지 않은 항목은 ‘삼권분립(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으로 나타났다.

#### (4) 혼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중 ‘혼인’의 내용요소에 대하여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혼인’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내용요소                                 | 기관  |    | 강사  |    | 전체  |    |
|--------------------------------------|-----|----|-----|----|-----|----|
|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 혼인신고 방법과 효력(사실혼과 법률혼)                | 124 | 2  | 123 | 1  | 247 | 1  |
| 평등한 부부 관계                            | 121 | 3  | 97  | 3  | 218 | 3  |
|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동거, 부양, 협조)              | 134 | 1  | 113 | 2  | 247 | 1  |
| 부부간 재산관리(부부별산제, 일상가사대리)              | 43  | 6  | 56  | 5  | 99  | 5  |
| 출생신고 방법과 효력                          | 32  | 7  | 27  | 7  | 59  | 7  |
| 남편의 사망 관련 문제들 (체류연장, 국적, 상속, 지원제도 등) | 45  | 5  | 50  | 6  | 95  | 6  |
| 가정폭력과 대처                             | 77  | 4  | 83  | 4  | 160 | 4  |
| 추가 의견                                | 0   | 8  | 0   | 8  | 0   | 8  |

‘혼인’ 주제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는 ‘혼인신고 방법과 효력(사실혼과 법률혼)’,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동거, 부양, 협조)’가 공동 1순위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평등한 부부 관계’가 3순위, ‘가정폭력과 대처’가 4순위로 나타났다.

## (5) 자녀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중 ‘자녀’의 내용요소에 대하여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 ‘자녀’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내용요소                          | 기관  |    | 강사  |    | 전체  |    |
|-------------------------------|-----|----|-----|----|-----|----|
|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 112 | 3  | 127 | 1  | 239 | 2  |
| 학교폭력과 대처                      | 77  | 4  | 96  | 4  | 173 | 5  |
| 한국의 교육 정책                     | 122 | 2  | 64  | 5  | 186 | 3  |
| 출산 관련 지원 정책(출산 전 지원, 양육 지원 등) | 148 | 1  | 119 | 2  | 267 | 1  |
| 입양제도(중도입국자녀등)                 | 47  | 6  | 23  | 6  | 70  | 6  |
| 자녀의 국적 문제(혈통주의, 귀화제도)         | 74  | 5  | 107 | 3  | 181 | 4  |
| 추가 의견                         | 0   | 7  | 0   | 7  | 0   | 7  |

‘자녀’ 주제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는 ‘출산관련 지원 정책(출산 전 지원, 양육 지원 등)’이 1순위,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가 2순위, ‘한국의 교육 정책’이 3순위, ‘자녀의 국적 문제(혈통주의, 귀화제도)’가 4순위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에 대한 우선순위를 집단별로 보면 법교육전문강사가 1순위로 꼽은 반면에 기관담당자는 3순위로 꼽은 것을 볼 수 있다.

기관담당자는 1~4순위로 꼽았으나, 법교육전문강사는 1~4순위로 꼽지 않은 항목은 ‘한국의 교육 정책’로 나타났다. 법교육전문강사는 1~4순위로 꼽았으나, 기관담당자는 1~4순위로 꼽지 않은 항목은 ‘자녀의 국적 문제(혈통주의, 귀화제도)’로 나타났다.

## (6) 이혼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중 ‘이혼’의 내용요소에 대하여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 ‘이혼’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내용요소                        | 기관  |    | 강사  |    | 전체  |    |
|-----------------------------|-----|----|-----|----|-----|----|
|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 협의이혼의 의미와 절차                | 129 | 1  | 134 | 1  | 263 | 1  |
| 재판상 이혼의 의미와 절차, 재판상 이혼사유    | 86  | 4  | 108 | 2  | 194 | 3  |
| 이혼 후 재산 문제(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 72  | 5  | 105 | 3  | 177 | 4  |
| 이혼 후 자녀 문제(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 100 | 2  | 99  | 4  | 199 | 2  |
| 이혼 후 사회복지지원제도               | 52  | 6  | 28  | 6  | 80  | 6  |
| 이혼과 체류연장, 국적취득 문제           | 98  | 3  | 54  | 5  | 152 | 5  |
| 이혼신고절차                      | 33  | 7  | 12  | 7  | 45  | 7  |
| 추가 의견                       | 0   | 8  | 0   | 8  | 0   | 8  |

‘이혼’ 주제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는 1순위가 ‘협의이혼의 의미와 절차’, 2순위가 ‘이혼 후 자녀 문제(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로 나타났다. 3순위는 ‘재판상 이혼의 의미와 절차, 재판상 이혼사유’, 4순위는 ‘이혼 후 재산 문제(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로 나타났다.

기관담당자는 1~4순위로 꼽았으나, 법교육전문강사는 1~4순위로 꼽지 않은 항목은 ‘이혼과 체류연장, 국적취득 문제’로 나타났다. 법교육전문강사는 1~4순위로 꼽았으나, 기관담당자는 1~4순위로 꼽지 않은 항목은 ‘이혼 후 재산 문제(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로 나타났다.



## (7) 상속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중 ‘상속’의 내용요소에 대하여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 ‘상속’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내용요소                           | 기관  |    | 강사  |    | 전체  |    |
|--------------------------------|-----|----|-----|----|-----|----|
|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 상속의 의미와 시기                     | 184 | 1  | 169 | 1  | 353 | 1  |
| 상속순위와 상속분                      | 130 | 2  | 134 | 2  | 264 | 2  |
| 상속의 승인과 포기(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 91  | 3  | 99  | 3  | 190 | 3  |
| 유언의 방식과 효력                     | 33  | 5  | 43  | 5  | 76  | 5  |
| 유류분                            | 22  | 6  | 20  | 6  | 42  | 6  |
| 기여분                            | 19  | 7  | 15  | 7  | 34  | 7  |
| 상속 절차(상속 재산 조사,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등) | 80  | 4  | 70  | 4  | 150 | 4  |
| 추가 의견                          | 0   | 8  | 0   | 8  | 0   | 8  |

‘상속’ 주제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는 ‘상속의 의미와 시기’가 1순위, ‘상속순위와 상속분’이 2순위, ‘상속의 승인과 포기(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3순위, ‘상속 절차(상속 재산 조사,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등)’가 4순위로 나타났다.

## (8) 근로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중 ‘근로’의 내용요소에 대하여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 ‘근로’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내용요소                           | 기관  |    | 강사  |    | 전체  |    |
|--------------------------------|-----|----|-----|----|-----|----|
|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 근로계약                           | 162 | 1  | 140 | 1  | 302 | 1  |
| 구직방법(알선기관)                     | 90  | 2  | 74  | 3  | 164 | 3  |
| 취업지원서비스(내일배움카드)                | 70  | 4  | 43  | 5  | 113 | 5  |
| 최저임금제도와 휴게시간                   | 80  | 3  | 85  | 2  | 165 | 2  |
| 유급휴일과 휴가제도                     | 11  | 11 | 26  | 8  | 37  | 10 |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 16  | 10 | 27  | 7  | 43  | 8  |
| 임금체불(내용증명, 소송)                 | 44  | 6  | 70  | 4  | 114 | 4  |
| 회사 파산(도산, 체당금)                 | 5   | 12 | 6   | 11 | 11  | 12 |
| 여성을 위한 제도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 20  | 7  | 30  | 6  | 50  | 7  |
| 4대보험                           | 48  | 5  | 13  | 10 | 61  | 6  |
| 퇴직금                            | 17  | 8  | 1   | 12 | 18  | 11 |
| 직장 내 성희롱                       | 17  | 8  | 25  | 9  | 42  | 9  |
| 추가 의견                          | 0   | 13 | 0   | 13 | 0   | 13 |

‘근로’ 주제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는 ‘근로계약’이 1순위, ‘최저임금제도와 휴게시간’이 2순위, ‘구직방법(알선기관)’이 3순위, ‘임금체불(내용증명, 소송)’이 4순위로 나타났다.

기관담당자는 1~4순위로 뽑았으나, 법교육전문강사는 1~4순위로 뽑지 않은 항목은 ‘취업지원서비스(내일배움카드)’로 나타났다. 법교육전문강사는 1~4순위로 뽑았으나, 기관담당자는 1~4순위로 뽑지 않은 항목은 ‘임금체불(내용증명, 소송)’로 나타났다.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 간에 순위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은 ‘4대보험’과 ‘퇴직금’ 항목이다. ‘4대보험’의 경우 기관담당자는 5순위로, 법교육전문강사는 10순위로 뽑았다. 법교육전문강사보다 기관담당자가 ‘4대보험’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기관담당자가 8순위로, 법교육전문강사가 12순위로 뽑았다.

## (9) 소비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중 ‘소비’의 내용요소에 대하여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 ‘소비’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내용요소                         | 기관  |    | 강사  |    | 전체  |    |
|------------------------------|-----|----|-----|----|-----|----|
|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 소비와 소비자의 의미                  | 96  | 1  | 64  | 3  | 160 | 1  |
| 소비자의 8대 권리                   | 55  | 5  | 35  | 7  | 90  | 7  |
| 할부거래                         | 58  | 4  | 31  | 8  | 89  | 8  |
|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인터넷 쇼핑, TV홈쇼핑 등) | 81  | 2  | 76  | 1  | 157 | 2  |
|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                 | 51  | 6  | 27  | 10 | 78  | 9  |
| 해외직구                         | 14  | 13 | 4   | 13 | 18  | 13 |
| 경품과 개인정보유출                   | 16  | 12 | 8   | 12 | 24  | 12 |
| 중고거래와 주의점                    | 20  | 10 | 29  | 9  | 49  | 10 |
| 반품, 환불 조건과 절차                | 40  | 7  | 66  | 2  | 106 | 4  |
| 제품하자와 보상                     | 19  | 11 | 27  | 10 | 46  | 11 |
| 피해 예방 방법(인증마크, 주의사항 확인 등)    | 37  | 8  | 54  | 5  | 91  | 6  |
| 피해 구제 방법(내용증명, 손해배상 등)       | 34  | 9  | 61  | 4  | 95  | 5  |
|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장단점, 결제취소, 분실 등)  | 59  | 3  | 48  | 6  | 107 | 3  |
| 추가 의견                        | 0   | 14 | 0   | 14 | 0   | 14 |

‘소비’ 주제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는 ‘소비와 소비자의 의미’가 1순위,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인터넷 쇼핑, TV홈쇼핑 등)’가 2순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장단점, 결제취소, 분실 등)’가 3순위, ‘반품, 환불의 조건과 절차’가 4순위로 나타났다.

기관담당자는 1~4순위로 꼽았으나, 법교육전문강사는 1~4순위로 꼽지 않은 항목은 ‘할부거래’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장단점, 결제취소, 분실 등)’로 나타났다. 법교육전문강사는 1~4순위로 꼽았으나, 기관담당자는 1~4순위로 꼽지 않은 항목은 ‘반품, 환불 조건과 절차’와 ‘피해 구제 방법(내용증명, 손해배상 등)’으로 나타났다.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순위가 많이 차이나는 항목은 4순위인 ‘반품, 환불 조건과 절차’와 5순위인 ‘피해구제방법(내용증명, 손해배상 등)’ 항목이다. ‘반품, 환불 조건과 절차’ 항목은 기관담당자는 7순위, 법교육전문강사는 2순위로 꼽았다. ‘피해구제방법(내용증명, 손해배상 등)’은 기관담당자가 9순위로, 법교육전문강사가 4순위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 (10) 부동산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중 ‘부동산’의 내용요소에 대하여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4>와 같다.

<표 24> ‘부동산’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내용요소                    | 기관  |    | 강사  |    | 전체  |    |
|-------------------------|-----|----|-----|----|-----|----|
|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의 의미         | 123 | 1  | 103 | 1  | 226 | 1  |
| 임대차 절차와 주의점             | 99  | 2  | 92  | 2  | 191 | 2  |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63  | 4  | 77  | 3  | 140 | 4  |
| 전세(전세금)와 월세(보증금, 하자보증금) | 95  | 3  | 59  | 4  | 154 | 3  |
| 부동산 매매 절차와 주의점          | 38  | 6  | 26  | 7  | 64  | 7  |
| 외국인 특별공급 대상 분양과 절차      | 57  | 5  | 16  | 10 | 73  | 5  |
| 부동산 세금                  | 3   | 14 | 0   | 15 | 3   | 15 |
| 부동산 거래 신고               | 4   | 13 | 5   | 13 | 9   | 14 |
| 등기제도                    | 7   | 11 | 10  | 11 | 17  | 11 |
| 중개 거래(공인중개사)와 직거래       | 6   | 12 | 5   | 13 | 11  | 13 |
| 계약서 작성 방법과 주의점          | 31  | 7  | 38  | 6  | 69  | 6  |
| 계약 취소와 해제               | 2   | 15 | 10  | 11 | 12  | 12 |
|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20  | 9  | 43  | 5  | 63  | 8  |
| 부동산 사기의 예방과 구제          | 21  | 8  | 26  | 7  | 47  | 9  |
| 부동산 관련 피해와 구제           | 10  | 10 | 20  | 9  | 30  | 10 |
| 추가 의견                   | 0   | 16 | 0   | 16 | 0   | 16 |

‘부동산’ 주제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의 의미’가 1순위, ‘임대차 절차와 주의점’이 2순위, ‘전세(전세금)와 월세(보증금, 하자보증금)’가 3순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4순위로 나타났다. ‘외국인 특별공급 대상 분양과 절차’ 항목은 기관담당자가 5순위로, 법교육전문강사가 10순위로 꼽아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11) 범죄(발생)예방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중 ‘범죄(발생)예방’의 내용요소에 대하여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표 25> ‘범죄(발생)예방’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내용요소             | 기관  |    | 강사  |    | 전체  |    |
|------------------|-----|----|-----|----|-----|----|
|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 해외 불법 송금(외국환거래법) | 156 | 1  | 100 | 2  | 256 | 2  |
|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가담) | 154 | 2  | 140 | 1  | 294 | 1  |
| 대포통장             | 61  | 4  | 74  | 3  | 135 | 3  |
| 성매매 예방과 대처       | 73  | 3  | 55  | 4  | 128 | 4  |
| 명예훼손, 모욕         | 21  | 7  | 36  | 7  | 57  | 7  |
| 지적재산권 침해         | 13  | 8  | 11  | 10 | 24  | 9  |
| 마약, 불법의약품        | 5   | 10 | 14  | 9  | 19  | 10 |
| 폭력, 상해           | 53  | 5  | 53  | 5  | 106 | 5  |
| 점유이탈물횡령          | 11  | 9  | 16  | 8  | 27  | 8  |
| 범죄처리절차(형사절차)     | 23  | 6  | 41  | 6  | 64  | 6  |
| 추가 의견            | 0   | 11 | 0   | 11 | 0   | 11 |

‘범죄(발생)예방’ 주제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가담)’가 1순위, ‘해외 불법 송금(외국환거래법)’이 2순위, ‘대포통장’이 3순위, ‘성매매 예방과 대처’가 4순위로 나타났다.

## (12) 범죄피해예방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중 ‘범죄피해예방’의 내용요소에 대하여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 26> ‘범죄피해예방’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내용요소                      | 기관  |    | 강사  |    | 전체  |    |
|---------------------------|-----|----|-----|----|-----|----|
|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 명의도용                      | 116 | 1  | 87  | 4  | 203 | 1  |
| 대포통장                      | 74  | 4  | 46  | 7  | 120 | 5  |
| 금전거래(차용증, 연대보증 등)         | 93  | 3  | 96  | 1  | 189 | 3  |
| 금융사기 피해 예방(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 103 | 2  | 88  | 3  | 191 | 2  |
| 명예훼손, 모욕                  | 13  | 8  | 23  | 8  | 36  | 8  |
| 폭력, 상해                    | 45  | 7  | 51  | 6  | 96  | 7  |
| 성폭력(성희롱, 성폭력 등)           | 73  | 5  | 90  | 2  | 163 | 4  |
| 피해 예방 및 구제 방법             | 53  | 6  | 59  | 5  | 112 | 6  |
| 추가 의견                     | 0   | 9  | 0   | 9  | 0   | 9  |

‘범죄피해예방’ 주제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는 ‘명의도용’이 1순위, ‘금융사기 피해 예방(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이 2순위, ‘금전거래(차용증, 연대보증등)’가 3순위, ‘성폭력(성희롱, 성폭력등)’이 4순위로 나타났다.

기관담당자는 1~4순위로 꼽았으나, 법교육전문강사는 1~4순위로 꼽지 않은 항목은 ‘대포통장’으로 나타났다. 법교육전문강사는 1~4순위로 꼽았으나, 기관담당자는 1~4순위로 꼽지 않은 항목은 ‘성폭력(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성희롱, 성폭력 등)’은 기관담당자가 5순위로, 법교육전문강사가 2순위로 선정하여 법교육전문강사가 기관담당자보다 ‘성폭력(성희롱, 성폭력 등)’ 항목을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볼 수 있다. 1~4순위에 들지는 않았지만, 5순위인 ‘대포통장’의 경우 기관담당자는 4순위로, 법교육전문강사는 7순위로 선정하였다.

### (13) 기타 준법생활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중 ‘기타 준법생활’의 내용요소에 대하여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 ‘기타 준법생활’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내용요소                         | 기관  |    | 강사  |    | 전체  |    |
|------------------------------|-----|----|-----|----|-----|----|
|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 법의 역할과 필요성                   | 87  | 3  | 74  | 5  | 161 | 4  |
| 준법정신의 중요성                    | 108 | 2  | 81  | 4  | 189 | 2  |
| 기초질서(분리수거, 쓰레기종량제, 무임승차 등)   | 170 | 1  | 126 | 1  | 296 | 1  |
| 경범죄처벌                        | 74  | 5  | 84  | 3  | 158 | 5  |
| 교통법규(교통질서, 뺑소니, 음주운전 등)      | 77  | 4  | 99  | 2  | 176 | 3  |
| 운전면허제도(자동차, 오토바이, 외국면허 변경 등) | 64  | 6  | 66  | 6  | 130 | 6  |
| 추가 의견                        | 0   | 7  | 0   | 7  | 0   | 7  |

‘기타 준법생활’ 주제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는 ‘기초 질서(분리수거, 쓰레기종량제, 무임승차 등)’가 1순위, ‘준법정신의 중요성’이 2순위, ‘교통법규(교통질서, 뺑소니, 음주운전 등)’가 3순위, ‘법의 역할과 필요성’이 4순위로 나타났다.

기관담당자는 1~4순위로 꼽았으나, 법교육전문강사는 1~4순위로 꼽지 않은 항목은 ‘법의 역할과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법교육전문강사는 1~4순위로 꼽았으나, 기관담당자는 1~4순위로 꼽지 않은 항목은 ‘경범죄처벌’로 나타났다.

#### (14) 법률구조와 지원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중 ‘법률 구조와 지원’의 내용요소에 대하여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8>과 같다.

<표 28> ‘법률구조와 지원’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내용요소               | 기관  |    | 강사  |    | 전체  |    |
|--------------------|-----|----|-----|----|-----|----|
|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 법률상담 지원 안내         | 192 | 1  | 169 | 1  | 361 | 1  |
| 법률구조 방법(도움을 주는 기관) | 159 | 2  | 164 | 2  | 323 | 2  |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 88  | 3  | 75  | 3  | 163 | 3  |
| 법집행기관(검찰, 경찰)      | 48  | 5  | 59  | 5  | 107 | 5  |
| 법률상담 사례            | 66  | 4  | 73  | 4  | 139 | 4  |
| 추가 의견              | 0   | 6  | 0   | 6  | 0   | 6  |

‘법률 구조와 지원’ 주제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는 ‘법률상담 지원 안내’가 1순위, ‘법률구조 방법(도움을 주는 기관)’이 2순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3순위, ‘법률상담 사례’가 4순위로 나타났다.

#### (15) 사회보장(지원)제도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중 ‘사회보장지원제도’의 내용요소에 대하여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9>와 같다.



<표 29> '사회보장(지원)제도'의 내용요소 우선 순위

| 내용요소   | 기관  |    | 강사  |    | 전체  |    |
|--|-----|----|-----|----|-----|----|
|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 사회보험(4대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 149 | 1  | 112 | 2  | 261 | 1  |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지원)                     | 97  | 4  | 96  | 3  | 193 | 3  |
| 자녀의 학교교육 지원  | 115 | 2  | 66  | 4  | 181 | 4  |
| 응급 의료 제도   | 23  | 6  | 37  | 6  | 60  | 6  |
| 장애인 복지제도   | 5   | 8  | 4   | 8  | 9   | 8  |
|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 16  | 7  | 20  | 7  | 36  | 7  |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지원 제도<br>(생활정보 제공, 한국어 교육, 의료 지원, 다국어 서비스 등) | 115 | 2  | 128 | 1  | 243 | 2  |
| 출산 관련 지원 정책(출산 전 지원, 양육 지원 등)                          | 60  | 5  | 66  | 4  | 126 | 5  |
| 추가 의견  | 0   | 9  | 0   | 9  | 0   | 9  |

'사회보장지원제도' 주제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는 '사회보험(4대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1순위,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지원 제도(생활정보 제공, 한국어 교육, 의료 지원, 다국어 서비스 등)'가 2순위,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지원)'가 3순위, '자녀의 학교교육 지원'이 4순위로 나타났다.

### 3.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교육 방법

#### 1) 수업 시수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적당한 교육 기간에 대해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30>과 같다.

<표 30>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적당한 교육 기간

\*단위: 빈도(비율)

|        | 기관           | 강사           | 전체            | $\chi^2$ (p)    |
|--------|--------------|--------------|---------------|-----------------|
| 일회성 교육 | 9<br>(15.3)  | 2<br>(3.6)   | 11<br>(9.6)   | 4.41*<br>(.036) |
| 정기적 교육 | 50<br>(84.7) | 53<br>(96.4) | 103<br>(90.4) |                 |
| 전체     | 59<br>(100)  | 55<br>(100)  | 114<br>(100)  |                 |

\*  $p < .05$ , \*\*  $p < .01$ , \*\*\*  $p < .001$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적당한 교육 기간에 대해 정기적 교육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90.4%, 일회성 교육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9.6%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별로 살펴보면, 정기적 교육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기관담당자(84.7%)와 법교육전문강사(96.4%) 모두 일회성 교육이 적당하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일회성 교육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기관담당자(15.3%)가 법교육전문강사(3.6%)보다 많았다.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에 따라서 교육 기간에 대한 의견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 통계값은 4.41, 유의확률은 .036으로써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은 일회성 교육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는 11명, 정기적 교육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103명을 대상으로 적절한 수업 시수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일회성 교육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 11명 중에서 결측 2명을 제외한 9명은 2시간(4명), 4시간(2명), 3시간(1명), 2~4시간(1명), 20시간(1명)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이 일회성 교육보다 정기적 교육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에게 적정한 연간 수업 시수를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표 31> 정기적 교육으로서 연간 수업 시수

\*단위: 빈도(비율)

|                 | 기관          | 강사           | 전체           | $\chi^2$ (p)    |
|-----------------|-------------|--------------|--------------|-----------------|
| 4시간 이하          | 7<br>(14)   | 12<br>(25.5) | 19<br>(19.6) | 6.506<br>(.164) |
| 5시간 이상 10시간 이하  | 18<br>(36)  | 23<br>(48.9) | 41<br>(42.3) |                 |
| 11시간 이상 20시간 이하 | 16<br>(32)  | 8<br>(17)    | 24<br>(24.7) |                 |
| 20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6<br>(12)   | 3<br>(6.4)   | 9<br>(9.3)   |                 |
| 40시간 이상         | 3<br>(6)    | 1<br>(2.1)   | 4<br>(4.1)   |                 |
| 전체              | 50<br>(100) | 47<br>(100)  | 97<br>(100)  |                 |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은 정기적 교육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는 총 103명이며, 이 중 결측 6명을 제외한 97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연간 법교육 수업 시수에 대해 5시간 이상 10시간 이하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2.3%로 가장 많았으며, 11시간 이상 20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24.7%, 4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19.6%, 20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9.3%, 4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1%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에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연간 법교육 시수에 대한 의견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 통계값은 6.506, 유의확률은 .164로써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5단계인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법, 역사, 지리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50차시이다. 이 중 법은 7차시, 정치(민주주의, 국회 등)는 5차시로 총 12차시로 구성되어있다. 12차시인 법교육 시수가 적당한지에 대해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법교육 시수가 적당한지  
\*단위: 빈도(비율)

|       | 기관           | 강사           | 전체           | $\chi^2$ (p)   |
|-------|--------------|--------------|--------------|----------------|
| 너무 적음 | 3<br>(5.1)   | 10<br>(18.2) | 13<br>(11.4) | 5.66<br>(.226) |
| 적음    | 15<br>(25.4) | 12<br>(21.8) | 27<br>(23.7) |                |
| 적당함   | 36<br>(61)   | 30<br>(54.5) | 66<br>(57.9) |                |
| 많음    | 4<br>(6.8)   | 3<br>(5.5)   | 7<br>(6.1)   |                |
| 너무 많음 | 1<br>(1.7)   | 0<br>(0)     | 1<br>(0.9)   |                |
| 전체    | 59<br>(100)  | 55<br>(100)  | 114<br>(100) |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법교육 시수가 적당한지에 대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57.9%, 적다고 응답(적음, 너무 적음)한 사람은 35.1% 많다고 응답(많음, 너무 많음)한 사람은 7%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에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법교육 시수가 적당한지에 대한 의견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 통계값은 5.66, 유의확률은 .226로써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2) 주제 선정 방법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의 주제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에게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는 <표 33>과 같다.

<표 33>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선택 방법(다중응답)

\*단위: 빈도(비율)

|               | 기관           | 강사           | 전체           |
|---------------|--------------|--------------|--------------|
| 수요기관에서 선택     | 28<br>(47.5) | 27<br>(49.1) | 55<br>(48.2) |
| 기관과 강사 협의     | 21<br>(35.6) | 28<br>(50.9) | 49<br>(43)   |
| 수강생이 선택       | 18<br>(30.5) | 17<br>(30.9) | 35<br>(30.7) |
| 교재에 제시된 주제 선택 | 6<br>(10.2)  | 2<br>(3.6)   | 8<br>(7)     |
| 기타            | 2<br>(3.4)   | 1<br>(1.8)   | 3<br>(2.6)   |
| 전체            | 59           | 55           | 114          |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의 주제를 선택하는 방법은 수요기관에서 선택(48.2%), 기관과 강사 협의(43%), 수강생이 선택(30.7%), 교재에 제시된 주제 선택(7%), 기타(2.6%) 순으로 나타났다.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한 결과, 기관담당자의 경우에는 수요 기관에서 주제를 선택(47.5%)한 경험이 가장 많았고, 법교육전문강사의 경우에는 기관과 강사가 협의(50.9%)해서 정한 경험이 가장 많았다.

## 3) 내용요소 구성 방법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의안 내용 구성 방법에 대해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34>와 같다. 강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응답하도록 하였고, 기

관담당자의 경우에는 강사가 어떻게 구성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34>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의안 내용 구성 방법

\*단위: 빈도(비율)

|                     | 기관           | 강사           | 전체           | $\chi^2$ (p)  |
|---------------------|--------------|--------------|--------------|---------------|
| 기관 요청 내용            | 11<br>(18.6) | 13<br>(23.6) | 24<br>(21.1) | .83<br>(.935) |
| 교재와 동일한 내용          | 6<br>(10.2)  | 6<br>(10.9)  | 12<br>(10.5) |               |
| 수강생 수요조사에 따른 내용     | 28<br>(47.5) | 26<br>(47.3) | 54<br>(47.4) |               |
| 강사의 경험과 판단으로 구성한 내용 | 13<br>(22)   | 9<br>(16.4)  | 22<br>(19.3) |               |
| 기타                  | 1<br>(1.7)   | 1<br>(1.8)   | 2<br>(1.8)   |               |
| 전체                  | 59<br>(100)  | 55<br>(100)  | 114<br>(100) |               |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의안 내용 구성 방법에 대해 수강생 수요조사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한다(혹은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7.4%, 기관에서 요청한 내용으로 구성한다(혹은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1.1%, 강사의 경험과 판단으로 구성한 내용으로 구성한다(혹은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9.3%, 교재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한다(혹은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0.5%, 기타 1.8%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에 따라서 에 대한 의견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 통계값은 .83, 유의확률은 .935로써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난이도

결혼이주여성이 법교육의 난이도를 어떻게 느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

<표 35>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난이도

\*단위: 빈도(비율)

|        | 기관           | 강사           | 전체           | $\chi^2$ (p)     |
|--------|--------------|--------------|--------------|------------------|
| 매우 어려움 | 7<br>(11.9)  | 3<br>(5.5)   | 10<br>(8.8)  | 12.01*<br>(.017) |
| 어려움    | 37<br>(62.7) | 21<br>(38.2) | 58<br>(50.9) |                  |
| 적당함    | 14<br>(23.7) | 27<br>(49.1) | 41<br>(36)   |                  |
| 쉬움     | 1<br>(1.7)   | 3<br>(5.5)   | 4<br>(3.5)   |                  |
| 매우 쉬움  | 0<br>(0)     | 1<br>(1.8)   | 1<br>(0.9)   |                  |
| 전체     | 59<br>(100)  | 55<br>(100)  | 114<br>(100) |                  |

\* p < .05, \*\* p < .01, \*\*\* p < .001

결혼이주여성이 법교육의 난이도를 어떻게 느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어렵게 느낀다(어려움, 매우 어려움)고 응답한 사람은 59.7%, 적당하게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은 36%, 쉽게 느낀다(쉬움, 매우 쉬움)고 응답한 사람은 4.4%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별로 살펴보면, ‘어렵게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은 기관담당자는 74.6%로 매우 높았고, 법교육전문강사는 43.7%로 절반 이하를 차지하였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어렵다고 느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법교육전문강사보다 기관담당자가 30.9%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이 법교육의 난이도를 ‘적당하게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은 법교육전문강사의 경우에는 49.1%, 기관담당자의 경

우에는 23.7%로 나타났다. 즉 적당하게 느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관 담당자보다 법교육전문강사가 25.4%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에 따라서 난이도에 대한 의견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 통계값은 12.01, 유의확률은 .017로써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교육전문강사는 기관담당자보다 결혼이주여성이 더 난이도를 어렵지 않게 느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법교육을 어렵게(어려움, 매우 어려움) 느낀다고 응답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에게 그 이유를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는 <표 36>과 같다.

<표 36> 결혼이주여성이 법교육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다중응답)

\*단위: 빈도(비율)

|               | 기관           | 강사           | 전체           |
|---------------|--------------|--------------|--------------|
| 한국어 실력 부족     | 44<br>(84.6) | 37<br>(94.9) | 81<br>(89)   |
| 본국에서 교육 수준 미비 | 12<br>(23.1) | 4<br>(10.3)  | 16<br>(17.6) |
| 자본주의 경험 부족    | 4<br>(7.7)   | 3<br>(7.7)   | 7<br>(7.7)   |
| 한국법의 어려움      | 14<br>(26.9) | 10<br>(25.6) | 24<br>(26.4) |
| 기타            | 6<br>(11.5)  | 6<br>(15.4)  | 12<br>(13.2) |
| 전체            | 52           | 39           | 91           |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한 결과,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 모두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여 법교육을 어렵게 느낀다는 의견이 각각 84.6%, 94.9%로 가장 많았다.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 모두 결혼이주여성의 자본주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7.7%로 가장 적었다.



## 5)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

결혼이주여성에게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의 각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 5점)는 <표 37>과 같다.

<표 37>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

| 항목   | 집단별 |    |      |       |        |      | 전체(N=114) |      |
|--|-----|----|------|-------|--------|------|-----------|------|
|  | 구분  | N  | M    | SD    | t      | p    | M         | SD   |
| 시각적인 교육 자료 활용(그림, 영상 등)                      | 기관  | 59 | 4.71 | .589  | .161   | .872 | 4.70      | 0.69 |
|  | 강사  | 55 | 4.69 | .791  |        |      |           |      |
| 사례형 법교육(판례 등)                                | 기관  | 59 | 4.42 | .814  | .883   | .379 | 4.35      | 0.91 |
|  | 강사  | 55 | 4.27 | 1.008 |        |      |           |      |
| 현장 체험학습(출입국관리소, 법원, 솔로몬로파크 등 방문)             | 기관  | 59 | 4.17 | .913  | 2.425* | .017 | 3.94      | 1.07 |
|  | 강사  | 55 | 3.69 | 1.169 |        |      |           |      |
| 참여형 법교육 <sup>30)</sup> (역할극, 발표 수업, 토론 수업 등) | 기관  | 59 | 3.90 | 1.109 | 2.125* | .036 | 3.67      | 1.22 |
|  | 강사  | 55 | 3.42 | 1.301 |        |      |           |      |
|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법교육                               | 기관  | 59 | 4.15 | .827  | 1.506  | .135 | 4.02      | 0.99 |
|  | 강사  | 55 | 3.87 | 1.123 |        |      |           |      |
| 상담식 법교육                                      | 기관  | 59 | 4.12 | .745  | .479   | .633 | 4.08      | 0.91 |
|  | 강사  | 55 | 4.04 | 1.071 |        |      |           |      |

\* p < .05, \*\* p < .01, \*\*\* p < .001

결혼이주여성에게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시각적인 교육 자료 활용(그림, 영상 등)’(M=4.70), ‘사례형 법교육(판례 등)’(M=4.35), ‘상담식 법교육’(M=4.08),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법교육’(M=4.02), ‘현장 체험학습(출입국관리소, 법원, 솔로몬로파크 등 방문)’(M=3.94), ‘참여형 법교육(역할극, 발표 수업, 토론 수업

30) 각주 9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 ‘학습자 참여형’,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교육’ 등 다양한 용어가 등장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참여형 법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등)'( $M=3.67$ )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에게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현장 체험학습', '참여형 법교육'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다. '현장 체험학습'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는 t 통계값이 2.425, 유의확률은 .017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체험학습'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의 동의 정도 평균은 4.17, 표준편차는 .913이며,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 평균은 3.69, 표준편차는 1.169이다. 즉, '현장 체험학습'은 법교육전문강사보다 기관담당자의 동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형 법교육'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는 t 통계값이 2.215, 유의확률은 .036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형 법교육'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의 동의 정도 평균은 3.90, 표준편차는 1.109이며,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 평균은 3.42, 표준편차는 1.301이다. 즉, '참여형 법교육'은 법교육전문강사보다 기관담당자의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4.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교육 자료

### 1) 사용하는 학습 자료

#### (1) 교재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에게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는 <표 38>과 같다.

<표 38> 사용하는 교재(다중응답)

\*단위: 빈도(비율)

|              | 기관           | 강사           | 전체           |
|--------------|--------------|--------------|--------------|
| 기관 자체 개발 교재  | 6<br>(10.2)  | 31<br>(56.4) | 37<br>(32.5) |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 31<br>(52.5) | 11<br>(20)   | 42<br>(36.8) |
| 강사가 자체적으로 개발 | 18<br>(30.5) | 19<br>(34.5) | 37<br>(32.5) |
| 교재 없이 강의     | 5<br>(8.5)   | 8<br>(14.5)  | 13<br>(11.4) |
| 잘 모름         | 8<br>(13.6)  | 0<br>(0)     | 8<br>(7)     |
| 기타           | 4<br>(6.8)   | 3<br>(5.5)   | 7<br>(6.1)   |
| 전체           | 59           | 55           | 114          |

다중응답 교차분석 결과, 기관담당자의 경우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52.5%)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강사 자체 개발 교재(30.5%), 잘 모름(13.6%), 기관 자체 개발 교재(10.2%), 교재 없이 강의(8.5%), 기타(6.8%) 순으로 나타났다. 법교육전문강사의 경우에는 기관 자체 개발 교재(56.4%)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강사가 자체적으로 개발(34.5%),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20%), 교재 없이 강의(14.5%), 기타(5.5%) 순으로 나타났다.

## (2) 강의안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강의안을 기관담당자와 법교육 전문강사에게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는 <표 39>과 같다.

<표 39> 사용하는 강의안(다중응답)

\*단위: 빈도(비율)

|                | 기관           | 강사           | 전체           |
|----------------|--------------|--------------|--------------|
| 한국법교육센터 제공 강의안 | 28<br>(47.5) | 48<br>(87.3) | 76<br>(66.7) |
| 기관 자체 개발 강의안   | 6<br>(10.2)  | 7<br>(12.7)  | 13<br>(11.4) |
| 강사 자체 개발 강의안   | 19<br>(32.2) | 11<br>(20)   | 30<br>(26.3) |
| 잘 모르겠음         | 10<br>(16.9) | 0<br>(0)     | 10<br>(8.8)  |
| 기타             | 0<br>(0)     | 1<br>(1.8)   | 1<br>(0.9)   |
| 전체             | 59           | 55           | 114          |

다중응답 교차분석 결과, 기관담당자(47.5%)와 법교육전문강사(87.3%) 모두 한국법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강의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문항에서 한국법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강의안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강의안을 활용하고 있는지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는 <표 40>과 같다.

<표 40> 한국법교육센터 제공 강의안 중 활용하는 강의안(다중응답)  
\*단위: 빈도(비율)

|            | 기관           | 강사           | 전체           |
|------------|--------------|--------------|--------------|
| 편편 대한민국의 법 | 2<br>(4.3)   | 13<br>(27.1) | 15<br>(15.8) |
| 사회통합프로그램   | 15<br>(31.9) | 6<br>(12.5)  | 21<br>(22.1) |
|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 16<br>(34)   | 42<br>(87.5) | 58<br>(61.1) |
| 잘 모르겠음     | 17<br>(36.2) | 2<br>(4.2)   | 19<br>(20)   |
| 기타         | 0<br>(0)     | 2<br>(4.2)   | 2<br>(2.1)   |
| 전체         | 47           | 48           | 95           |

다중응답 교차분석 결과, 법교육전문강사의 경우에는 ‘이민자 생활법률특강’(87.5%) 강의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담당자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36.2%)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의안 활용 방법에 대해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법교육전문강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기관담당자의 경우 강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41>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의안 활용 방법 \*단위: 빈도(비율)

|          | 기관           | 강사          | 전체           | $\chi^2$ (p)      |
|----------|--------------|-------------|--------------|-------------------|
| 그대로 사용   | 27<br>(45.8) | 8<br>(14.5) | 35<br>(30.7) | 13.78**<br>(.003) |
| 수정하여 사용  | 31<br>(52.5) | 44<br>(80)  | 75<br>(65.8) |                   |
| 강사 자체 개발 | 1<br>(1.7)   | 2<br>(3.6)  | 3<br>(2.6)   |                   |
| 기타       | 0<br>(0)     | 1<br>(1.8)  | 1<br>(0.9)   |                   |
| 전체       | 59<br>(100)  | 55<br>(100) | 114<br>(100) |                   |

\* p < .05, \*\* p < .01, \*\*\* p < .001

기관담당자의 경우 수정하여 사용해야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52.5%로 가장 높았고, 그대로 사용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5.8%로 그 뒤를 이었다. 강사가 자체적으로 강의안을 개발해야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7%로 가장 적었다. 법교육전문강사의 경우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80%로 가장 높았으며,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14.5%,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1.8%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에 따라서 강의안 활용에 대한 의견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 통계값은 13.78, 유의확률은 .003로써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필요한 학습 자료

### (1) 배부할 필요가 있는 학습 자료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시 배부할 필요가 있는 학습자료를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에게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 배부할 필요가 있는 학습 자료(다중응답) \*단위: 빈도(비율)

|         | 기관           | 강사          | 전체           |
|---------|--------------|-------------|--------------|
| 소책자 교재  | 38<br>(64.4) | 44<br>(80)  | 82<br>(71.9) |
| PPT 출력물 | 19<br>(32.2) | 9<br>(16.4) | 28<br>(24.6) |
| 기타      | 4<br>(6.8)   | 2<br>(3.6)  | 6<br>(5.3)   |
| 전체      | 59           | 55          | 114          |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시 소책자 교재를 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71.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응답 교차분석 결과, 소책자 교재를 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관담당자(64.4%)보다 법교육전문강사(80%)가 더 많았으며, PPT 출력물을 배부해야 한다는 의견은 법교육전문강사(16.4%)보다 기관담당자(32.2%)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제공 언어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학습자료로 제공해야 하는 언어에 대해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 43> 학습자료로 제공해야하는 언어 \*단위: 빈도(비율)

|             | 기관           | 강사           | 전체           | $\chi^2$ (p)   |
|-------------|--------------|--------------|--------------|----------------|
| 한국어         | 9<br>(15.3)  | 14<br>(25.5) | 23<br>(20.2) | 6.45*<br>(.04) |
| 번역본         | 8<br>(13.6)  | 1<br>(1.8)   | 9<br>(7.9)   |                |
| 한국어와 번역본 모두 | 42<br>(71.2) | 40<br>(72.7) | 82<br>(71.9) |                |
| 전체          | 59<br>(100)  | 55<br>(100)  | 114<br>(100) |                |

\*  $p < .05$ , \*\*  $p < .01$ , \*\*\*  $p < .001$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학습자료로 제공해야 하는 언어에 대해 한국어와 번역본 모두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71.9%, 한국어만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0.2%, 번역본만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7.9%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한국어만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법교육전문강사(25.5%)가 기관담당자(15.3%)보다 15.2% 많았다. 이에 반해 번역본만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기관담당자(13.6%)가 법교육전문강사(1.8%)보다

11.8% 많았다. 한국어와 번역본 모두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법교육전문강사(72.7%)가 기관담당자(71.2%)보다 1.5% 많았다.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에 따라서 법교육 학습자료 제공 언어에 대한 의견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  통계값은 6.45, 유의확률은 .04로써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법교육전문강사가 기관담당자보다 한국어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더 긍정적인 경향이, 번역본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더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의 역량과 교육

### 1) 강사의 역량

#### (1) 필요한 강사 역량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 전적으로 동의함 5점)는 <표 44>와 같다.

<표 44> 결혼이주여성 강사에게 필요한 역량

| 항목                              | 집단별 |    |      |       | 전체(N=114) |      |      |      |
|---------------------------------|-----|----|------|-------|-----------|------|------|------|
|                                 | 구분  | N  | M    | SD    | t         | p    | M    | SD   |
| 학습내용<br>전문성(법학)                 | 기관  | 59 | 4.25 | .902  | -.942     | .348 | 4.32 | 0.83 |
|                                 | 강사  | 55 | 4.40 | .735  |           |      |      |      |
| 상호작용촉진능<br>력(소통)                | 기관  | 59 | 4.58 | .649  | -1.545    | .125 | 4.66 | 0.59 |
|                                 | 강사  | 55 | 4.75 | .517  |           |      |      |      |
| 효과적 강의<br>역량(전달력 등)             | 기관  | 59 | 4.53 | .704  | -2.033*   | .040 | 4.64 | 0.63 |
|                                 | 강사  | 55 | 4.76 | .508  |           |      |      |      |
| 수업설계역량                          | 기관  | 59 | 4.25 | .756  | .687      | .494 | 4.20 | 0.84 |
|                                 | 강사  | 55 | 4.15 | .931  |           |      |      |      |
| 다양한 사회적<br>경험(혼인,<br>부동산, 근로 등) | 기관  | 59 | 4.22 | .852  | 1.796     | .075 | 4.06 | 0.98 |
|                                 | 강사  | 55 | 3.89 | 1.083 |           |      |      |      |
| 외국어 능력                          | 기관  | 59 | 3.49 | 1.120 | 1.849     | .067 | 3.32 | 1.07 |
|                                 | 강사  | 55 | 3.13 | .982  |           |      |      |      |
| 다문화사회에<br>대한 이해                 | 기관  | 59 | 4.51 | .817  | -.249     | .804 | 4.53 | 0.79 |
|                                 | 강사  | 55 | 4.55 | .765  |           |      |      |      |
| 이주민에 대한<br>이해                   | 기관  | 59 | 4.51 | .796  | -.936     | .351 | 4.57 | 0.73 |
|                                 | 강사  | 55 | 4.64 | .649  |           |      |      |      |
| 여성(학)에 대한<br>이해                 | 기관  | 59 | 4.15 | .906  | .040      | .969 | 4.15 | 0.95 |
|                                 | 강사  | 55 | 4.15 | 1.008 |           |      |      |      |

\* p < .05, \*\* p < .01, \*\*\* p < .001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에게 필요한 역량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상호작용촉진능력(소통)(M=4.66), 효과적 강의 역량(전달력 등)(M=4.64), 이주민에 대한 이해(M=4.57),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M=4.53), 학습내용 전문성(법학)(M=4.32), 수업설계역량(M=4.20), 여성(학)에 대한 이해(M=4.15), 다양한 사회적 경험(혼인, 부동산, 근로 등)(M=4.06), 외국어 능력(M=3.32)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효과적인 강의 역량(전달력 등)’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다. ‘효과적인 강의 역량’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는 t 통계값이 -2.083, 유의확률은 .04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강의 역량’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의 동의 정도 평균은 4.53, 표준편차는 .704이며,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 평균은 4.76, 표준편차는 .508이다. 즉, ‘효과적인 강의 역량’ 항목은 기관담당자보다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2) 강사 역량 강화 방안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 전적으로 동의함 5점)는 <표 45>와 같다.

<표 45> 이주민 법교육 강사의 역량 강화 방안

| 항목                      | 집단별 |    |      |       |          | 전체(N=114) |      |      |
|-------------------------|-----|----|------|-------|----------|-----------|------|------|
|                         | 구분  | N  | M    | SD    | t        | p         | M    | SD   |
| 강사 선발 기준 강화(시험 실시 등)    | 기관  | 59 | 3.95 | .879  | 3.416*** | .001      | 3.63 | 1.07 |
|                         | 강사  | 55 | 3.29 | 1.149 |          |           |      |      |
| 강사 자격 부여 후 기간별 갱신       | 기관  | 59 | 4.07 | .785  | 1.252    | .213      | 3.96 | 0.91 |
|                         | 강사  | 55 | 3.85 | 1.026 |          |           |      |      |
| 강사 자격 유지 조건으로 보수 교육 의무화 | 기관  | 59 | 4.37 | .740  | .587     | .558      | 4.32 | 0.91 |
|                         | 강사  | 55 | 4.27 | 1.062 |          |           |      |      |

\* p < .05, \*\* p < .01, \*\*\* p < .001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 역량 강화 방안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강사 자격 유지 조건으로 보수 교육 의무화(M=4.32), 강사 자격 부여 후 기간별 갱신(M=3.96), 강사 선발 기준 강화(시험 실시 등)(M=3.63)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강사 선발 기준 강화’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다. ‘강사 선발 기준 강화’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는 t 통계값이 ,3.416 유의확률은 .001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선발 기준 강화’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의 동의 정도 평균은 3.95, 표준편차는 .879이며,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 평균은 3.29, 표준편차는 1.149이다. 즉, ‘강사 선발 기준 강화’ 항목은 법교육전문강사보다 기관담당자의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3) 강사의 다문화역량 강화 방안

이주민 법교육 강사의 다문화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 전적으로 동의함 5점)는 <표 46>과 같다.

<표 46> 이주민 법교육 강사의 다문화역량 강화 방안

| 항목                       | 집단별 |    |      |       |         |      | 전체(N=114) |      |
|--------------------------|-----|----|------|-------|---------|------|-----------|------|
|                          | 구분  | N  | M    | SD    | t       | p    | M         | SD   |
| 강사 교육과정에<br>다문화교육<br>의무화 | 기관  | 59 | 4.46 | .703  | 3.119** | .002 | 4.24      | 0.81 |
|                          | 강사  | 55 | 4.00 | .861  |         |      |           |      |
| 다문화 관련<br>전문가 교육과정<br>이수 | 기관  | 59 | 4.29 | .911  | 2.704** | .008 | 4.06      | 0.95 |
|                          | 강사  | 55 | 3.82 | .945  |         |      |           |      |
| 강사 대상<br>온라인 교육<br>강화    | 기관  | 59 | 3.93 | 1.143 | .111    | .912 | 3.92      | 1.11 |
|                          | 강사  | 55 | 3.91 | 1.076 |         |      |           |      |
| 다문화 관련<br>매뉴얼 제공         | 기관  | 59 | 4.31 | .749  | -1.181  | .240 | 4.39      | 0.76 |
|                          | 강사  | 55 | 4.47 | .766  |         |      |           |      |
| 강사 스스로<br>학습하도록 말끔       | 기관  | 59 | 3.17 | 1.262 | -.394   | .694 | 3.21      | 1.15 |
|                          | 강사  | 55 | 3.25 | 1.022 |         |      |           |      |
| 이주민 접촉<br>경험 증진          | 기관  | 59 | 4.24 | .751  | 2.374*  | .020 | 4.04      | 0.95 |
|                          | 강사  | 55 | 3.82 | 1.090 |         |      |           |      |
| 다른 국가로<br>직접 연수          | 기관  | 59 | 3.29 | 1.287 | .892    | .374 | 3.18      | 1.29 |
|                          | 강사  | 55 | 3.07 | 1.289 |         |      |           |      |

\* p < .05, \*\* p < .01, \*\*\* p < .001

이주민 법교육 강사의 다문화역량 강화 방안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다문화 관련 매뉴얼 제공(M=4.39), 강사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의무화(M=4.24), 다문화 관련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M=4.06), 이주민 접촉 경험 증진(M=4.04), 강사 대상 온라인 교육 강화(M=3.92), 강사 스스로 학습하도록 말끔(M=3.21), 다른 국가로 직접 연수(M=3.18)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법교육 강사의 다문화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강사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의무화, 다문화 관련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 이주민 접촉 경험 증진’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다.

‘강사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의무화’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는 t 통계값이 3.119, 유의확률은 .002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의무화’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의 동의 정도 평균은 4.46, 표준편차는 .703이며,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 평균은 4.00, 표준편차는 .861이다. 즉, ‘강사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의무화’ 항목은 법교육전문강사보다 기관담당자의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 관련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는 t 통계값이 2.704, 유의확률은 .008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관련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의 동의 정도 평균은 4.29, 표준편차는 .911이며,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 평균은 3.82, 표준편차는 .945이다. 즉, ‘다문화 관련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 항목은 법교육전문강사보다 기관담당자의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주민 접촉 경험 증진’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는 t 통계값이 2.374, 유의확률은 .02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접촉 경험 증진’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의 동의 정도 평균은 4.24, 표준편차는 .751이며,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 평균은 3.82, 표준편차는 1.09이다. 즉, ‘이주민 접촉 경험 증진’ 항목은 법교육전문강사보다 기관담당자의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2) 강사 양성과정

### (1) 강사 양성과정의 적절한 교육 시수

이주민 법교육 강사 양성과정 시수에 대해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 강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표 47> 이주민 법교육 강사 대상 적절한 교육 시수  
\*단위: 빈도(비율)

|        | 기관           | 강사           | 전체           | $\chi^2$ (p)     |
|--------|--------------|--------------|--------------|------------------|
| 1~2시간  | 3<br>(5.1)   | 8<br>(14.5)  | 11<br>(9.6)  | 14.10*<br>(.015) |
| 3~4시간  | 11<br>(18.6) | 16<br>(29.1) | 27<br>(23.7) |                  |
| 5~6시간  | 17<br>(28.8) | 13<br>(23.6) | 30<br>(26.3) |                  |
| 7~8시간  | 19<br>(32.2) | 9<br>(16.4)  | 28<br>(24.6) |                  |
| 9시간 이상 | 9<br>(15.3)  | 4<br>(7.3)   | 13<br>(11.4) |                  |
| 기타     | 0<br>(0)     | 5<br>(9.1)   | 5<br>(4.4)   |                  |
| 전체     | 59<br>(100)  | 55<br>(100)  | 114<br>(100) |                  |

\* p < .05, \*\* p < .01, \*\*\* p < .001

기관담당자의 경우에는 이주민 강사를 위한 교육 시수로 7~8시간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2.2%로 가장 많았고, 5~6시간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8.8%, 3~4시간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8.6%, 9시간 이상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5.3%, 1~2시간이 적당하다고 응

답한 사람이 5.1% 순으로 나타났다.

법교육전문강사의 경우에는 3~4시간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9.1%로 가장 많았고, 5~6시간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3.6%, 7~8시간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6.4%, 1~2시간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4.5%, 9시간 이상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7.3%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에 따라서 강사를 위한 교육 시수에 대한 의견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 통계값은 14.10, 유의확률은 .015로써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강사 대상 교육 시수로 1~4시간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기관담당자(23.7%)보다 법교육전문강사(43.6%)가 19.9%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기관담당자보다 강사 스스로가 양성과정 교육시간이 더 적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 (2) 강사 양성과정에 필요한 교육 내용

강사 대상 교육에서 가장 우선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에게 1순위에서 4순위까지 고르도록 하였다. 강사 대상 교육에서 필요한 내용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표 48>과 같다.

<표 48> 강사 교육에 필요한 내용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 내용                        | 기관  |    | 강사  |    | 전체  |    |
|---------------------------|-----|----|-----|----|-----|----|
|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가중합 | 순위 |
|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존중            | 124 | 1  | 90  | 1  | 214 | 1  |
| 이주민과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 110 | 2  | 62  | 2  | 172 | 2  |
| 이주민 법적 분쟁 사례              | 49  | 4  | 59  | 4  | 108 | 3  |
| 이주민관련 판례                  | 54  | 3  | 41  | 7  | 95  | 4  |
| 최신 정책과 개정 법률              | 34  | 7  | 61  | 3  | 95  | 4  |
| 이주민관련 법률                  | 38  | 6  | 57  | 5  | 95  | 4  |
| 기본적인 법학지식                 | 16  | 12 | 10  | 12 | 26  | 12 |
| 다른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 23  | 9  | 34  | 8  | 57  | 8  |
| 다른 국가의 법에 대한 이해           | 18  | 11 | 19  | 10 | 37  | 11 |
| 강사의 인식 개선(이주민에 대한 편견, 차별) | 26  | 8  | 19  | 10 | 45  | 9  |
|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 40  | 5  | 48  | 6  | 88  | 7  |
| 인종주의(레이시즘)                | 1   | 14 | 4   | 15 | 5   | 15 |
| 여성(학)에 대한 이해              | 1   | 14 | 5   | 14 | 6   | 14 |
| 교수학습방법                    | 20  | 10 | 23  | 9  | 43  | 10 |
| 언어습득 과정에 대한 이해            | 6   | 13 | 8   | 13 | 14  | 13 |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1순위, ‘이주민과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이 2순위, ‘이주민 법적 분쟁 사례’가 3순위, ‘이주민관련 판례’, ‘최신 정책과 개정 법률’, ‘이주민관련 법률’이 공동 4순위로 나타났다.

기관담당자는 1~5순위로 꼽았으나, 법교육전문강사는 1~5순위로 꼽지 않은 항목은 ‘이주민관련 판례’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로 나타났다. 법교육전문강사는 1~5순위로 꼽았으나, 기관담당자는 1~5순위로 꼽지 않은 항목은 ‘최신 정책과 개정 법률’과 ‘이주민관련 법률’로 나타났다.



### (3) 강사 양성과정 개선 방안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를 위한 교육의 개선방안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 전적으로 동의함 5점)는 <표 49>와 같다.

<표 49> 강사 교육 개선 방안

| 항목                  | 집단별 |    |      |       |       |      | 전체(N=114) |      |
|---------------------|-----|----|------|-------|-------|------|-----------|------|
|                     | 구분  | N  | M    | SD    | t     | p    | M         | SD   |
| 교육 내용의 질 향상(전문성 제고) | 기관  | 59 | 4.53 | .679  | 1.000 | .319 | 4.46      | 0.77 |
|                     | 강사  | 55 | 4.38 | .850  |       |      |           |      |
| 강사 간 경험 공유 및 토론     | 기관  | 59 | 4.47 | .653  | .949  | .345 | 4.40      | 0.83 |
|                     | 강사  | 55 | 4.33 | .982  |       |      |           |      |
| 교육 시간 늘림            | 기관  | 59 | 3.95 | .879  | 1.766 | .081 | 3.78      | 1.05 |
|                     | 강사  | 55 | 3.60 | 1.196 |       |      |           |      |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를 위한 교육의 개선방안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교육 내용의 질 향상(전문성 제고)(M=4.46), 강사 간 경험 공유 및 토론(M=4.40), 교육 시간 늘림(M=3.78)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를 위한 교육의 개선방안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차이가 있는 항목은 없었다.

## 6.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애로사항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애로사항 여부에 대해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 강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50>과 같다.

<표 50>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애로사항 여부 \*단위: 빈도(비율)

|        | 기관           | 강사           | 전체           | $\chi^2$ (p)   |
|--------|--------------|--------------|--------------|----------------|
| 매우 어려움 | 6<br>(10.2)  | 1<br>(1.8)   | 7<br>(6.1)   | 6.31<br>(.177) |
| 어려움    | 23<br>(39)   | 18<br>(32.7) | 41<br>(36)   |                |
| 보통     | 25<br>(42.4) | 25<br>(45.5) | 50<br>(43.9) |                |
| 별로 없음  | 4<br>(6.8)   | 9<br>(16.4)  | 13<br>(11.4) |                |
| 전혀 없음  | 1<br>(1.7)   | 2<br>(3.6)   | 3<br>(2.6)   |                |
| 전체     | 59<br>(100)  | 55<br>(100)  | 114<br>(100) |                |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애로사항 여부에 대해 어렵다(매우 어려움, 어려움)고 응답한 사람이 40.1%,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3.9%, 없다(별로 없음, 전혀 없음)고 응답한 사람이 14%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에 따라서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애로사항 여부에 대한 의견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 통계값은 6.31, 유의확률은 .177로써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문항에서 어렵다(매우 어려움, 어려움)고 응답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51>과 같다.

<표 51>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 있어서 어려운 점(다중응답)

\*단위: 빈도(비율)

|                     | 기관           | 강사           | 전체           |
|---------------------|--------------|--------------|--------------|
| 결혼이주여성과의 소통의 어려움    | 17<br>(40.5) | 7<br>(20)    | 24<br>(31.2) |
| 수강생간 한국어 실력 격차가 심함  | 22<br>(52.4) | 27<br>(77.1) | 49<br>(63.6) |
| 법교육 내용의 어려움         | 14<br>(33.3) | 4<br>(11.4)  | 18<br>(23.4) |
| 법률 용어의 어려움          | 16<br>(38.1) | 7<br>(20)    | 23<br>(29.9) |
| 수강생의 흥미 부족          | 14<br>(33.3) | 8<br>(22.9)  | 22<br>(28.6) |
| 수강생의 수요 부족으로 개설 어려움 | 17<br>(40.5) | 3<br>(8.6)   | 20<br>(26)   |
| 법교육이 아닌 법률상담 요청     | 6<br>(14.3)  | 6<br>(17.1)  | 12<br>(15.6) |
| 기관의 무관심             | 1<br>(2.4)   | 3<br>(8.6)   | 4<br>(5.2)   |
| 강사의 이민자에 대한 이해 부족   | 4<br>(9.5)   | 0<br>(0)     | 4<br>(5.2)   |
| 기타                  | 2<br>(4.8)   | 2<br>(5.7)   | 4<br>(5.2)   |
| 전체                  | 42           | 35           | 77           |

다중응답 교차분석 결과, 기관담당자의 경우에는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수강생간 한국어 실력 격차가 심함(52.4%), 결혼이주여성과의 소통의 어려움(40.5%), 수강생의 수요 부족으로 개설 어려움(40.5%), 법률 용어의 어려움(38%), 법교육 내용의 어려움(33.3%), 수강생의 흥미 부족(33.3%), 법교육이 아닌 법률상담 요청(14.3%), 강사의 이민자에 대한 이해 부족(9.5%), 기타(4.8%), 기관의 무관심(2.4%) 순으로 나타났다.

법교육전문강사의 경우에는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수강생간 한국어 실력 격차가 심함(77.1%), 수강생의 흥미 부족(22.9%), 결혼이주여성과의 소통의 어려움(20%), 법률 용어의 어려움(20%), 법교육이 아닌 법률상담 요청(17.1%), 법교육 내용의 어려움(11.4%), 수강생의 수요 부족으로 개설 어려움(8.6%), 기관의 무관심(8.6%), 기타(5.7%), 강사의 이민자에 대한 이해 부족(0%) 순으로 나타났다.



## 7.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개선방안

### 1) 분반 방안

분반 개선방안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 전적으로 동의함 5점)는 <표 52>와 같다.

<표 52> 분반 방안

| 항목         | 집단별 |    |      |       |         |      | 전체(N=114) |      |
|------------|-----|----|------|-------|---------|------|-----------|------|
|            | 구분  | N  | M    | SD    | t       | p    | M         | SD   |
| 한국어 실력별 분반 | 기관  | 59 | 4.03 | .982  | -2.246* | .027 | 4.22      | 0.93 |
|            | 강사  | 55 | 4.42 | .832  |         |      |           |      |
| 체류자격별 분반   | 기관  | 59 | 4.03 | .964  | .085    | .932 | 4.03      | 0.98 |
|            | 강사  | 55 | 4.02 | 1.009 |         |      |           |      |
| 출신국가별 분반   | 기관  | 59 | 3.24 | 1.304 | 1.557   | .122 | 3.06      | 1.26 |
|            | 강사  | 55 | 2.87 | 1.187 |         |      |           |      |

\* p < .05, \*\* p < .01, \*\*\* p < .001

분반 개선방안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한국어 실력별 분반(M=4.22), 체류자격별 분반(결혼이주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등)(M=4.03), 출신국가별 분반(M=3.06) 순으로 나타났다.

분반 개선방안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한국어 실력별 분반’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다. ‘한국어 실력별 분반’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는 t 통계값이 -2.246, 유의확률은 .027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실력별 분반’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의 동의 정도 평균은 4.03, 표준편차는 .982이며,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 평균은 4.42, 표준편차는 .832이다. 즉, ‘한국어 실력별 분반’ 항목은 기관담당자보다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참여 증진 방안

결혼이주여성의 참여 증진 방안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 전적으로 동의함 5점)는 <표 53>과 같다.

<표 53>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참여증진 방안

| 항목                                  | 집단별 |    |      |       |        |      | 전체(N=114) |      |
|-------------------------------------|-----|----|------|-------|--------|------|-----------|------|
|                                     | 구분  | N  | M    | SD    | t      | p    | M         | SD   |
| 교육 이수 시<br>체류자격 연장, 귀화<br>심사에 혜택 부여 | 기관  | 59 | 4.05 | 1.105 | -.186  | .853 | 4.07      | 1.14 |
|                                     | 강사  | 55 | 4.09 | 1.191 |        |      |           |      |
| 법교육 이외의<br>다른 교육과 함께<br>프로그램 구성     | 기관  | 59 | 4.00 | 1.083 | -.102  | .919 | 4.01      | 0.95 |
|                                     | 강사  | 55 | 4.02 | .782  |        |      |           |      |
| 한국어교육<br>프로그램 수강 시<br>법교육 의무 수강     | 기관  | 59 | 4.32 | .776  | .213   | .832 | 4.31      | 0.78 |
|                                     | 강사  | 55 | 4.29 | .786  |        |      |           |      |
| 자녀를 위한<br>유아실 마련,<br>돌봄서비스 제공       | 기관  | 59 | 4.14 | 1.058 | -1.477 | .142 | 4.26      | 0.96 |
|                                     | 강사  | 55 | 4.40 | .830  |        |      |           |      |

결혼이주여성의 참여 증진 방안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수강 시 법교육 의무 수강(M=4.31), 자녀를 위한 유아실 마련, 돌봄서비스 제공(M=4.26), 교육 이수 시 체류자격 연장과 귀화 심사에 혜택 부여(M=4.07), 법교육 이외의 다른 교육과 함께 프로그램 구성(M=4.01)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참여 증진 방안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차이가 있는 항목이 없었다.

### 3) 교육복지 사각지대 개선 방안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사각지대 개선방안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 전문강사의 동의 정도(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 전적으로 동의함 5점)는 <표 54>와 같다.

<표 54>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사각지대 개선 방안

| 항목             | 집단별 |    |      |       |           |      | 전체(N=114) |      |
|----------------|-----|----|------|-------|-----------|------|-----------|------|
|                | 구분  | N  | M    | SD    | t         | p    | M         | SD   |
| 찾아가는 법교육       | 기관  | 59 | 4.24 | .971  | -3.661*** | .000 | 4.49      | 0.82 |
|                | 강사  | 55 | 4.76 | .508  |           |      |           |      |
| 온라인 교육의 활용     | 기관  | 59 | 3.29 | 1.130 | .665      | .508 | 3.22      | 1.14 |
|                | 강사  | 55 | 3.15 | 1.161 |           |      |           |      |
| 법교육 책자 개발 및 배포 | 기관  | 59 | 3.90 | 1.029 | .318      | .751 | 3.87      | 1.03 |
|                | 강사  | 55 | 3.84 | 1.050 |           |      |           |      |

\* p < .05, \*\* p < .01, \*\*\* p < .001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사각지대 개선방안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찾아가는 법교육(M=4.49), 법교육 책자 개발 및 배포(M=3.87), 온라인 교육의 활용(M=3.22)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사각지대 개선방안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 전문강사의 동의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찾아가는 법교육’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다. ‘찾아가는 법교육’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는 t 통계값이 -3.661, 유의확률은 .000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법교육’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의 동의 정도 평균은 4.24, 표준편차는 .971이며,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 평균은 4.76, 표준편차는 .508이다. 즉, ‘찾아가는 법교육’ 항목은 기관담당자보다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온라인 법교육

결혼이주여성 온라인 법교육 방안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 전적으로 동의함 5점)는 <표 55>와 같다.

<표 55> 결혼이주여성 온라인 법교육 방안

| 항목                        | 집단별 |    |      |       |       | 전체(N=114) |      |      |
|---------------------------|-----|----|------|-------|-------|-----------|------|------|
|                           | 구분  | N  | M    | SD    | t     | p         | M    | SD   |
| 실시간 온라인 화상 교육             | 기관  | 59 | 3.12 | 1.219 | .123  | .903      | 3.11 | 1.20 |
|                           | 강사  | 55 | 3.09 | 1.191 |       |           |      |      |
| 사전 녹화 인터넷 강의              | 기관  | 59 | 3.19 | 1.196 | .781  | .436      | 3.11 | 1.15 |
|                           | 강사  | 55 | 3.02 | 1.097 |       |           |      |      |
| 만화, 영상물 등 시리즈물 SNS에 배포    | 기관  | 59 | 3.83 | .985  | 1.354 | .178      | 3.70 | 1.06 |
|                           | 강사  | 55 | 3.56 | 1.118 |       |           |      |      |
| 온라인교육 이수 시 인센티브 부여로 참여 증진 | 기관  | 59 | 3.78 | 1.146 | 1.111 | .269      | 3.67 | 1.13 |
|                           | 강사  | 55 | 3.55 | 1.102 |       |           |      |      |

결혼이주여성 온라인 법교육 방안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만화, 영상물 등 시리즈물 SNS에 배포(M=3.70), 온라인 교육 이수 시 인센티브 부여로 참여 증진(M=3.67), 사전 녹화 인터넷 강의(M=3.11), 실시간 온라인 화상 교육(M=3.11)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온라인 법교육 방안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차이가 있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교육 환경 개선 방안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 전적으로 동의함 5점)는 <표 56>과 같다.

<표 56>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환경 개선 방안

| 항목                      | 집단별 |    |      |      |         |      | 전체(N=114) |      |
|-------------------------|-----|----|------|------|---------|------|-----------|------|
|                         | 구분  | N  | M    | SD   | t       | p    | M         | SD   |
| 지역의 협조를 얻어 공공시설을 활용     | 기관  | 59 | 4.14 | .860 | -2.234* | .027 | 4.30      | 0.82 |
|                         | 강사  | 55 | 4.47 | .742 |         |      |           |      |
| 자녀를 위한 유아실 마련, 돌봄서비스 제공 | 기관  | 59 | 4.24 | .935 | -2.042* | .044 | 4.39      | 0.83 |
|                         | 강사  | 55 | 4.55 | .662 |         |      |           |      |
| 멀티미디어 환경 필수적 마련         | 기관  | 59 | 4.36 | .760 | -.055   | .956 | 4.36      | 0.74 |
|                         | 강사  | 55 | 4.36 | .729 |         |      |           |      |
| 국가의 지원으로 교육기관 시설 보완     | 기관  | 59 | 4.15 | .997 | -.896   | .372 | 4.23      | 0.93 |
|                         | 강사  | 55 | 4.31 | .858 |         |      |           |      |
| 학습자료(출력물, 부교재 등)비용 지원   | 기관  | 59 | 4.36 | .760 | 1.221   | .225 | 4.26      | 0.84 |
|                         | 강사  | 55 | 4.16 | .918 |         |      |           |      |

\* p < .05, \*\* p < .01, \*\*\* p < .001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환경 개선 방안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자녀를 위한 유아실 마련과 돌봄서비스 제공(M=4.39), 멀티미디어 환경 필수적 마련(M=4.36), 지역의 협조를 얻어 공공시설을 활용(M=4.30), 학습자료(출력물, 부교재 등)비용 지원(M=4.26), 국가의 지원으로 교육기관 시설 보완(M=4.23)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지역의 협조를 얻어 공공시설을 활용, 자녀를 위한 유아실 마련과 돌봄서비스 제공’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다.

‘지역의 협조를 얻어 공공시설을 활용’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는 t 통계값이 -2.234, 유의확률은 .027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협조를 얻어 공공시설을 활용’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의 동의 정도 평균은 4.14, 표준편차는 .860이며,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 평균은 4.47, 표준편차는 .742이다. 즉, ‘지역의 협조를 얻어 공공시설을 활용’ 항목은 기관담당자보다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를 위한 유아실 마련과 돌봄서비스 제공’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는 t 통계값이 -2.042, 유의확률은 .044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위한 유아실 마련과 돌봄서비스 제공’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의 동의 정도 평균은 4.24, 표준편차는 .935이며,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 평균은 4.55, 표준편차는 .662이다. 즉, ‘자녀를 위한 유아실 마련과 돌봄서비스 제공’ 항목은 기관담당자보다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6) 컨트롤 타워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컨트롤 타워 수립 방안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 전적으로 동의함 5점)는 <표 57>과 같다.

<표 57>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컨트롤타워 수립 방안

| 항목                               | 집단별 |    |      |       |         |      | 전체(N=114) |      |
|----------------------------------|-----|----|------|-------|---------|------|-----------|------|
|                                  | 구분  | N  | M    | SD    | t       | p    | M         | SD   |
| 법무부가 중심 역할                       | 기관  | 59 | 4.17 | 1.053 | 1.489   | .139 | 4.04      | 1.00 |
|                                  | 강사  | 55 | 3.89 | .936  |         |      |           |      |
| 여성가족부가 중심 역할                     | 기관  | 59 | 3.20 | 1.310 | -1.233  | .220 | 3.34      | 1.25 |
|                                  | 강사  | 55 | 3.49 | 1.169 |         |      |           |      |
| 한국법교육센터가 중심 역할                   | 기관  | 59 | 3.58 | 1.276 | -1.995* | .049 | 3.78      | 1.16 |
|                                  | 강사  | 55 | 4.00 | .981  |         |      |           |      |
| 각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개별적으로 필요에 따라 역할 | 기관  | 59 | 3.29 | 1.301 | -1.728  | .087 | 3.46      | 1.15 |
|                                  | 강사  | 55 | 3.65 | .947  |         |      |           |      |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가 중심 역할          | 기관  | 59 | 3.34 | 1.281 | 1.501   | .136 | 3.18      | 1.16 |
|                                  | 강사  | 55 | 3.02 | .991  |         |      |           |      |

\* p < .05, \*\* p < .01, \*\*\* p < .001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컨트롤 타워 수립 방안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법무부가 중심 역할(M=4.04), 한국법교육센터가 중심 역할(M=3.78),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별적으로 필요에 따라 역할(M=3.46), 여성가족부가 중심 역할(M=3.34),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가 중심 역할(M=3.18)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컨트롤 타워 수립 방안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한국법교육센터가 중심 역할’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다. ‘한국법교육센터가 중심 역할’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와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는 t 통계값이 -1.995, 유의확률은 .049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법교육센터가 중심 역할’ 항목에 대한 기관담당자의 동의 정도 평균은 3.58, 표준편차는 .1276이며,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 평균은 4.00, 표준편차는 .981이다. 즉, ‘한국법교육센터가 중심 역할’은 기관담당자보다 법교육전문강사의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V. 논의 및 시사점

### 1.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목표

결혼이주여성 대상 법교육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과 통합이 강조되어야 하고, 나아가 결혼이주‘여성’ 스스로 가족관계나 생활관계에 있어 자주적으로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민주시민성을 함양하고 법률분쟁이나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정상우·최보선, 2014a: 105).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중 동의하는 것(M=4.0이상)으로 나타난 항목은 범죄피해예방(M=4.62), 사회적응(M=4.54), 범죄발생예방(M=4.46), 인권과 기본권의 이해(M=4.45),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 이행(M=4.45), 다문화사회의 갈등 완화(M=4.41), 인권보장과 권익증진(M=4.4), 사회통합(M=4.38), 기초적인 법체계와 법지식의 이해(M=4.37), 한국에서 체류자격 등 법적문제 해결(M=4.3), 민주시민성 함양(M=4.27) 순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모든 항목의 평균이 4.0이상으로 나타났다. 법교육과 인권교육, 헌법교육, 민주시민교육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개별적 교육으로 시행되기보다는 법교육은 인권과 권익 보호의 측면을 강조하고,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며, 민주시민 함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통합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주제와 내용요소 선정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은 한정된 교육시간 내에서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제와 내용요소 위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와 내용요소 중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은 <표 58>과 같이 나타났다.

<표 58>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및 내용요소의 우선순위(종합)

| 주제 순위 |             | 내용요소 순위   |  |                                     |                           |
|-------|-------------|---|--|-------------------------------------|---------------------------|
| 순위    | 주제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 1     | 체류자격 및 이주   | 체류자격(사증: F-6결혼이민, F-2거주, F-5영주자격)                           | 국적취득   | 체류기간과 연장                            | 외국인등록                     |
| 2     | 혼인          | *공동 1위*<br>혼인신고 방법과 효력 (사실혼과 법률혼),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동거, 부양, 협조) |  | 평등한 부부 관계                           | 가정폭력과 대처                  |
| 3     | 자녀          | 출산 관련 지원 정책 (출산 전 지원, 양육 지원 등)                              |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 한국의 교육 정책                           | 자녀의 국적 문제 (혈통주의, 귀화제도)    |
| 4     | 인권과 기본권     | 인권과 기본권의 의미   | 외국인에게 인정되는/인정되기 어려운 기본권                              | 평등권의 이해 (차별 사례, 성차별 등)              | 기본권의 제한과 구제               |
| 5     | 근로          | 근로계약  | 최저임금제도와 휴게시간   | 구직방법 (알선기관)                         | 임금체불 (내용증명, 소송)           |
| 6     | 범죄피해예방      | 명의도용  | 금융사기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 금전거래 (차용증, 연대보증 등)                  | 성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          |
| 7     | 범죄(발생)예방    |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가담)   | 해외 불법 송금 (외국환거래법)                                    | 대포통장                                | 성매매 예방과 대처                |
| 8     | 이혼          | 협의이혼의 의미와 절차  | 이혼 후 자녀 문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 재판상 이혼의 의미와 절차, 재판상 이혼사유            | 이혼 후 재산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
| 8     | 사회보장(지원) 제도 | 사회보험 (4대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원 제도 (생활정보 제공, 한국어 교육, 의료 지원, 다국어 서비스 등)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지원) | 자녀의 학교교육 지원               |
| 10    | 기타 준법생활     | 기초질서 (분리수거, 쓰레기종량제, 무임승차 등)                                 | 준법정신의 중요성  | 교통법규 (교통질서, 뺑소니, 음주운전 등)            | 법의 역할과 필요성                |

|    |            |                 |                               |                               |                                 |
|----|------------|-----------------|-------------------------------|-------------------------------|---------------------------------|
| 11 | 법률구조와 지원   | 법률상담 지원         | 법률구조 방법 (도움을 주는 기관)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 법률상담사례                          |
| 12 | 소비         | 소비와 소비자의 의미     |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인터넷 쇼핑, TV홈쇼핑 등) |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장단점, 결제취소, 분실 등)  | 반품, 환불 조건과 절차                   |
| 13 | 부동산        |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의 의미 | 임대차 절차와 주의점                   | 전세(전세금)와 월세(보증금, 하자보증금)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 14 |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 민주주의            | 선거제도                          | 정치 참여 방법                      | 상권분립                            |
| 15 | 상속         | 상속의 의미와 시기      | 상속순위와 상속분                     | 상속의 승인과 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 상속 절차 (상속 재산 조사,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등) |

<표 58>과 같이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중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는 ‘체류자격 및 이주’가 1순위, ‘혼인’이 2순위, ‘자녀’가 3순위, ‘인권과 기본권’이 4순위, ‘근로’가 5순위로 나타났다. 2순위로 주제로 꼽힌 ‘혼인’과 3순위 주제로 꼽힌 ‘자녀’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5단계인 한국사회이해 교재에서는 상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순위 주제로 꼽힌 ‘인권과 기본권’의 경우에도 우선 순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내용의 분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 있어서 인권교육적 측면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5순위 주제로 꼽힌 ‘근로’ 주제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적용하는 외국인근로자<sup>31)</sup>와 달리 결혼이주여성은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 주제에 대한 법교육 내용에 있어서 대상별로 그 내용이 달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31)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 중 체류자격이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H-2)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직종 선택 및 업종 변경 등에 제한이 있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별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 중에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2순위 주제로 꼽힌 ‘혼인’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 중 평등한 부부 관계가 3순위, 가정폭력과 대처가 4순위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이 가정 내에서 불평등한 처우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혼인’ 주제에서 ‘평등한 부부 관계’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평등한 부부 관계’와 ‘가정폭력과 대처’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꼽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2012)에서는 누락되어있다. 한국법교육센터의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중 혼인 강의안(2016)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교재에서는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다.

3순위 주제인 ‘자녀’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 중 아동학대가 2순위, 자녀의 국적 문제가 4순위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는 ‘이민자 생활법률특강’과 형사정책연구원에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나,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는 누락되어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아동학대가 이슈가 되고 있고,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신고의무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up>32)</sup>. 결혼이주여성에게도 아동학대가 집안 문제가 아닌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법교육에서 아동학대를 다룬다면 결혼이주여성이 아동학대를 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아동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 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자녀의 국적 문제는 우선순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교재에서는 누락되어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도 혈통주의에 대한 설명에 그치고 귀화제도는 다루지 않았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자녀의 국적 문제는 중요한 이슈인 만큼 자녀의 국적 문제도 우

32)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률의 제정과 의무 교육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법률은 1961년부터 시행해오던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위하여 2014년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아동과 신고의무자에게 의무로 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유치원, 학교 등에서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의무로 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해당 교육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포함되어있다.

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4순위 주제인 ‘인권과 기본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 중 평등권이 3순위로 나타났다.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평등권을 다루고 있으며, 한국법교육센터에서는 혼인 주제에서 평등한 부부 관계정도만 다루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차별과 불평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기본권보다 평등권이 중요 우선순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순위 주제인 ‘근로’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 중 구직방법이 3순위, 임금체불이 4순위로 나타났다. 구직방법은 ‘이민자 생활법률특강’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만 다루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교재’에는 근로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PPT 강의안’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하기”라는 한 문장이 제시되어 있고, 해당 슬라이드에 그림과 함께 ‘근로 시간’, ‘임금’, ‘휴일’, ‘휴가’, ‘재해보상’이라는 단어를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다<sup>33)</sup>. 결혼이주여성이 임금체불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많은 만큼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6순위 주제인 ‘범죄피해예방’ 주제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는 정의도용이 1순위, 금융사기 피해예방이 2순위, 금전거래가 3순위, 성폭력이 4순위로 나타났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한국사회이해에서는 차용증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1~4순위의 내용이 누락되어있다. 4순위인 ‘성폭력(성희롱, 성폭력 등)’은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성범죄 관련된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제5차시 취업을 위해 알아두세요!’ 중 소목차인 ‘직장 내 성희롱 대처하기’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제8차시 아름다운 성을 위하여: 성폭력 대처하기’와 ‘제9차시 성매매 예방을

33) 한국사회이해 중 ‘법’ 영역이나 ‘정치’ 영역이 아닌 ‘경제’ 영역에서 ‘취업하기’라는 주제로 1차시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취직의 어려움과 스펙 열풍을 설명한 후 외국인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갖춰야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법무부, 2013: 128)는 문장은 있으나, 어떤 권리와 의식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위하여'에서 각각 한개 차시씩 성폭력과 성매매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국법교육센터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에서는 '근로'주제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다루고, '혼인' 주제에서 가정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성폭력을 다루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여성이라는 점과 이주민이라는 점에서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범죄관련 교육 내용을 통하여 성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7순위 주제인 '범죄(발생)예방'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는 금융사기(가담)가 1순위, 해외 불법 송금이 2순위, 대포통장이 3순위, 성매매가 4순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1순위인 금융사기(가담)과 2순위인 해외 불법 송금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모두 누락되어있다. 3순위인 대포통장은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에서만 다루고 있으며, 4순위인 성매매는 형사정책연구원에서만 다루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성매매는 범죄임과 동시에 인권 침해와 각종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성매매를 방지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공동 8순위 주제인 '사회보장지원제도' 주제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 중 공공부조가 3순위로 나타났다.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지원)'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에는 누락되어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별도의 주제로 다루고 있다. 다른 기관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별도의 주제로 다루는 경우가 많지 않다. '4대보험' 내용은 '근로'관련 주제에서 다루거나, '출산 관련 지원 정책' 내용은 '혼인' 주제에서 다루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다루고 있다. 상순위에 든 '공공부조'는 현재 법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 공공부조에 대해 학습한다면, 결혼이주여성이 이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시부모님이 공공부조 대상이 되는 등의 상황을 겪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10순위 주제인 ‘기타 준법생활’ 주제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 중 기초질서가 1순위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기초법질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11순위 주제인 ‘법률 구조와 지원’ 주제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는 법률상담 지원이 1순위, 법률구조 방법(도움을 주는 기관)이 2순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3순위, 법률상담사례가 4순위로 나타났다. 형사정책연구원의 교재에서는 사례를 많이 다루고 있으나, 다른 기관에서는 실제 사례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이주민의 법률복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책으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이미 시행되어 왔고, 2017년 3월 13일부터는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이주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sup>34)</sup>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은 법률상담과 구분되나, 법률상담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 법률 상담이나 구조에 도움을 주는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sup>35)</sup>, 대한변협인권재단 이주외국인법률지원센터<sup>36)</sup>, 법무부의 외국인 종합안내센터<sup>37)</sup> 등이 있

34) 인터넷 기사 ([https://m.moj.go.kr:442/HP/COM/bbs\\_M/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1&strWrtNo=878&strAnsNo=A&strFilePath=&strRtnURL=MWEB1101010&strOrgGbnCd=104000&strOrgGbnCd\\_Home=104000&strThisPage=1](https://m.moj.go.kr:442/HP/COM/bbs_M/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1&strWrtNo=878&strAnsNo=A&strFilePath=&strRtnURL=MWEB1101010&strOrgGbnCd=104000&strOrgGbnCd_Home=104000&strThisPage=1))

35)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Tel.02-3476-6515)은 다문화가정, 이주외국인 해외로부터 이주한 근로자, 국제법상 난민 등에게 대상으로 인정되면 돈이 없더라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홈페이지 참조: [www.legalaid.or.kr](http://www.legalaid.or.kr)).

36) 대한변협인권재단 이주외국인법률지원센터는 이주민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며, 11개 언어(한국어,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몽골, 우즈벡, 러시아, 태국, 일본, 미국어)를 지원한다(홈페이지 참조: <http://migrantlaw.or.kr/default.asp>).

37)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Tel.1345)를 통해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20개 언어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홈페이지 참조: [http://www.moj.go.kr/HP/MOJ03/moj\\_10/moj\\_1020/moj\\_102130/moj\\_1021301510.jsp](http://www.moj.go.kr/HP/MOJ03/moj_10/moj_1020/moj_102130/moj_1021301510.jsp)).

다<sup>38)</sup>. 도움을 주는 기관을 안내할 때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누리콜센터<sup>39)</sup>, 민간 무료 통역서비스<sup>40)</sup> 등 통역을 지원해주는 기관도 함께 소개해줄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법률상담 사례의 발굴과 더불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면, 결혼이주여성이 법률 분쟁을 겪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12순위 주제인 ‘소비’ 주제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 중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3순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를 제외하고는 다른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카드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신용불량이 될 우려가 있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점, 장단점, 결제 취소 방법, 분실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8) 이 외에도 결혼이주여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주는 기관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이 있다.

39)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Tel.1577-1366)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착단계 및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긴급지원 등의 인권보호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다. 13개 언어(한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라오어,우즈베크어, 네팔어)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참조: <https://www.liveinkorea.kr/>)

40) 실시간 무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산단법인 비비비(BBB)코리아(Tel.1588-5466)는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법인으로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언어(중간참자)문화 NGO이다. 20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폴란드어, 터키어, 스웨덴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인도어(힌디어), 말레이시아어, 스와힐리어)를 4천5백여명의 봉사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bbb 통역’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도 있다(홈페이지 참조: <http://www.bbbkorea.org/>).

### 3.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방법

#### 1) 수업 시수 개선 방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은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서 법교육을 제외하고는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적당한 교육 기간에 대해 정기적 교육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90.4%, 일회성 교육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9.6% 순으로 나타났다(<표 30> 참조). 결혼이주여성의 연간 법교육 수업 시수에 대해 5시간 이상 10시간 이하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2.3%로 가장 많았다. 결혼이주여성이 법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본다면, 정기적으로 연간 2~3회 실시하며, 회당 2~3시간씩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정기적 법교육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에게 비판적 사고와 법적 사고력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주제 선정 방법과 내용요소 구성 방법

현재 진행되는 이주민 법교육은 다양한 이주민이 함께 강의를 듣는 경우도 있고, 이주민 유형별로 원하는 강의 주제가 다른 경우에도 이주민의 수요가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의 주제를 선택하는 방법은 수요기관에서 선택(48.2%), 기관과 강사 협의(43%), 수강생이 선택(30.7%), 교재에 제시된 주제 선택(7%), 기타(2.6%) 순으로 나타났다(<표 33> 참조).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의안 내용 구성 방법에 대해 수강생 수요조사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한다(혹은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7.4%, 기관에서 요청한 내용으로 구성한다(혹은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1.1%, 강사

의 경험과 판단으로 구성된 내용으로 구성한다(혹은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9.3%, 교재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한다(혹은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0.5%, 기타 1.8% 순으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결혼이주여성은 지원정책 수요대상자로 중앙,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정책 서비스의 직접적인 이용자이다(김규식·소진광, 2016: 210).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내용 선정에 있어서 사전에 학습자의 수요를 조사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 3)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개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은 주로 강의식이 대부분이다.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의 경우에는 체험관<sup>41)</sup>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박순덕·민기연·이영선(2015: 32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수학습방법으로 다문화교육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 스팀(steam)교육, 역할놀이, 협동학습, 비판적 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 사회적 행동기술 학습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의하는 것(M=4.0이상)으로 나타난 항목은 시각적인 교육 자료 활용(그림, 영상 등)(M=4.70), 사례형 법교육(판례 등)(M=4.35), ‘상담식 법교육’(M=4.08),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법교육’(M=4.02), 순으로 나타났다(<표 37> 참조).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실력을 고려했을 때 시각적인 교육 자료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면 법교육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다만, 동영상의 경우에는 말의 속도가 빠르거나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영상은 피하는 것이 좋다. 법교육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

41) 자세한 내용은 각주 18 참조(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edu.klac.or.kr/>)

동영상의 내용 자체를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 있어서 판례 등 사례형으로 제시한다면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실제 사례를 접할 수 있으므로 결혼이주여성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 관련 법률분쟁 사례 혹은 판례를 제시하기 위해서 대한변호사협회(2015)의 「다문화가정 법률상담사례집」, 대한변협인권재단(2013)에서 발간한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등 기존의 사례집 등을 활용할 수 있다<sup>42)</sup>. 기존에 발간된 사례집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상담식 법교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교육과 법률 상담은 구분되는 것이나, 법적 취약 계층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법교육에 있어서 법률 상담과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단, 상담식 법교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 등의 자격이 요구된다. 스토리텔링 법교육은 유아 대상 교수학습방법을 참고하여 한국어가 어려운 결혼이주여성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 4) 교육 자료 개선 방안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시 소책자 교재를 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71.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2> 참조).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학습자료로 제공해야 하는 언어에 대해 한국어와 번역본 모두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71.9%, 한국어만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0.2%, 번역본만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7.9% 순으로 나타났다(<표 43> 참조).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실력을

42) 이 외에도 최신 자료는 아니지만, 이주민을 위한 안내서는 여성가족부(2013)의 「한국생활가이드북 외국인 다문화가족 생활안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12)의 「이주여성을 위한 위기대응 노트」,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10)의 「외국인을 위한 생활안내 한국생활 가이드북」, 법무부(2006)의 「결혼이민자를 위한 종합안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05)의 「문답으로 풀어보는 한국생활법률 정보 이주여성용」 등이 있다.

고려한다면 PPT 강의안 뿐만 아니라 교재 등의 학습자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법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더라도 법교육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신국의 언어로 번역된 학습자료를 제공한다면 결혼이주여성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번역본을 제공한다면 어려울 수 있는 법교육 내용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교재 개발에 있어서 이주민 유형별로 필요한 내용이 다르므로 이주민의 특성이 고려된 법교육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교재 개발에 있어서 기존의 교재 분석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교과서 분석 연구는 내러티브 분석과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교과서 분석과 텍스트 구조에 대한 정량적 분석 방법을 활용한 교과서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송성민, 2013: 102).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재 분석 및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4.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전문 강사의 역량 및 교육**

##### **1)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에게 필요한 역량**

현재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의 자격 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한국법교육센터의 경우에는 법교육전문강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소속 직원 혹은 변호사 등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에게 필요한 역량 중 동의하는 것(M=4.0이상)으로 나타난 항목은 상호작용촉진능력(소통)(M=4.66), 효과적 강의 역량(전달력 등)(M=4.64), 이주민에 대한 이해(M=4.57),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M=4.53), 학습내용 전문성(법학)(M=4.32), 수업설계역량(M=4.20), 여성(학)에 대한 이해(M=4.15), 다



양한 사회적 경험(혼인, 부동산, 근로 등)(M=4.06) 순으로 나타났다(<표 44> 참조). 강사의 역량 중에서 소통 능력이 가장 높은 동의를 얻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어려운 이유가 결혼이주여성과 소통의 어려움(31.2%)이라는 것(<표 51> 참조)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학 전문성보다 소통능력, 전달력,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학 전공자는 다문화교육을 별도로 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이주민과의 접촉 경험이 적은 경우가 다수이다<sup>43)</sup>. 다문화감수성<sup>44)</sup>과 다문화역량<sup>45)</sup>이 부족한 법교육 강사들은 그들의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인식하기도 한다<sup>46)</sup>.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와 권익 보장의 측면에서 법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강사에게 다문화역량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43) 그러나 법학 전공자가 아닌 강사의 경우에 법학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수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법학교육이 필요하다.

44) 다문화감수성은 자신의 문화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능력으로 타문화와 그 문화의 사람들에 대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방적인 태도는 책을 읽고 암기하여 생기는 지식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의 고정관념을 돌이켜 봄으로 생기는 깨달음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감수성은 다문화적 상황에 노출되는 경험과 관련된 체험활동 등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발달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2014: 104-105).

45) 현재 다문화역량에 대한 개념과 그 구성요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다(김영순, 2010: 45). Bennett(2007)에 따르면 다문화역량은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능력을 말한다. 다문화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소에 대한 범주화 또한 학문 분야 혹은 학자마다 다양하며, 대부분 다문화역량의 하위 요소로 다문화 인식·다문화 지식, 다문화 기능을 꼽는다(박선미·최정호·정이화, 2012: 50-54).

46) 본 연구자가 법무부와 한국법교육센터가 주관하는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워크숍'에서 법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질의·응답 시간에 느낀 바이다. 이러한 강사들은 이주민이 법교육 내용을 악용하는 사례(예를 들어 이혼에 대한 교육을 받고, 위자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혼하려고 하는 결혼이주여성 사례)를 접하고 이주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악용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교육내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 2)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의 다문화역량 강화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표 44> 참조),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는 무엇보다도 다문화역량이 중요하며, 다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표 46> 참조), 이주민 법교육 강사의 다문화역량 강화 방안 중 동의하는 것(M=4.0이상)으로 나타난 항목은 다문화 관련 매뉴얼 제공(M=4.39), 강사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의무화(M=4.24), 다문화 관련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M=4.06), 이주민 접촉 경험 증진(M=4.04) 순이다. 다문화 관련 매뉴얼 제공이 가장 높은 동의를 얻은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강사를 위한 다문화 관련 매뉴얼은 구비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에 대한 개발과 배포가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강사를 위한 다문화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한다면 강사에게 이주민 관련 이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이주민 관련 법률 등의 전문 지식의 전달 기능도 있을 것이다. 다문화관련 매뉴얼에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국가별 이주민에 대한 이해, 이주민 법교육의 주요 사항, 이주민 법교육 주제별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요소, 이주민 대상 강의 시 유의할 사항, 이주민 법교육 강의 시 필요한 사항, 이주민 관련 법령, 이주민 관련 법률 상담 사례, 분쟁 사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3)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 양성과정 개선방안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이주민 강사를 위한 교육 시수로 5~6시간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6.3%로 가장 많았다(<표 47> 참조). 이주민 법교육 강사를 위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연간 5~6시간씩 이수하게 한다면,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강사 대상 교육에서 가장 우선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1순위, '이주민과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이 2순위, '이주민 법적 분쟁 사례'가 3순위, '이주민관련 판례', '최신 정책과 개정 법률', '이주민관련 법률'이 공동 4순위로 나타났다(<표 48> 참조). 이주민 법교육 강사에게 이주민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를 위한 교육의 개선방안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교육 내용의 질 향상(전문성 제고)(M=4.46)으로 나타났다(<표 49> 참조). 강사 대상 교육 내용에서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에 대해서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룬다면, 강사 대상 교육 내용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강사의 다문화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5.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운영 체계 개선

### 1) 한국어 실력을 고려한 분반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다른 이주민과 함께 수강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의 경우에도 한국어 실력이 차이가 많이 나는 학습자들이 함께 수강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습 이해도 차이가 크다. 또한 출신국가별로 법문화의 차이와 이해도가 다르기도 하므로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여 결혼이주여성이 법교육을 어렵게 느낀다는 의견(기관담당자 84.6%, 법교육전문강사 94.9%)이 가장 많았다(<표 50> 참조). 더불어 분반 개선방안 중 동의하는 것(M=4.0이상)으로 나타난 항목은 한국어 실력별 분반(M=4.22), 체류자격별 분반(결혼이주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등)(M=4.03) 순이다(<표 52> 참조). 통역사가 있거나, 번역된 학습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학습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여건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한국어 실력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에 법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교육의 효과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다.

## 2) 참여증진 방안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참여 증진 방안 중 동의하는 것(M=4.0이상)으로 나타난 항목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수강 시 법교육 의무 수강(M=4.31), 자녀를 위한 유아실 마련과 돌봄서비스 제공(M=4.26), 교육 이수 시 체류자격 연장과 귀화 심사에 혜택 부여(M=4.07), 법교육 이외의 다른 교육과 함께 프로그램 구성(M=4.01) 순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환경 개선 방안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자녀를 위한 유아실 마련과 돌봄서비스 제공(M=4.39)으로 나타났다(<표 53> 참조). 자녀를 위한 돌봄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외에는 대부분 제공되지 않으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많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자녀가 어린 경우에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결혼이주여성이 법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참여하더라도 아이와 강의실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수강생이 불편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참여 증진을 위해서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더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교육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3) 교육복지 사각지대 개선 방안

현재 진행되는 이주민 법교육의 방식은 주로 집합교육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결혼이민자 교육지원 현황을 분석한 이재분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들은 생업 종사, 임신과 출산, 육아 문제, 수

시 등록에 따른 진도 차질 발생, 교육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지원의 어려움 등으로 오프라인 중심의 집합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결혼이주여성법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사각지대 개선방안 중 동의하는 것(M=4.0이상)으로 나타난 항목은 찾아가는 법교육(M=4.49)이다(<표 54> 참조). 법교육 책자 개발 및 배포(M=3.87)와 온라인 교육의 활용(M=3.22)은 상대적으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온라인 교육은 인터넷 환경의 구비,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 욕구,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실력 등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론 한국어 실력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교육에 비하여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므로 면대면 방식의 집합교육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복지의 사각지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 4) 컨트롤타워의 수립

이민 정책에 있어서 이민청의 설립 등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컨트롤 타워 수립 방안 중 동의하는 것(M=4.0이상)으로 나타난 항목은 법무부가 중심 역할(M=4.04)로 나타났다(<표 57> 참조). 부처별로 소관 법을 따로 운영·집행하는 정책은 개선을 요구한다. 큰 틀에서 이민정책의 가치와 목표를 상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다시 부처의 입장이나 이해관계에 몰입하게 된다. 부처의 관점에서 집중하게 되는 법제 및 행정구조는 더 이상 효율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김태환, 2017: 130)는 지적이 있다. 한국의 이민정책을 근본으로부터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시스템의 정비, 특히 정책을 책임지고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가칭 ‘이민·다

문화 사회통합부(청)’와 같은 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김태환, 2015). 이민 정책뿐만 아니라 이주민 법교육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조가 이루어져야하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법무부 등 특정 기관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전반적인 관리 및 지향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민 법교육 전문기관이 설치되어 다양한 법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배포, 강사를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한다면 체계적인 이주민 법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 Ⅵ. 결론

결혼이주여성은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주배경을 가진 점과 여성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과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 대상 교육 중에서 법교육에 주목하였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효과적인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강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사양성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내용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 강사 측면에 있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중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는 ‘체류자격 및 이주’가 1순위, ‘혼인’이 2순위, ‘자녀’가 3순위, ‘인권과 기본권’이 4순위, ‘근로’가 5순위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운영은 정기적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교육 내용 구성 방법에 대해 수강생 수요조사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있거나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결혼이주여성에게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으로는 ‘시각적인 교육 자료 활용(그림, 영상 등)’, ‘사례형 법교육(판례 등)’, ‘상담식 법교육’,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법교육’으로 나타났다. 교육 자료에 있어서는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을 진행할 때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셋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상호작용촉진능력(소통), 효과적 강의 역량(전달력 등), 이주민에 대한 이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학습내용

전문성(법학), 수업설계역량), 여성(학)에 대한 이해, 다양한 사회적 경험(혼인, 부동산, 근로 등)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 역량 강화 방안은 강사 자격 유지 조건으로 보수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법교육 강사의 다문화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다문화 관련 매뉴얼 제공 강사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의무화, 다문화 관련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 이주민 접촉 경험 증진으로 나타났다. 강사 대상 교육에서 가장 우선해서 필요한 내용은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1순위, ‘이주민과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이 2순위, ‘이주민 법적 분쟁 사례’가 3순위, ‘이주민관련 판례’, ‘최신 정책과 개정 법률’, ‘이주민관련 법률’이 공동 4순위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를 위한 교육의 개선방안으로는 교육 내용의 질 향상(전문성 제고), 강사 간 경험 공유 및 토론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참여 증진 방안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수강 시 법교육 의무 수강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사각지대 개선방안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찾아가는 법교육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이주여성 온라인 법교육은 동의 정도가 다소 낮게(M=4.0미만)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환경 개선 방안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자녀를 위한 유아실 마련과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컨트롤 타워 수립 방안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법무부가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은 목적과 주제, 내용요소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 대상 법교육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과 통합이 강조되어야 하고, 나아가 결혼이주‘여성’ 스스로 가족관계나 생활관계에 있어 자주적으로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민주시민성을 함양하고 법률분쟁이나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법교육과 인권교육, 헌법교육, 민주시

민교육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개별적 교육으로 시행되기보다는 법교육은 인권과 권익 보호의 측면을 강조하고,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며, 민주시민 함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통합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체계적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주제와 내용요소 선정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의 수요를 고려해야 하며, 한정된 시수 안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먼저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한국어 실력을 고려하여 번역본을 제공한다면 법교육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이해를 돕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법적인 문제들을 사례형으로 알려준다면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은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교육의 참여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의 다문화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강사에게 다문화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고, 강사양성과정에서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예정(2014), “웃음치료 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 무작위 대조군 실험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곽한영(2006), “한국 법교육의 현황과 전망”, 『법교육연구』, 제1권 제1호, pp.117-130.
- 곽한영(2012), “시민법교육(PLE)의 의미와 접근방식에 관한 고찰”, 『법교육연구』, 제7권 제2호, pp.1-27.
- 국가인권위원회(2004), 『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김규식·소진광(2016), “여성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정착화 과정 연구 - 정착 지원서비스 수요와 공급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8권 제3호, pp.205-238.
- 김다현(2011), “다문화교육과 헌법교육”, 『법교육연구』, 제6권 제1호, pp.33-53.
- 김미원(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가족의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대학원.
- 김민수·이현지(2017),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56권 pp.225-250.
- 김범구(2010), “이주민 대상 법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16권 제3호, pp.115-137.
- 김상찬·김유정(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 43, pp.319-344.

- 김선택(2010), “다문화사회와 헌법”,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pp.1-41.
- 김순옥·임현숙·정구철(2013),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 가족 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221-235.
- 김영순(2010), “다문화사회와 시민교육 : 다문화역량을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제18호, pp.33-59.
- 김지영·최훈석(2011),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태환(2015), 『다문화사회와 한국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 김태환(2017), “한국 이민정책의 통합적 작동을 위한 조건탐색”, 『국정관리연구』, Vol.12 No.1, pp. 127-161.
- 김현숙·김옥녀(2017), “한국인의 배타적 태도에 대한 이주민 반응에 관한 연구 :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다문화사회연구』, 10(2), pp.145-191.
- 김현철(2009), “헌법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법교육연구』, 제4권 제1호, pp.89-101.
- 김혜림·김재남(2017),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고찰”, 『법률실무연구』, Vol.5 No.2, pp.81-112.
- 나달숙(2010), “체류 외국인의 실태와 여성이주자의 법적 보호 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제3권 제1호, pp.1-21.
- 나달숙(2012), “다문화 법인권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방향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5권 제2호, pp.17-41.
- 나달숙(2014), “다문화 인권교육의 이해와 실천 방향”, 『법과인권교육연구』, 제7권 제2호, pp.31-45.
- 노호창(2017), “이주여성과 사회보장법제”,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2호, pp. 159-214.

- 두문영·조진경(2017), “중국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관한 생애사 연구”, 『여성학연구』, Vol.27 No.1, pp.109-141.
- 모경환·안성훈·우희숙(2012), “결혼이주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44권 제2호, pp.29-63.
- 문형진(2008), “한국내 조선족 노동자들의 갈등사례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2(1), pp.131-156.
- 박상준(2009), “다문화사회에서 법교육의 방향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2권 제2호, pp.1-22.
- 박상준(2010), “다문화시민성의 육성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방안 -이주민의 인권 측면에서-”, 『법과인권교육연구』, 제5권 제2호, pp.43-66.
- 박선미·최정호·정이화(2012), “다문화역량의 구성 요소 중 ‘다문화 인식’의 개념적 모호성에 대한 소고”, 『다문화교육』, 제3권 제1호, pp.47-67.
- 박성혁(1998), “사회과교육에서의 법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사회와교육』, 제26집, pp.57-70.
- 박성혁(2006), “법교육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발전 방향”, 『법교육연구』, 제1권 1호, pp.53-71.
- 박성혁(2008), “한국의 법문화에 적합한 법교육 학습경험 개발 기초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40권 제2호, pp.75-99.
- 박성혁·옹진환(2007), “참여형 법교육의 정당화 근거”, 『시민교육연구』, Vol.39 No.4, pp.47-66.
- 박순덕·민기연·이영선(2015), “초등학교 다문화교육의 실행과 과제-경기도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초등교육』, 제26권 제2호, pp.315-335.
- 박준성·허성호·전미연·정태연(2015), “남한에서 조선족 직장여성의 문화

-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1), pp.21-43.
- 배경희(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Vol.41, pp.33-54.
- 법무부(2008), 『사회통합이수제 설명자료』, 법무부.
- 법무부(2013),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사회이해』, 법무부.
- 법무부(2017),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법무부.
- 법무부(2018),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법무부.
- 소은선(2011), “제한 외국인의 범죄 실태 분석 및 외국인 법교육 프로그램의 탐색”, 『법교육연구』, 제6권 제2호, pp.85-111.
- 송민애(2008), “다문화사회에서 이주여성의 몸 경험 : 유목적 체현을 위한 목회상담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성민(2013), “사회과 교과서의 텍스트 구조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정량적 분석 방법의 제안-”, 『시민교육연구』, 제45권 제4호, pp.101-137.
- 양순미(2010),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사회참여활동 태도가 미치는 효과”, 『농촌사회』, 20(1), pp.233-263.
- 여성가족부(2009), 『2010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3),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5),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여성가족부.
- 오승호(2011a), “다문화 사회의 헌법교육 모색 -헌법 애국주의 관점에서-”, 『법교육연구』, 제6권 제1호, pp.77-111.

- 오승호(2011b), “사회과 법교육에서 인권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한, 미 법교육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제6권 제2호, pp.113-141.
- 오영훈(2009), “다문화교육으로서 상호문화교육”, 『교육문화연구』, 제15권 제2호, pp.27-44.
- 오옥선·김성봉(2012),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경험 들여다보기”,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제18권 제2호, pp.235-260.
- 윤향희(2017), “한·베 가정 내 베트남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역할이 모국송금에 미치는 영향 : 대전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 25, pp.77-101.
- 윤희숙(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엄 발표문』.
- 이대성(2008), “중등학교에서 법과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과 인권교육연구』, 제1권, pp.71-90.
- 이상노·이현심(2014),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9권, pp.105-136.
- 이승우(2007), “이주여성의 혼인과 법률문제”, 『한국동북아논총』, 제12권 제3호, pp.251-271.
- 이승익(2010), “혼인한 이주여성의 법적지위 및 법률구조”, 『형평과정의』, 제25집.
- 이은주·전미경(2014),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경험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2권 제5호, pp.63-86.
- 이재분 외(2009), 『학교에서의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실태 및 요구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이정우(2007),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 성과와 과제”, 『법교육연구』, 제2권 제1호, pp.65-92.
- 이한우·송형철(2015),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영컨설팅리뷰』, 제6권 제2호, pp.35-59.
- 이형하(2014), “한국인의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관계”,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Vol.19 No.11, pp.193-202.
- 이혜경·전혜인(2013),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8권 제4호, pp.413-432.
- 이홍우(2015), “서울가정법원 공동세미나 [다문화가족의 인권 현황과 새로운 법적 쟁점],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서 필요한 법적 보호-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 이화숙(2013), “다문화 시대 소수자의 ‘명칭’ 연구 - 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 집단의 ‘명칭’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45권, pp.247-272.
- 장미·전종설(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 『가족과 문화』, Vol.25 No.4, pp.182-213.
- 장혜진(2010),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와 국적 취득 -문제의 제기”, 『대구지방변호사회지 형평과정의』, 제25집, pp.
- 전숙자·박은아·최윤정(2009),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이해』, 서울: 그린.
- 전제철(2010), “다문화 법교육의 가능성 탐색”, 『법교육연구』, 제5권 제1호, pp.209-233.
- 정상우·최보선(2013),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헌법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 『법교육연구』, 제8권 제3호, pp.115-141.

- 정상우·최보선(2014a),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과 인권교육연구』, 제7권 제3호, pp.101-124.
- 정상우·최보선(2014b), “5장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헌법교육”, 『다문화교육총서1: 다문화교육연구의 이론과 적용』, 한국학술정보, pp.96-119.
- 정연식·황영주(2004), “사회주의 혁명과 여성 지위 변화 : 베트남 사례”, 『21세기정치학회보』, 14(2), pp.189-210.
- 정종섭(2016), 『헌법학원론』, 박영사.
- 정혜영·김진우(2010),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62권 제2호, pp.29-55.
- 최금해(2010), “고학력 조선족 국제결혼 여성들의 한국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재외한인연구』, 제22호, pp.139-173.
- 최미경(2014), “베트남 해체가족 이주여성의 홀로서기 과정에 관한 경험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45권, pp.199-227.
- 최보선(2013),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법교육 교재 개선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상덕·서영인·황은희·최영섭·장상현·김영철(2013),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I)(연구보고 RR 2013-2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3.
- 최영신·최민영·강성의·강혜숙·한일남·이유나·김미선·김선영(2011),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III)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 『2018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2014), 『다문화교육 용어사전』, 교육과학사.

한국사회과 교육연구회(2011),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이담북스.

한수연·설염추·성춘향·박용한(201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스트레스,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교육방법연구』, Vol.29 No.1, pp.1-23

허종렬(2009),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 『법과인권교육연구』, 제2권 제1호, pp.73-91.

황갑진(2015), “한국 다문화사회의 특성과 사회적 갈등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차별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제22권 제3호, pp.13-29.

## 2. 외국 문헌

Bennett, C. I.(2007).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김옥순 외 역(2009).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학지사.

Berry, J. W(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29.

Campbell, D. E.(2009). *Choosing Democracy -A Practical Guide to Mulicultural Education- (4th, Paperback)*, 김영순·오영훈·이미정·한광훈·김성영·박순덕·정소민·강현민·최보선·김민주 역(2012). 민주주의와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 교육과학사.

Fugita, S. S. and O'Brien, D. J(1985). *Structural Assimilation*,



Ethnic Group Membership, and Political.

- Hovey, J. D., Magana, C. G.(2002).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ressions of anxiety symptomatology among Mexican migrant farmworkers: Predictors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Vol. 38(3).
- Mohr. G.(2003). “법문화의 개념 - 몇 가지 시험적 고찰들”, 『철학연구』, Vol.26 No.-, pp.107-122.
- Murphy, H. B. M(1997). “Migration, Culture and Mental Health”, *Psychological Medicine*, Vol. 7(4).
- Nwadiora, E., & McAdoo, H. (1996). “Acculturative stress among American refugees: Gender and racial differences.”, *Adolescence*, Vol. 31(122).
- Singhammer, J. and Bancila, D(2011). “Associations Between Stressful Events and Self-Reports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Non-Western Immigrants in Denmark, *Immigrants Minority Health*, Vol. 3(2).
- Singhammer, J. and Bancila, D(2011). “Associations Between Stressful Events and Self-Reports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Non-Western Immigrants in Denmark, *Immigrants Minority Health*, Vol. 3(2).

### 3. 인터넷 사이트

- 공공서비스 ‘생활플러스’ 홈페이지 참조 <http://life.korea.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http://www.fs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 법문화교육센터 <http://www.klacedu.or.kr/>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온라인 강의  
<https://www.youtube.com/channel/UCO9N2CfnBmFO0a-ID1C1QvQ>
- 서울 이주여성 상담센터 <http://www.wmigrant.org/>
- 임상법학교육센터 <http://cms.ewha.ac.kr/>



<부록 1>

##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추출 과정

<표 59> 현재 개발되어있는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 구분  | No. | 주제                    |                  |
|---|-----|-----------------------|------------------|
|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을 위한 한국사회이해 <sup>47)</sup> (법무부) | 1   | 제20과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 |                  |
|   | 2   | 제21과 한국의 정치제도         |                  |
|   | 3   | 정<br>치                | 제22과 한국의 정부형태    |
|   | 4   |                       | 제23과 한국의 정치과정    |
|   | 5   | 제24과 한국의 국제관계         |                  |
|   | 6   | 법                     | 제30과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   | 7   |                       | 제31과 대한민국 국민 되기  |
|   | 8   | 제32과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   | 9   | 제33과 한국의 법집행 및 분쟁해결   |                  |
|   | 10  | 제34과 한국의 생활법률         |                  |
|   | 11  | 제35과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와 보호 |                  |
|   | 12  | 제36과 준법의 중요성          |                  |
|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한국법교육센터)                            | 1   | 한국의 생활법률(범죄예방)        |                  |
|   | 2   | 우리 결혼했어요(혼인)          |                  |
|   | 3   | 한국에서 일해요(근로)          |                  |
|   | 4   | 한국의 부동산 거래(부동산)       |                  |
|   | 5   | 우리의 소비생활(소비)          |                  |
|   | 6   | 금융사기, 조심하세요(금융사기예방)   |                  |
| Fun Fun 대한민국의 법 (한국법교육센터)                       | 1   | 1장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                  |
|   | 2   | 2장 대한민국에서의 경제생활       |                  |
|   | 3   | 3장 한국에서 살자!           |                  |
|   | 4   | 4장 한국의 생활 지원과 기초질서    |                  |

|  |    |                             |
|--|----|-----------------------------|
| 다문화가족<br>법문화교육<br>(대한법률구조공단<br>법문화교육센터) <sup>48)</sup> | 1  | 가족법                         |
|  | 2  | 근로소비생활                      |
|  | 3  | 국적취득                        |
|  | 4  | 기초질서                        |
|  | 5  | 기본법질서                       |
|  | 6  | 임대차                         |
|  | 7  | 사회보장법                       |
|  | 8  | 신용카드 따라잡기                   |
|  | 9  | 기본권                         |
|  | 10 | 형법·민법의 기본원칙                 |
|  | 11 | 분쟁예방을 위한 증거 만들기             |
| 완·소·법 법교육<br>시리즈 6:<br>결혼이주여성<br>위한 법교육<br>(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  | 프로그램 소개                     |
|  | 2  | 인간으로서의 권리-인권과 기본권-          |
|  | 3  | 결혼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              |
|  | 4  | 이혼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              |
|  | 5  | 취업을 위해 알아두세요!               |
|  | 6  |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가정폭력 들여다보기-     |
|  | 7  |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가정폭력에 대처하기-     |
|  | 8  | 아름다운 성을 위하여-성폭력 대처하기-       |
|  | 9  | 성매매 예방을 위하여                 |
|  | 10 |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기타 법률문제와 지원제도- |

<표 59>에 나타난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주제를 <표 60>과 같이 분류하고,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총 15개 주제를 제시하였다(<부록 3> 참조).

47) 정규과정 중 기본 과정

48) 법교육 과목

<표 60>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 추출과정

| No | 주제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사회이해 (법무부) | 이민자 생활법률 특강 (한국법교육센터) | Fun Fun 대한민국의 법 (한국법교육센터) |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 완·소·법 법교육 시리즈 6: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합계 |
|----|-------------|---------------------------------|-----------------------|---------------------------|--------------------------------|---|----|
| 1  | 체류자격 및 이주   | ●                               |                       | ●                         | ●                              | ●   | 4  |
| 2  | 인권과 기본권     | ●                               |                       |                           | ●                              | ●   | 3  |
| 3  |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 ●                               |                       |                           |                                |   | 1  |
| 4  | 혼인          | ●                               | ●                     | ●                         | ●                              | ●   | 5  |
| 5  | 자녀          | ●                               | ●                     | ●                         |                                | ●   | 4  |
| 6  | 이혼          | ●                               | ●                     | ●                         |                                | ●   | 4  |
| 7  | 상속          |                                 |                       | ●                         | ●                              | ●   | 3  |
| 8  | 근로          | ●                               | ●                     | ●                         | ●                              | ●   | 5  |
| 9  | 소비          | ●                               | ●                     | ●                         | ●                              |   | 4  |
| 10 | 부동산         | ●                               | ●                     | ●                         | ●                              | ●   | 5  |
| 11 | 범죄(발생)예방    | ●                               | ●                     |                           | ●                              | ●   | 4  |
| 12 | 범죄피해예방      | ●                               | ●                     |                           | ●                              | ●   | 4  |
| 13 | 기타 준법생활     | ●                               | ●                     | ●                         | ●                              |   | 4  |
| 14 | 법률구조와 지원    | ●                               | ●                     | ●                         | ●                              | ●   | 5  |
| 15 | 사회보장(지원) 제도 | ●                               |                       | ●                         | ●                              | ●   | 4  |

<부록 2>

#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내용요소 추출 과정

<표 61> 내용요소 핵심어 추출 과정

| No | 주제            | 내용요소                                | 사회통합<br>프로그램<br>중 법교육 | 이민자<br>생활<br>특강 | Fun Fun<br>대한민국<br>의 법 | 결혼이주<br>여성<br>위한<br>법교육 | 합계 |
|----|---------------|-------------------------------------|-----------------------|-----------------|------------------------|-------------------------|----|
|    |               |                                     | (법무부)                 | (한국법교<br>육센터)   | (한국법교<br>육센터)          | (한국형사<br>정책연구<br>원)     |    |
| 1  | 체류자격<br>및 이주  | 외국인 등록                              | ●                     |                 | ●                      | ●                       | 3  |
|    |               | 체류자격(사증:F-6결혼이민,<br>F-2거주, F-5영주자격) | ●                     |                 |                        | ●                       | 2  |
|    |               | 체류기간과 연장                            | ●                     |                 | ●                      | ●                       | 3  |
|    |               | 불법체류, 강제퇴거,<br>출국권고, 출국명령           |                       |                 |                        | ●                       | 1  |
|    |               | 체류지 변경신고                            | ●                     |                 |                        |                         | 1  |
|    |               | 국적취득(간이귀화, 특별귀화<br>등)               | ●                     |                 | ●                      | ●                       | 3  |
|    |               | 복수국적                                |                       |                 |                        |                         | 0  |
|    |               | 가족초청                                |                       |                 | ●                      |                         | 1  |
| 2  | 인권과<br>기본권    | 인권과 기본권의 의미                         | ●                     |                 |                        | ●                       | 2  |
|    |               | 외국인에게<br>인정되는/인정되기 어려운<br>기본권       | ●                     |                 |                        | ●                       | 2  |
|    |               | 기본권의 제한과 구제                         |                       |                 |                        | ●                       | 1  |
|    |               | 평등권의 이해(차별 사례,<br>성차별 등)            | ●                     |                 |                        | ●                       | 2  |
|    |               | 자유권의 이해(종교의 자유<br>등)                | ●                     |                 |                        | ●                       | 2  |
|    |               | 사회권의 이해                             | ●                     |                 |                        | ●                       | 2  |
|    |               | 청구권의 이해                             | ●                     |                 |                        | ●                       | 2  |
|    |               | 참정권의 이해                             | ●                     |                 |                        | ●                       | 2  |
|    |               | 국민의 의무                              | ●                     |                 |                        |                         | 1  |
| 3  | 민주주의와<br>정치제도 | 민주주의                                | ●                     |                 |                        |                         | 1  |
|    |               | 삼권분립(행정부, 입법부,<br>사법부)              | ●                     |                 |                        |                         | 1  |
|    |               | 선거제도                                | ●                     |                 |                        |                         | 1  |
|    |               | 정당제도                                | ●                     |                 |                        |                         | 1  |
|    |               | 정치 참여 방법                            | ●                     |                 |                        |                         | 1  |
|    |               | 지방자치제도                              | ●                     |                 |                        |                         | 1  |
|    |               | 헌법재판제도                              | ●                     |                 |                        |                         | 1  |

|   |    |                                     |   |   |   |   |   |
|---|----|-------------------------------------|---|---|---|---|---|
| 4 | 혼인 | 혼인신고 방법과 효력(사실혼과 법률혼)               | ● |   | ● |   | 2 |
|   |    | 평등한 부부 관계                           |   | ● |   | ● | 2 |
|   |    |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동거, 부양, 협조)             | ● | ● | ● | ● | 4 |
|   |    | 부부간 재산관리(부부별산제, 일상가사대리)             |   |   | ● |   | 1 |
|   |    | 출생신고 방법과 효력                         |   |   | ● |   | 1 |
|   |    | 남편의 사망 관련 문제들(채류연장, 국적, 상속, 지원제도 등) |   |   | ● | ● | 2 |
|   |    | 가정폭력과 대처                            |   | ● | ● | ● | 3 |
| 5 | 자녀 |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   | ● |   | ● | 2 |
|   |    | 학교폭력과 대처                            |   | ● | ● |   | 2 |
|   |    | 한국의 교육 정책                           |   |   | ● |   | 1 |
|   |    | 출산 관련 지원 정책(출산 전 지원, 양육 지원 등)       |   |   | ● |   | 1 |
|   |    | 입양제도(중도입국자녀등)                       |   |   |   |   | 0 |
|   |    | 자녀의 국적 문제 (혈통주의, 귀화제도)              | ● |   |   |   | 1 |
| 6 | 이혼 | 협의이혼의 의미와 절차                        | ● | ● | ● | ● | 4 |
|   |    | 재판상 이혼의 의미와 절차, 재판상 이혼사유            | ● | ● | ● | ● | 4 |
|   |    | 이혼 후 재산 문제(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 ● | ● | ● | ● | 4 |
|   |    | 이혼 후 자녀 문제(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 ● | ● | ● | ● | 4 |
|   |    | 이혼 후 사회복지지원제도                       |   |   |   | ● | 1 |
|   |    | 이혼과 채류연장, 국적취득 문제                   |   |   |   | ● | 1 |
|   |    | 이혼신고절차                              |   |   |   | ● | 1 |
| 7 | 상속 | 상속의 의미와 시기                          |   |   |   |   | 0 |
|   |    | 상속순위와 상속분                           |   |   |   | ● | 1 |
|   |    | 상속의 승인과 포기(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   |   | ● | ● | 2 |
|   |    | 유언의 방식과 효력                          |   |   |   |   | 0 |
|   |    | 유류분                                 |   |   |   |   | 0 |
|   |    | 기여분                                 |   |   |   |   | 0 |
|   |    | 상속 절차(상속 재산 조사,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등)      |   |   | ● | ● | 2 |

|                                    |     |                                |    |             |   |   |   |
|------------------------------------|-----|--------------------------------|----|-------------|---|---|---|
| 8                                  | 근로  | 근로계약                           |    | ●           | ● | ● | 3 |
|                                    |     | 구직방법(알선기관)                     |    | ●           |   | ● | 2 |
|                                    |     | 취업지원서비스(내일배움카드)                |    |             |   | ● | 1 |
|                                    |     | 최저임금제도와 휴게시간                   |    | ●           | ● | ● | 3 |
|                                    |     | 유급휴일과 휴가제도                     |    | ●           | ● |   | 2 |
|                                    |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    | ●           | ● |   | 2 |
|                                    |     | 임금체불(내용증명, 소송)                 |    | ●           | ● | ● | 3 |
|                                    |     | 회사 파산(도산, 체당금)                 |    | ●           | ● |   | 2 |
|                                    |     | 여성을 위한 제도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    | ●           | ● | ● | 3 |
|                                    |     | 4대보험                           |    | ●           |   | ● | 2 |
|                                    |     | 퇴직금                            |    | ●           |   | ● | 2 |
|                                    |     | 직장 내 성희롱                       |    | ●           | ● | ● | 3 |
|                                    |     | 9                              | 소비 | 소비와 소비자의 의미 |   | ● |   |
| 소비자의 8대 권리                         |     |                                |    | ●           |   |   | 1 |
| 할부거래                               |     |                                |    | ●           |   |   | 1 |
| 전자상거래와<br>통신판매(인터넷 쇼핑,<br>TV홈쇼핑 등) |     |                                |    | ●           |   |   | 1 |
|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                       |     |                                |    | ●           |   |   | 1 |
| 해외직구                               |     |                                |    | ●           |   |   | 1 |
| 경품과 개인정보유출                         |     |                                |    | ●           |   |   | 1 |
| 중고거래와 주의점                          |     |                                |    | ●           |   |   | 1 |
| 반품, 환불 조건과 절차                      |     |                                |    | ●           | ● |   | 2 |
| 제품하자와 보상                           |     |                                |    | ●           | ● |   | 2 |
| 피해 예방 방법(인증마크,<br>주의사항 확인 등)       |     |                                |    | ●           |   |   | 1 |
| 피해 구제 방법(내용증명,<br>손해배상 등)          | ●   |                                |    | ●           | ● |   | 3 |
|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장단점,<br>결제취소, 분실 등)     |     |                                |    |             |   |   | 0 |
| 10                                 | 부동산 |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의 의미                |    | ●           | ● |   | 2 |
|                                    |     | 임대차 절차와 주의점                    |    | ●           |   | ● | 2 |
|                                    |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  | ●           | ● |   | 3 |
|                                    |     | 전세(전세금)와 월세(보증금,<br>하자보증금)     | ●  | ●           | ● |   | 3 |
|                                    |     | 부동산 매매 절차와 주의점                 |    | ●           | ● |   | 2 |
|                                    |     | 외국인 특별공급 대상 분양과<br>절차          |    | ●           |   |   | 1 |
|                                    |     | 부동산 세금                         |    | ●           |   |   | 1 |



|    |           |                              |   |   |   |   |   |
|----|-----------|------------------------------|---|---|---|---|---|
|    |           | 부동산 거래 신고                    |   | ● |   |   | 1 |
|    |           | 등기제도                         | ● | ● |   |   | 2 |
|    |           | 중개 거래(공인중개사)와 직거래            | ● | ● | ● |   | 3 |
|    |           | 계약서 작성 방법과 주의점               |   | ● |   |   | 1 |
|    |           | 계약 취소와 해제                    |   | ● |   |   | 1 |
|    |           |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 ● | ● |   | 2 |
|    |           | 부동산 사기의 예방과 구제               |   | ● |   |   | 1 |
|    |           | 부동산 관련 피해와 구제                |   | ● |   |   | 1 |
| 11 | 범죄(발생) 예방 | 해외 불법 송금(외국환거래법)             |   |   |   |   | 0 |
|    |           |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가담)             |   |   |   |   | 0 |
|    |           | 대포통장                         |   | ● |   |   | 1 |
|    |           | 성매매 예방과 대처                   |   |   |   | ● | 1 |
|    |           | 명예훼손, 모욕                     |   |   |   |   | 0 |
|    |           | 지적재산권 침해                     | ● |   |   |   | 1 |
|    |           | 마약, 불법의약품                    |   | ● |   |   | 1 |
|    |           | 폭력, 상해                       |   | ● |   |   | 1 |
|    |           | 정유이탈물횡령                      |   | ● |   |   | 1 |
|    |           | 범죄처리절차(형사절차)                 |   |   |   |   | 0 |
| 12 | 범죄피해예방    | 명의도용                         |   | ● |   | ● | 2 |
|    |           | 대포통장                         |   | ● |   |   | 1 |
|    |           | 금전거래(차용증, 연대보증등)             | ● | ● |   | ● | 3 |
|    |           | 금융 사기 피해 예방(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   | ● |   |   | 1 |
|    |           | 명예훼손, 모욕                     |   |   |   |   | 0 |
|    |           | 폭력, 상해                       |   |   |   |   | 0 |
|    |           | 성폭력(성희롱, 성폭력등)               |   | ● |   | ● | 1 |
|    |           | 피해 예방 및 구제 방법                | ● |   |   |   | 1 |
| 13 | 기타 준법생활   | 법의 역할과 필요성                   | ● |   |   |   | 1 |
|    |           | 준법정신의 중요성                    | ● |   |   |   | 1 |
|    |           | 기초질서(분리수거, 쓰레기종량제, 무임승차 등)   | ● | ● | ● |   | 3 |
|    |           | 경범죄처벌                        |   | ● |   |   | 1 |
|    |           | 교통법규(교통질서, 뺑소니, 음주운전 등)      | ● | ● |   |   | 2 |
|    |           | 운전면허제도(자동차, 오토바이, 외국면허 변경 등) |   |   | ● |   | 1 |

|    |             |   |   |   |   |   |   |
|----|-------------|---|---|---|---|---|---|
| 14 | 법률구조와 지원    | 법률상담 지원 연계 안내                                       | ● |   |   |   | 1 |
|    |             | 법률구조 방법(도움을 주는 기관)                                  | ● | ● |   | ● | 3 |
|    |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 ● | ● | ● |   | 3 |
|    |             | 법집행기관(검찰, 경찰)                                       | ● |   |   |   | 1 |
|    |             | 법률상담 사례   |   |   |   | ● | 1 |
| 15 | 사회보장 (지원)제도 | 사회보험(4대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 ● |   | ● | ● | 3 |
|    |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지원)                  |   |   | ● | ● | 2 |
|    |             | 자녀의 학교교육 지원   |   |   |   |   | 0 |
|    |             | 응급 의료 제도  |   |   |   |   | 0 |
|    |             | 장애인 복지제도  |   |   |   |   | 0 |
|    |             |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   |   |   | ● | 1 |
|    |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지원 제도 (생활정보 제공, 한국어 교육, 의료 지원, 다국어 서비스 등) |   |   |   | ● | 1 |
|    |             | 출산 관련 지원 정책(출산 전 지원, 양육 지원 등)                       |   |   | ● | ● | 2 |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교재와 PPT 강의안의 내용이 다소 다르므로 모두 반영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교재는 간단한 의미만 나와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간단히 제시된 경우에도 내용에 다루는 것으로 체크하였다. ‘이민자 생활법률특강’은 교재가 없으므로 PPT 강의안만 반영하였다. Fun Fun 대한민국의 법은 교재와 PPT 모두 반영하였고, 형사정책연구원은 교재를 반영하였다.

##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개선방안 설문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 조사는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를 위해 현장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존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법교육 발전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해주신 결과는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 choibsbs@naver.com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 박사과정 최보선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 지도교수 정상우 드림

# I.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방향

1. 다음은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목표와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내용별 동의 여부를 해당란에 표로 답해주십시오.

※ 응답 예시: 

|   |   |                                       |   |   |
|---|---|---------------------------------------|---|---|
| ① | ② |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③ | ④ | ⑤ |
|---|---|---------------------------------------|---|---|

| 목표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약간 동의한다 | 전적으로 동의한다 |
|-------------------------|-------------|-------------|------|---------|-----------|
| 1. 기초적인 법체계와 법지식의 이해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한국에서 체류자격 등 법적 문제 해결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민주시민성 함양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사회통합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사회적응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인권과 기본권의 이해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인권 보장과 권익 증진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범죄피해예방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범죄(발생)예방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다문화사회의 갈등 완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 이행  | ①           | ②           | ③    | ④       | ⑤         |

→ 판단이유는 전 항목에 걸쳐 쓰시기 보다는 특히 중요도가 높거나 혹은 낮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관해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경우 간단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추가 의견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목표와 필요성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 II.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주제

- 아래에 제시되는 주제들은 기존의 이주민 법교육 교재들을 중심으로 추출한 것입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법교육을 실시한다는 전제 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주제를 묻는 질문입니다.

1. 다음은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대상 법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차례대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제             | 해당 내용   |
|----------------|---|
| 1. 체류자격 및 이주   | 체류자격(영주자격 포함), 국적, 가족초청 등   |
| 2. 인권과 기본권     | 인권과 기본권의 의미, 기본권의 종류, 국민의 의무, 외국인에게 인정되는/인정되기 어려운 기본권 등             |
| 3.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 민주주의,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선거제도 등   |
| 4. 혼인          |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남편의 사망관련 문제(국적, 지원제도 등), 가정폭력 등                        |
| 5. 자녀          | 아동학대, 학교폭력, 한국의 교육 정책, 출산지원정책, 입양제도 등                               |
| 6. 이혼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사유와 절차, 이혼으로 인한 변화(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 후의 문제(체류, 지원제도 등) 등 |
| 7. 상속          | 상속 순위, 상속분,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언 등  |
| 8. 근로          | 근로계약, 최저임금, 휴가제도, 임금체불, 4대보험, 퇴직금 등                                 |
| 9. 소비          | 소비 유형별(할부, 통신거래, 방문판매 등) 주의점, 반품과 환불, 소비 관련 피해 예방과 구제방법 등           |
| 10. 부동산        | 임대차 절차와 주의점, 매매 절차와 주의점, 부동산 관련 피해 예방과 구제 등                         |
| 11. 범죄(발생)예방   | 해외불법송금, 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담 등), 대포통장, 성매매, 지적재산권 침해 등                     |
| 12. 범죄피해예방     | 금전거래 관련, 명의도용, 대포통장, 사기 피해, 성폭력 등                                   |
| 13. 기타 준법생활    | 법의 필요성, 준법의식, 기초 법질서, 교통법규 등  |
| 14. 법률구조와 지원   | 법률구조 방법,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법률상담사례 등                                       |
| 15. 사회보장(지원)제도 | 건강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 지원, 출산지원정책 등                                   |

→ 우선 순위: ( ) > ( ) > ( ) > ( ) > ( )

- \* 판단이유는 전 항목에 걸쳐 쓰시기 보다는 특히 중요도가 높거나 혹은 낮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관해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경우 간단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 Ⅲ.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내용요소

- 다음은 앞서 밝힌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15개 주제별 **내용요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에 제시되는 내용들은 기존의 이주민 법교육 교재들을 중심으로 각 주제별 내용요소들을 추출한 것입니다. 결혼이주 여성에 대해 법교육을 실시한다는 전제 하에서 각각의 내용요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차례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중요한 내용요소가 누락되어 있을 경우 각 항목의 추가의견란에 직접 채워넣고 순위를 부여해 주셔도 됩니다.

1. 다음은 ‘체류자격 및 이주’ 주제의 내용요소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4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주십시오.

|                          |                                    |                       |
|--------------------------|------------------------------------|-----------------------|
| ① 외국인등록                  | ② 체류자격(사증:F-6결혼이민, F-2거주, F-5영주자격) | ③ 체류기간과 연장            |
| ④ 불법체류, 강제퇴거, 출국권고, 출국명령 | ⑤ 체류지 변경신고                         | ⑥ 국적취득 (간이귀화, 특별귀화 등) |
| ⑦ 복수국적                   | ⑧ 가족초청                             | ⑨ 추가 의견( )            |

중요도 ( ) > ( ) > ( ) > ( )

판단 이유 : ( )

2. 다음은 ‘인권과 기본권’ 주제의 내용요소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4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주십시오.

|                          |                           |               |
|--------------------------|---------------------------|---------------|
| ① 인권과 기본권의 의미            | ② 외국인에게 인정되는/인정되기 어려운 기본권 | ③ 기본권의 제한과 구제 |
| ④ 평등권의 이해 (차별 사례, 성차별 등) | ⑤ 자유권의 이해 (종교의 자유 등)      | ⑥ 사회권의 이해     |
| ⑦ 청구권의 이해                | ⑧ 참정권의 이해                 | ⑨ 국민의 의무      |
| ⑩ 추가 의견( )               |                           |               |

중요도 ( ) > ( ) > ( ) > ( )

판단 이유 : ( )

3. 다음은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주제의 내용요소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4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주십시오.

|          |                       |          |
|----------|-----------------------|----------|
| ① 민주주의   | ② 삼권분립(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 ③ 선거제도   |
| ④ 정당제도   | ⑤ 정치 참여 방법            | ⑥ 지방자치제도 |
| ⑦ 헌법재판제도 | ⑧ 추가 의견( )            |          |

중요도 ( ) > ( ) > ( ) > ( )

판단 이유 : ( )

4. 다음은 ‘혼인’ 주제의 내용요소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4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주십시오.

|                               |               |   |
|-------------------------------|---------------|---|
| ① 혼인신고 방법과 효력<br>(사실혼과 법률혼)   | ② 평등한 부부 관계   | ③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br>(동거, 부양, 협조)             |
| ④ 부부간 재산관리<br>(부부별산제, 일상가사대리) | ⑤ 출생신고 방법과 효력 | ⑥ 남편의 사망 관련 문제들<br>(채류연장, 국적, 상속, 지원제도 등) |
| ⑦ 가정폭력과 대처                    | ⑧ 추가 의견( )    |   |

중요도 ( ) > ( ) > ( ) > ( )

판단 이유 : ( )

5. 다음은 ‘자녀’ 주제의 내용요소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4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주십시오.

|                                     |                  |                             |
|-------------------------------------|------------------|-----------------------------|
| ①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 ② 학교폭력과 대처       | ③ 한국의 교육 정책                 |
| ④ 출산 관련 지원 정책<br>(출산 전 지원, 양육 지원 등) | ⑤ 입양제도(중도입국자녀 등) | ⑥ 자녀의 국적 문제<br>(혈통주의, 귀화제도) |
| ⑦ 추가 의견( )                          |                  |                             |

중요도 ( ) > ( ) > ( ) > ( )

판단 이유 : ( )

6. 다음은 ‘이혼’ 주제의 내용요소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4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주십시오.

|                                   |                               |                                |
|-----------------------------------|-------------------------------|--------------------------------|
| ① 협의이혼의 의미와 절차                    | ② 재판상 이혼의 의미와 절차,<br>재판상 이혼사유 | ③ 이혼 후 재산 문제<br>(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
| ④ 이혼 후 자녀 문제<br>(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 ⑤ 이혼 후 사회복지지원제도               | ⑥ 이혼과 채류연장, 국적취득<br>문제         |
| ⑦ 이혼신고절차                          | ⑧ 추가 의견( )                    |                                |

중요도 ( ) > ( ) > ( ) > ( )

판단 이유 : ( )

7. 다음은 ‘상속’ 주제의 내용요소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4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주십시오.

|                                     |             |                                    |
|-------------------------------------|-------------|------------------------------------|
| ① 상속의 의미와 시기                        | ② 상속순위와 상속분 | ③ 상속의 승인과 포기<br>(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
| ④ 유언의 방식과 효력                        | ⑤ 유류분       | ⑥ 기여분                              |
| ⑦ 상속 절차(상속 재산 조사,<br>상속세 신고 및 납부 등) | ⑧ 추가 의견( )  |                                    |

중요도 ( ) > ( ) > ( ) > ( )

판단 이유 : ( )

8. 다음은 ‘근로’ 주제의 내용요소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4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주십시오.

|                  |                  |                                     |
|------------------|------------------|-------------------------------------|
| ① 근로계약           | ② 구직방법(알선기관)     | ③ 취업지원서비스(내일배움카드)                   |
| ④ 최저임금제도와 휴게시간   | ⑤ 유급휴일과 휴가제도     | ⑥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
| ⑦ 임금체불(내용증명, 소송) | ⑧ 회사 파산(도산, 채당금) | ⑨ 여성을 위한 제도<br>(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
| ⑩ 4대보험           | ⑪ 퇴직금            | ⑫ 직장 내 성희롱                          |
| ⑬ 추가 의견( )       |                  |                                     |

중요도 ( ) > ( ) > ( ) > ( )

판단 이유 : ( )

9. 다음은 ‘소비’ 주제의 내용요소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4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주십시오.

|                                    |                                 |                              |
|------------------------------------|---------------------------------|------------------------------|
| ① 소비와 소비자의 의미                      | ② 소비자의 8대 권리                    | ③ 할부거래                       |
| ④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br>(인터넷 쇼핑, TV홈쇼핑 등) | ⑤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                  | ⑥ 해외직구                       |
| ⑦ 경품과 개인정보유출                       | ⑧ 중고거래와 주의점                     | ⑨ 반품, 환불 조건과 절차              |
| ⑩ 제품하자와 보상                         | ⑪ 피해 예방 방법<br>(인증마크, 주의사항 확인 등) | ⑫ 피해 구제 방법<br>(내용증명, 손해배상 등) |
| ⑬ 체크카드와 신용카드<br>(장단점, 결제취소, 분실 등)  | ⑭ 추가 의견( )                      |                              |

중요도 ( ) > ( ) > ( ) > ( )

판단 이유 : ( )

10. 다음은 ‘부동산’ 주제의 내용요소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4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주십시오.

|                           |                  |                      |
|---------------------------|------------------|----------------------|
| ①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의 의미         | ② 임대차 절차와 주의점    | ③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 ④ 전세(전세금)와 월세(보증금, 하자보증금) | ⑤ 부동산 매매 절차와 주의점 | ⑥ 외국인 특별공급 대상 분양과 절차 |
| ⑦ 부동산 세금                  | ⑧ 부동산 거래 신고      | ⑨ 등기제도               |
| ⑩ 중개 거래(공인중개사)와 직거래       | ⑪ 계약서 작성 방법과 주의점 | ⑫ 계약 취소와 해제          |
| ⑬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⑭ 부동산 사기의 예방과 구제 | ⑮ 부동산 관련 피해와 구제      |
| ⑯ 추가 의견( )                |                  |                      |

중요도 ( ) > ( ) > ( ) > ( )

판단 이유 : ( )



11. 다음은 ‘범죄(발생)예방’ 주제의 내용요소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4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주십시오.

|                        |                        |            |
|------------------------|------------------------|------------|
| ① 해외 불법 송금<br>(외국환거래법) | ② 금융사기<br>(보이스피싱 등 가담) | ③ 대표통장     |
| ④ 성매매 예방과 대처           | ⑤ 명예훼손, 모욕             | ⑥ 지적재산권 침해 |
| ⑦ 마약, 불법의약품            | ⑧ 폭력, 상해               | ⑨ 점유이탈물횡령  |
| ⑩ 범죄처리절차(형사절차)         | ⑪ 추가 의견( )             |            |

중요도 ( ) > ( ) > ( ) > ( )

판단 이유 : ( )

12. 다음은 ‘범죄피해예방’ 주제의 내용요소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4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주십시오.

|                                 |                 |                     |
|---------------------------------|-----------------|---------------------|
| ① 명의도용                          | ② 대표통장          | ③ 금전거래(차용증, 연대보증 등) |
| ④ 금융사기 피해 예방<br>(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 ⑤ 명예훼손, 모욕      | ⑥ 폭력, 상해            |
| ⑦ 성폭력(성희롱, 성폭력 등)               | ⑧ 피해 예방 및 구제 방법 | ⑨ 추가 의견( )          |

중요도 ( ) > ( ) > ( ) > ( )

판단 이유 : ( )

13. 다음은 ‘기타 준법생활’ 주제의 내용요소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4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주십시오.

|              |                              |                                       |
|--------------|------------------------------|---------------------------------------|
| ① 법의 역할과 필요성 | ② 준법정신의 중요성                  | ③ 기초질서<br>(분리수거, 쓰레기종량제,<br>무임승차 등)   |
| ④ 경범죄 처벌     | ⑤ 교통법규(교통질서, 뺑소니,<br>음주운전 등) | ⑥ 운전면허제도<br>(자동차, 오토바이,<br>외국면허 변경 등) |
| ⑦ 추가 의견( )   |                              |                                       |

중요도 ( ) > ( ) > ( ) > ( )

판단 이유 : ( )

14. 다음은 ‘법률구조와 지원’ 주제의 내용요소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4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주십시오.

|                 |                         |              |
|-----------------|-------------------------|--------------|
| ① 법률상담 지원       | ② 법률구조 방법(도움을 주는<br>기관) | ③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
| ④ 법집행기관(검찰, 경찰) | ⑤ 법률상담사례                | ⑥ 추가 의견( )   |

중요도 ( ) > ( ) > ( ) > ( )

판단 이유 : ( )

15. 다음은 ‘사회보장제도’ 주제의 내용요소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4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주십시오.

|   |                                     |                |
|---|-------------------------------------|----------------|
| ①사회보험(4대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 ②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지원) | ③ 자녀의 학교 교육 지원 |
| ④ 응급 의료 제도  | ⑤ 장애인 복지 제도                         | ⑥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
| ⑦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지원 제도 (생활정보 제공, 한국어 교육, 의료 지원, 다국어 서비스 등) | ⑧ 출산 관련 지원 정책(출산 전 지원, 양육 지원 등)     | ⑨ 추가 의견( )     |

중요도 ( ) > ( ) > ( ) > ( )

판단 이유 : ( )

**추가의견**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주제와 내용요소에 대한 추가 의견 혹은 기타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IV.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프로그램 교육 방법**

1.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교육 횟수로 어떤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일회성 교육이 적당하다. (→ 1-1로 이동)
- ② 정기적 교육이 적당하다. (→ 1-2로 이동)

1-1. 일회성 교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교육시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일회성 교육으로서 총 ( )시간

1-2. 정기적 교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교육 횟수와 시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 교육으로서 연 ( )회, 연간 총 ( )시간

2.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5단계인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법, 역사, 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50차시입니다. 이 중 ‘법’은 7차시, ‘정치’(민주주의, 국회 등)는 5차시로 총 12차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필요한 법교육 시수로 12차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너무 적다
- ② 적다
- ③ 적당하다
- ④ 많다
- ⑤ 너무 많다

3.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의 주제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 )

(\* 복수 선택 가능, 기타 작성 가능)

- ① 수요 기관에서 주제를 선택
- ② 수요 기관과 강사가 협의하여 주제를 선택
- ③ 수강생이 주제를 선택
- ④ 교재에 제시된 주제를 그대로 선택
- ⑤ 기타 ( )

4.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을 실시할 때 난이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수강생들이 강의를 매우 어려워하는 것 같다. (→ 4-1로 이동)
- ② 수강생들이 강의를 어려워하는 것 같다. (→ 4-1로 이동)
- ③ 수강생들이 강의 수준을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 ④ 수강생들이 강의를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 ⑤ 수강생들이 강의를 매우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4-1. (수강생이 어려워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복수 선택 가능, 기타 작성 가능)

- ① 한국어 실력 부족
- ② 본국에서 교육 수준 미비
- ③ 자본주의 경험 부족
- ④ 한국 법의 어려움
- ⑤ 기타 ( )

5. 다음은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내용별 동의 여부를 해당란에 **✓표**로 답해주십시오.

\* 특히 동의하거나 특히 동의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해 주십시오.

|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약간 동의한다 | 전적으로 동의한다 |
|-------------------------------------|-------------|-------------|------|---------|-----------|
| 1. 시각적인 교육 자료 활용(그림, 영상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사례형 법교육(판례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현장 체험학습(출입국관리소, 법원, 솔로몬로파크 등 방문)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참여형 법교육(역할극, 발표 수업, 토론 수업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법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상담식 법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 의견란 : ( )

**추가 의견**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교육방법(교육 시수, 난이도,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V.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 있어서 교육 자료**

1. 수강생에게 **배부할 필요가 있는 학습자료**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복수 선택 가능, 기타 작성 가능)

- ① (소)책자 형태의 교재
- ② PPT 강의안 출력물
- ③ 기타: ( )

2. 수강생에게 교육자료는 **어떤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한국어
- ② 각 국가의 언어별 번역본
- ③ 한국어와 번역본 모두
- ④ 기타: ( )

→ 의견란 : ( )

(그렇게 판단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기재해주십시오.)

3.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 어떤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

(\* 복수 선택 가능, 기타 작성 가능)

- ① 기관 자체 개발 교재
-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한국사회이해)
- ③ 강사 자체 개발
- ④ 교재 없이 강의
- ⑤ 잘 모르겠다
- ⑥ 기타: ( )

4.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 어떤 PPT 강의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

(\* 복수 선택 가능, 기타 작성 가능)

- ① 한국법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강의안 (→ 4-1로 이동)
- ② 한국법교육센터 외 기관에서 자체 개발한 강의안
- ③ 강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강의안
- ④ 잘 모르겠다
- ⑤ 기타: ( )

4-1. (한국법교육센터 제공 강의안이라면) 어떤 PPT 강의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

(\* 복수 선택 가능, 기타 작성 가능)

- ① Fun Fun 대한민국의 법(2012년 개발)
-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한국사회이해(2014년 개발, 7차시로 구성)
- ③ 이민자 생활법률특강(2016년부터 매년 3개 주제씩, 기본/심화 강의안 개발)
- ④ 잘 모르겠다
- ⑤ 기타: ( )

5.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PPT 강의안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 )

(\*강사가 아닌 실무자이신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그대로 사용
- ② 수정하여 사용
- ③ 새로 만들어서 사용
- ④ 기타: ( )

6.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내용요소를 어떻게 구성**하십니까? ( )  
 (\*강사가 아닌 실무자이신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
  - ② 교재와 동일하게 구성
  - ③ 수강생들이 어떤 내용에 관심이 있는지 사전에 기관에 문의 후 구성
  - ④ 강사의 이민자 관련 경험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구성
  - ⑤ 기타: ( )

**추가 의견**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교육 자료(교재, PPT 강의안 등)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VI.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의 교육, 역량**

- 각 항목의 개선방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해당란에 ✓표로** 답해주시시오.
- 특히 동의하거나 특히 동의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경우, 의견란에 기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다음은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내용별 **동의 여부**를 해당란에 **✓표로** 답해주시시오.

| 필요한 역량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약간 동의한다 | 전적으로 동의한다 |
|------------------------------|-------------|-------------|------|---------|-----------|
| 1. 학습내용 전문성(법학)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상호작용촉진능력(소통)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효과적 강의 역량(전달력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수업설계역량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다양한 사회적 경험(혼인, 부동산, 근로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외국어 능력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이주민에 대한 이해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여성(학)에 대한 이해              | ①           | ②           | ③    | ④       | ⑤         |

→ 의견란 : ( )

2. 다음은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내용별 동의 여부를 해당란에 표로 답해주시시오.

| 역량 강화 방안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약간 동의한다 | 전적으로 동의한다 |
|----------------------------|-------------|-------------|------|---------|-----------|
| 1. 강사 선발 기준 강화(시험 실시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강사 자격 부여 후 기간별 갱신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강사 자격 유지 조건으로 보수 교육 의무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의견란 : ( )

3.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를 위한 교육(보수교육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내용별 동의 여부를 해당란에 표로 답해주시시오.

| 개선 방안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약간 동의한다 | 전적으로 동의한다 |
|------------------------|-------------|-------------|------|---------|-----------|
| 1. 교육 내용의 질 향상(전문성 제고)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강사 간 경험 공유 및 토론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교육 시간 늘림            | ①           | ②           | ③    | ④       | ⑤         |

→ 의견란 : ( )

4.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를 위한 교육(보수교육 등)을 실시한다는 전제 하에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차례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                   |                                 |
|-------------------|---------------------------------|
| ①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존중  | ② 이주민과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
| ③ 이주민 법적분쟁 사례     | ④ 이주민 관련 판례                     |
| ⑤ 최신 정책, 개정 법률    | ⑥ 이주민 관련 법률                     |
| ⑦ 기본적인 법학지식       | ⑧ 다른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
| ⑨ 다른 국가의 법에 대한 이해 | ⑩ 강사의 인식 개선<br>(이주민에 대한 편견, 차별) |
| ⑪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 ⑫ 인종주의(레이시즘)                    |
| ⑬ 여성(학)에 대한 이해    | ⑭ 교수학습방법                        |
| ⑮ 언어습득과정에 대한 이해   | ⑯ 추가 의견 ( )                     |

→ 중요도: ( ) > ( ) > ( ) > ( )

→ 판단 이유: ( )

(\* 특히 중요도가 높거나 혹은 낮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관해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경우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5.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 강사를 위한 교육(보수교육 등)에 대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연간 교육 시수는 무엇입니까? ( )

- ① 1~2시간
- ② 3~4시간
- ③ 5~6시간
- ④ 7~8시간
- ⑤ 9시간 이상
- ⑥ 기타 : ( )

6.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의 다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내용 별 동의 여부를 해당란에 ✓표로 답해주십시오.

| 역량 강화 방안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약간 동의한다 | 전적으로 동의한다 |
|-----------------------|-------------|-------------|------|---------|-----------|
| 1. 강사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의무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다문화 관련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강사 대상 온라인 교육 강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다문화 관련 매뉴얼 제공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강사 스스로 학습하도록 말끔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이주민 접촉 경험 증진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다른 국가로 직접 연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 의견란 : ( )

**추가 의견**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강사의 교육이나 역량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 VII.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애로사항

1.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 )

- ① 매우 어렵다 (→ 1-1로 이동)
- ② 어렵다 (→ 1-1로 이동)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없다
- ⑤ 전혀 없다

1-1.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 )

(\* 복수 선택 가능, 기타 작성 가능)

- ① 결혼이주여성과 소통의 어려움
- ② 수강생간 한국어 실력 격차가 심함
- ③ 법교육 내용이 어려워 이해시키기 어려움
- ④ 법률 용어를 이해시키기 어려움
- ⑤ 강의시 수강생이 법교육에 대한 흥미가 없음
- ⑥ 수강생의 법교육 수요 부족으로 수업 개설이 어려움
- ⑦ 수강생/기관이 법교육이 아닌 법률상담을 요청
- ⑧ 기관의 무관심
- ⑨ 강사의 이주민에 대한 이해 부족
- ⑩ 기타: ( )

### 추가 의견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 VIII.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개선 방안

- 각 항목의 개선방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해당란에 ✓표로** 답해주시시오.
- 특히 동의하거나 특히 동의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경우, 의견란에 기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다음은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 있어서 **교육 대상**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개선 방안입니다. 각 내용별 **동의 여부를 해당란에 ✓표로** 답해주시시오.

| 개선 방안                                 | 전혀<br>동의하지<br>않는다 | 별로<br>동의하지<br>않는다 | 보통이다 | 약간<br>동의한다 | 전적으로<br>동의한다 |
|---------------------------------------|-------------------|-------------------|------|------------|--------------|
| 1. 한국어 실력별 분반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체류자격별 분반(결혼이주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출신국가별 분반                           | ①                 | ②                 | ③    | ④          | ⑤            |

→ 의견란 : ( )

2. 다음은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참여 증진을 위한 방안**입니다. 각 내용별 **동의 여부를 해당란에 ✓표로** 답해주시시오.

| 개선 방안                            | 전혀<br>동의하지<br>않는다 | 별로<br>동의하지<br>않는다 | 보통이다 | 약간<br>동의한다 | 전적으로<br>동의한다 |
|----------------------------------|-------------------|-------------------|------|------------|--------------|
| 1. 교육 이수 시 체류자격 연장, 귀화 심사에 혜택 부여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법교육 이외의 다른 교육과 함께 프로그램 구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수강 시 법교육 의무 수강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자녀를 위한 유아실 마련, 돌봄서비스 제공       | ①                 | ②                 | ③    | ④          | ⑤            |

→ 의견란 : ( )

3. 다음은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에 있어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 개선 방안**입니다. 각 내용별 **동의 여부를 해당란에 ✓표로** 답해주시시오.

| 교육복지 사각지대 개선 방안   | 전혀<br>동의하지<br>않는다 | 별로<br>동의하지<br>않는다 | 보통이다 | 약간<br>동의한다 | 전적으로<br>동의한다 |
|-------------------|-------------------|-------------------|------|------------|--------------|
| 1. 찾아가는 법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온라인 교육의 활용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법교육 책자 개발 및 배포 | ①                 | ②                 | ③    | ④          | ⑤            |

→ 의견란 : ( )

4. 다음은 결혼이주여성 온라인 법교육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내용별 동의 여부를 해당란에 표로 답해주시시오.

| 교육복지 사각지대 개선 방안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약간 동의한다 | 전적으로 동의한다 |
|-------------------------------|-------------|-------------|------|---------|-----------|
| 1. 실시간 온라인 화상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사전 녹화 인터넷 강의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만화, 영상물 등 시리즈물 SNS에 배포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온라인 교육 이수 시 인센티브 부여로 참여 증진 | ①           | ②           | ③    | ④       | ⑤         |

→ 의견란 : ( )

5. 다음은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교육 환경 개선 방안입니다. 각 내용별 동의 여부를 해당란에 표로 답해주시시오.

| 개선 방안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약간 동의한다 | 전적으로 동의한다 |
|----------------------------|-------------|-------------|------|---------|-----------|
| 1. 지역의 협조를 얻어 공공시설을 활용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자녀를 위한 유아실 마련, 돌봄서비스 제공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멀티미디어 환경 필수적 마련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국가의 지원으로 교육기관 시설 보완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학습자료(출력물, 부교재 등)비용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의견란 : ( )

6. 다음은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컨트롤 타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내용별 동의 여부를 해당란에 표로 답해주시시오.

| 개선 방안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약간 동의한다 | 전적으로 동의한다 |
|------------------------------------|-------------|-------------|------|---------|-----------|
| 1. 법무부가 중심 역할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여성가족부가 중심 역할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한국법교육센터가 중심 역할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별적으로 필요에 따라 역할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가 중심 역할         | ①           | ②           | ③    | ④       | ⑤         |

→ 의견란 : ( )

**추가 의견**

결혼이주여성 법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VIII. 전문가 선생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시거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 ① 남자 ② 여자

2. 선생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세

3. 선생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학사 전공: (                      ), 석사 전공: (                      ), 박사 전공: (                      )

4. 선생님의 이주민 법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

- ①거의 관심이 없다 ②관심이 적다 ③보통이다 ④관심이 많다 ⑤매우 관심이 많다

5. 이주민 법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전혀 모른다 ②잘 모른다 ③보통이다 ④잘 알고 있다 ⑤매우 잘 알고 있다

6. 이주민 법교육 **강의를 한 경력**이 있습니까? (      )

- ① 있다. (→ 6-1, 6-2로 이동)  
② 없다.

6-1. (있다면) **강의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2년 이상 3년 미만  
④ 3년 이상 4년 미만      ⑤ 4년 이상 5년 미만      ⑥ 5년 이상  
⑦ 기타: (      )

6-2. (있다면) 강의 경험이 최근 3년간 **연평균 몇 회** 정도 되십니까? (      )회

7. **다문화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전혀 모른다 ②잘 모른다 ③보통이다 ④잘 알고 있다 ⑤매우 잘 알고 있다

8. **다문화교육(이민자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 ① 있다. (→ 8-1로 이동)  
② 없다.

8-1. (있다면) 다문화교육을 최근 3년간 **연 평균 몇 시간씩** 받았습니까?  
(      )시간

9. 다문화(혹은 이주민/이민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험이 있습니까? ( )

- ① 있다. (→ 9-1 로 이동)
- ② 없다.

9-1. (있다면) 어떤 **자격(증)**인지 체크 혹은 빈칸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복수 선택 가능, 기타 작성 가능)

- ① 다문화사회이해 전문가(법무부)
- ②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③ 다문화 전문강사(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④ 기타: ( )

10. 한국법교육센터 소속 법교육전문강사이십니까? ( )

- ① 아니다. (→ 10-1로 이동)
- ② 맞다.

10-1. 선생님이 근무하는(혹은 근무했던) 기관에서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 )

- ① 있다. (→ 10-2로 이동)
- ② 없다.

10-2. (있다면) 어떤 **법교육**을 진행하였습니까?

(\* 복수 선택 가능, 기타 작성 가능)

-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5단계인 한국사회이해
- ② 한국법교육센터의 이민자생활법률특강
- ③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의 다문화가족 캠프
- ④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법교육
- ⑤ 기타: ( )

11. 선생님의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주십시오.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 결과는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성함: ( ) / 연락처: ( )

12. 선생님의 **소속기관**과 **직책**을 적어주십시오.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 결과는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소속 기관: ( ) / 직책: ( )

끝.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Law-related Education for the Married Immigrant Women

Bosun Choi

Ph. D. Dissertation

Directed by Prof. Sangwoo Chong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

August, 2018

Married immigrant women have much difficulty in adapting themselves to a new foreign community where they have not lived before, and need a wide range of educational supports as well as education and training on Korean culture absorption and the Korean language. With married immigrant women being incorporated into an unfamiliar law and culture after their immigration in a new foreign society, most of them tend to become the socially alienated who don't have their human rights and authorities as immigrants and women protected. In the case of South Korea, married immigrant women widely encounter a new legal relation in overall life spheres, compared with any other immigrants. This means that married immigrant women need, especially, law-related education and legal supports for their social adaptation.

However, although the law-related education targeting married immigrant women has now been provided, there are no in-depth

research and study- on the objective of law-related education for married immigrant women; the contents to be dealt with above all in law-related education for married immigrant women; an effective method for managing law-related education programs for married immigrant women; competences necessary for law-related education instructors to provide proper guidance for married immigrant women; and the contents to be dealt with above all in the course of fostering instructors in order to strengthen instructors' competences. Accordingly, this research study is going to present the direction that the law-related education for married immigrant women must head, in the aspects of contents, operation and instructors.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contents must be dealt with in the law-related education for married immigrant women? Second, how the law-related education for married immigrant women must be managed? Third, what are competences and education required of law-related education instructors who provide guidance to married immigrant women?

In order to deal with these research questions, the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the manager in charge of running social integration programs, and professional instructors of law-related education, and then analyzed those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replied by 114 respondents.

The research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topics on law-related education for married immigrant women, the first thing to be dealt with above all was 'qualification for staying and immigration.' The second, and third, fourth, and the fifth things to be dealt with were 'marriage,' and 'children,' 'human rights and basic rights,' and 'work,' respectively in turn, it was found. Second, as for the management on the law-related education targeting married

immigrant women, it was surveyed that regular education must be provided. As for contents and compositions of law-related education, those respondents who replied that such education must be conducted according to a demand survey of education trainees, accounted for the highest rate. As pedagogical(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effective for married immigrant women, there appeared 'visual educational data(pictures, videos, and so on)', and 'case-based law-related education(verdict, etc).'

'counselling-based law-related education,' and 'storytelling-based law-related education.' As for educational data, it was identified that a translation version must be provided for the law-related education targeting married immigrant women. Third, as competences necessary for law-related education instructors to provide guidance to married immigrant women, there appeared interaction acceleration ability(communications), effective instruction competences(explanatory power), understanding about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society, specialized learning contents(law, teaching method competences), understanding about a study on women, and various social experiences(marriage, real estate, work, etc). Regarding the method for reinforcing competences of law-related education instructors who provide guidance to married immigrant women, it was surveyed that an obliged supplementary education would need for the qualification as instructors. Concerning the method for strengthening multi-cultural competences of law-related education instructors who provide guidance to married immigrant women, it was confirmed that of importance would be obligatory multi-cultural education, completed curriculum on professionals in relation to multi-cultures, and an increase in encounter of immigrants. As for contents of education targeting instructors, the first thing to be considered was 'understanding and respect of immigrants,' it



was found. The second and third things to be considered were 'enhancing communication skills with immigrants,' and 'cases of legal disputes over immigrants' respectively, in turn. 'The latest polices and amended laws' tied with 'laws related to immigrants' for fourth place. Regarding the improved measures for law-related education instructors who provide guidance to married immigrant women, there appeared a higher quality of educational contents(raising professionalism) and the sharing and discussing experiences between instructors. Counted as the highest category of the level of agreement on the method for increasing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was to oblige to take law-related education when taking the course on Korean education program. Regarding improved measures against the blind spot of law-related education targeting married immigrant women, counted as the highest category of the level of agreement to it was proactive law-related education. It was indicated that on-line education law for married immigrant women proved somewhat low in the level of agreement(M= less than 4.0). As the highest category of the level of agreement as to the measures for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law-related education targeting married immigrant women, it was unveiled that offering infant room and providing childcare services would be necessary. As the highest category of the level of agreement as to the method for establishing a control tower of law-related education targeting married immigrant women, it was revealed that Ministry of Justice plays a pivotal rol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 In the first place, law-related education targeting married immigrant women ought to emphasize the aspect of human right education in the terms of objective, topic, and content factors. In the second place, a systemic law-related education programs

targeting married immigrant women ought to be run. To do it, regular education needs and the control tower is required for the law-related education targeting married immigrant women. In the third place, educational methods in consideration of the feature of married immigrant women must be pursued. A translation version in consideration of Korean competences must be provided, and a wide variety of pedagogical(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including visual data and case-based law-related education ought to be developed and used. In the fourth place, educational environments must be improve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increase of participation of law-related education by providing childcare services to married immigrant women. In the last place, it needs to strengthen multi-cultural competences of law-related education instructors who provide guidance to married immigrant women. To do it, offering instructors manuals in relation to multi-cultures is necessary. In the course of fostering instructors, understanding and respect of immigrants ought to be put ahead of any other things.

**Key Words** : Emigrants, Immigrants, Married Immigrant Women, Married Emigrant Women, Law-related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Law and Human Rights Education, Multi-Culture Education, Social Integration, Law-related education Programs, Social Integration Programs.